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1.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정세정

김기태·곽윤경·우선희·최준영·이영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영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3-04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I.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화 인쇄사업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46-1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04>

발|간|사

우리 사회는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디지털 복지국가’는 최근 복지국가 환경 변화에 따라 가장 주목받는 주제로 부상했다. 그에 따라 서구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적 관점에서 디지털 복지국가를 고찰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논의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에 초점을 두고 살피고자 했다. ‘디지털 복지국가’는 그 자체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발굴 및 지원 문제는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가 직면한 대표적인 딜레마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고찰은 비수급 개념을 확장시켜 복지국가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원의 정세정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기태 연구위원, 곽윤경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최준영 전문연구원, 그리고 외부 필진으로 인천대 이영수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완성도 높은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신 원내외의 자문위원인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동국대 이주하 교수, 익명의 검토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결과와 제언이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3
제3절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24
제2장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37
제1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	39
제2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 및 쟁점	43
제3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	57
제3장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동향	67
제1절 주요 관련 정책 동향	69
제2절 주요 관련 법제도 동향	84
제4장 비수급 논의의 확장	99
제1절 비수급 논의의 검토	101
제2절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	115
제3절 소결	138



제5장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43

제1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145

제2절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58

제3절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180

제6장 결론 19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97

제2절 정책 제언 212

참고문헌 223

부 록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237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3-1〉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의 표본 설계 개요	25
〈표 1-3-2〉 만 19~64세 성별·연령대별·시도별 모집단	25
〈표 1-3-3〉 만 19~64세: 성별·연령대별·시도별 할당 표본	27
〈표 1-3-4〉 2023. 4. 26. ~ 5. 4. 요청한 조사표 서면 자문에 회신한 외부 전문가	28
〈표 1-3-5〉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9
〈표 1-3-6〉 2023년 3월 17일 전문가 포럼	31
〈표 1-3-7〉 2023년 8월 11일 전문가 포럼	31
〈표 1-3-8〉 국외 출장 일정 및 면담자	34
〈표 2-2-1〉 디지털 복지국가의 정의 혹은 설명들	44
〈표 2-2-2〉 디지털 복지가 추동하는 변화	54
〈표 3-1-1〉 한국의 디지털화 단계	72
〈표 3-1-2〉 한국 전자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	74
〈표 3-1-3〉 복지의 디지털화 추진 과정	76
〈표 3-1-4〉 웰빙과 관련된 디지털의 기회와 위기	83
〈표 3-2-1〉 2023년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개정1	87
〈표 3-2-2〉 2023년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개정2	89
〈표 3-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규 조문 대비표	90
〈표 3-2-4〉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93
〈표 4-2-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17
〈표 4-2-2〉 도움 요청: 국가	119
〈표 4-2-3〉 도움 요청: 국가(통합)	120
〈표 4-2-4〉 도움 요청: 국가, 가족/지인	120
〈표 4-2-5〉 이전 국가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	121
〈표 4-2-6〉 기술통계	122
〈표 4-2-7〉 영역별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영향 요인	123
〈표 4-2-8〉 분석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검증	125

〈표 4-2-9〉 어려움 경험 여부별 생활비 부족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영향 요인	128
〈표 4-2-10〉 소득수준별 생활비 부족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영향 요인	132
〈표 4-2-11〉 연령대별 생활비 부족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영향 요인	135
〈표 4-2-12〉 국가 신뢰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개인정보 인식의 매개효과	137
〈표 5-1-1〉 활용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46
〈표 5-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1)	150
〈표 5-1-3〉 사회인식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1)	151
〈표 5-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2)	154
〈표 5-1-5〉 사회인식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2)	155
〈표 5-1-6〉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인식과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	157
〈표 5-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164
〈표 5-2-2〉 도움 필요 경험 및 사적 자원 여부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168
〈표 5-2-3〉 사회인식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169
〈표 5-2-4〉 복지 욕구 영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176
〈표 5-2-5〉 복지 욕구 영역별 사회인식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177
〈표 5-2-6〉 생계유지 위기에 대한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179
〈표 5-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1에 대한 인식	185
〈표 5-3-2〉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1에 대한 인식	186
〈표 5-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2에 대한 인식 (국민의 복지 지급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 결정과 정보 자기결정권)	187
〈표 5-3-4〉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2에 대한 인식 (국민의 복지 지급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 결정과 정보 자기결정권)	188
〈표 5-3-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3에 대한 인식	190
〈표 5-3-6〉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3에 대한 인식	191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3-1] 개인 인터뷰 질문	30
[그림 1-3-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논의 사항	33
[그림 1-3-3] 연구의 주요 진행 과정	35
[그림 2-3-1] 네덜란드의 SyRI 시스템에서 데이터 흐름 및 분석 과정	61
[그림 2-3-2] 네덜란드의 SyRI 모델 관련 네덜란드 정부 홍보물 및 관련 자료	62
[그림 3-1-1]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4.14)의 복지 관련 과제 예시	71
[그림 3-1-2] 행정안전부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예시	72
[그림 3-1-3] 아주 많이 앞서가는 한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성도	76
[그림 3-1-4]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77
[그림 3-1-5]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연계정보 현황(2023.4월 기준)	79
[그림 3-1-6] 디지털 위기와 기회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82
[그림 3-1-7] 한국의 디지털 웰빙 바퀴(wheel)	83
[그림 3-2-1]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간 기연계 현황 : 이동통신요금감면(송/수신), 통신료체납정보(수신)	87
[그림 4-1-1] Kerr의 문턱 모형(Threshold Model)	105
[그림 5-1-1]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문항	148
[그림 5-1-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인식에 따른 소득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수준 ...	153
[그림 5-2-1]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문항	159
[그림 5-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162
[그림 5-2-3] 복지 욕구 영역별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174
[그림 5-3-1]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문항	183
[그림 5-3-2]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184
[그림 5-3-3]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191



Abstract

A Study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Dilemma of the Digital Welfare State

Project Head: Cheong Sejeo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ssues of the changing welfare state environment, focusing on the problems of ‘people who do not want to be helped’ and ‘the digital welfare state’. For this,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research team discussions, expert and stakeholder consultation meetings, quantitativ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the digital welfare state, examining trends in the Korean digital welfare state, analyzing survey data,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e have found that the following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the dilemma of the digital welfare state in a changing welfare state environ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social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Second, it is required to ensure the right of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digital data. Third, security needs to be strengthened for the digital environment. Fourth, the optimal amount and type of information for crisis management should be explored. Fifth, the

Co-Researchers: Kim Ki-tae, Kwak YoonKyung, Woo Sunhee, Choi Junyoung,
Lee Yungsoo

2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1.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processes by which various crises develop should be further examined.

Keyword : Korean Welfare State, Digital Welfare State, People who don't want to be helped



요약

1. 서론

- ‘디지털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환경변화에 따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이며,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지국가 역할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는 데 있어 주요한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디지털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빠른 속도로 포착되기 시작하고 있음.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문법과 제도적 환경 안에서는 포착되지 않고 정의되지도 않았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 부상하고 있는 것임.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고찰은 비수급 개념을 확장시켜 복지국가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와 관련한 논의들은 기술의 쓰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위험과 한계를 줄이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고찰은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이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장점은 활용하되 위험과 한계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복지국가 환경에서의 국가의 역할 범위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의 문제로 설정하여 고찰해 보고자 함.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연구진 회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양적 조사 수행과 심층 인터뷰 등임.

2.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 Fitzpatrick(2000)은 Titmuss의 복지의 분업구조 틀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권이 다뤄지는 방식에 주목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권에 대한 논의가 간과됐다고 주장함. 이처럼 서구에서 디지털화가 복지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화가 복지국가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음 (예: van Zoonen, 2020; Collington, 2022). 구체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축소/확대, 공공부문 역량의 강화/약화라든가 투명성과 관련된 제도적 공백, 시민참여의 부재 등을 다룸.

□ Alston(2019)은 디지털 복지국가를 “사회 보호와 사회부조 제도가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로 더 자주 추동되면서, 자동화, 예측, 선별, 감시, 추적, 표적, 처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로 설명함.

□ 복지국가는 디지털화가 동반할 수 있는 효율성, 투명성, 과학성, 중립성, 효과성 등의 장점을 살리되, 불평등, 사생활 침해, 배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음.

□ 이에 사회정책 분야에서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이 사회적 논쟁을 크게 불러일으킨 두 가지 해외 사례를 살펴봤음.

○ 덴마크 Gladsaxe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취약 아동을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모델을 발전시켰음. 이 모델의 목적은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아동이 실제 특별한 위험에 직면하기 이전에 해당 아동을 포착해서 지원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Gladsaxe 지

역의 사업은 2018년 말에 중단됐음. 모델이 잦은 오류를 낸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음.

- 네덜란드의 시스템 위험도 표시(Systeem Risico Indicatie, 이하 SyRI) 시스템은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 제도 분야에서 급여 오류, 부정수급, 세금 미납, 노동법 미준수 등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만든 법적 수단임(Appelman, Fathaigh, van Hoboken, 2021). 문제는 SyRI의 집행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분석하는 데만 사용됐다는 것임. 헤이그 법원은 SyRI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 또 시스템의 목적을 한정하고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는 데에 충분한 주의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함. 유럽인권협약 8항 2조를 저촉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음.

3.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동향

- 한국 사회는 빠른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 있음. 2015년 12월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 구축이 이뤄졌음. 위기 정보는 34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났고, 2023년 12월부터는 44종으로 확대되었음. 복지업무의 효율화, 복지재정의 효율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임(한은희, 2023).
- 한계와 쟁점도 분명함. 연계 정보 기반 자격판정의 한계, 필요한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사회복지 일선 관료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음.

□ 한편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이래 2020년 6월과 12월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2023년에는 행정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을 제고하고 실질적 동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음. 2023년 9월 19일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보건복지부, 2023b, 2023. 9. 19. 보도자료). 주요하게는 제7조의 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를 신설함.

□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과제 중 하나임. 이 과제는 동의의 법적 개념을 어떻게 볼 것 인가에서부터 실질적 동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국제법적 동향에 이르기까지 살피고 다뤄야 할 범위와 수준이 넓고 깊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2023년 3월 7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음.

○ 개인정보 처리 요건 정비(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신설(제37조의 2)이 있음.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주체는 가공되거나 자동 처리되어 결정된 건에 대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실질적 동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37조의 2항의 신설은 의미가 있음.

4. 비수급 논의의 확장

-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사회권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음.
- 자발적 비수급 또는 비신청에 초점을 두면 비수급의 문제는 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 잠재적 수급자의 결핍, 복잡하고 부적절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를 넘어 잠재적 수급자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간의 ‘사회적 관계’의 문제일 수 있으며, 국가-시민 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정치적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음.
- Kerr의 비수급 결정 모형, van Oorschot의 통합적·동태적 모형, 합리적 선택 이론에 기반한 비용-편익 분석 모형, 인지적 제약과 행태적 제약을 고려한 행동경제학적 모형, 자발적 비수급·비신청에 대한 Warin의 논의 등과 비수급 관련 실증연구들을 통해 포괄적이고 탐색적인 수준의 분석 모형을 구성함.
-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세 영역에서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세부 집단별 분석, 매개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남성의 국가 도움 요청 확률이 낮았고, 특히 저소득층, 40~50대 연령 집단에서 성별 차이가 컸음.
 - 국가가 제공하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집단이 도움 요청을 원하지 않는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일정 부분 확인됨.
 - 복지 인식 및 태도 관련 변수들은 도움 요청 의사와 대체로 유의

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에서 복지 인식 및 태도 관련 변수들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함.

- 복지 수급과 관련한 긍정적 경험, 사회적 계층 및 지위의 하향 인식 등이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익명성, 정치이념 등은 일부 하위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됨.
- 비공식적 자원의 존재는 상황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보였는데, 일상적인 생활비 부족 같은 상황에서는 비공식적 자원의 존재가 국가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목돈 필요, 정서적 도움 같은 영역에서는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 국가에 대한 신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수준은 대체로 매우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국가에 대한 신뢰와 도움 요청 의사와의 관계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매개하였음.

□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배제되거나 고립된 집단을 파악하여 공적인 제도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개입 및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본 장에서의 논의 및 분석 결과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5.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파악함.

- 첫 번째는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다음의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5점)’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정보’를 경제상황,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로 구체화하여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했음.

- 두 번째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OO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문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 ~ ‘매우 동의한다(10점)’로 응답할 수 있도록 보기를 구성하고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건강정보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했음.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취약한 집단일수록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공동체와 개인 중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분배와 성장 중 분배가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복지급여 대상 범위가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음.

-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OO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봤음. 건강정보(6.66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부채정보(6.28점), 소득정보(6.12점), 재산정보(6.11점) 순이었음.

-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도움 요청 여부와 국가 복지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5점)’로 측정하였음.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3.61점으로 나타남.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복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2.42점(보통 3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의 요청 여

부에 상관없이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본인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 사적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 비해 국가의 복지제공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가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신체건강 문제, 정서적 문제, 생계유지의 위기, 관계의 단절, 감염병, 돌봄 방치로 구분하여 살펴봄.

- 수용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돌봄 부재로 7.14점이었으며, 감염병/생계유지 위기(6.88점), 신체건강 문제(6.34점), 관계 단절(6.28점), 정서적 문제(6.11점) 순이었음.
- 감염병보다 돌봄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함. 돌봄 공백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은 것으로 추정됨.

□ 프라이버시권과 사회권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 인간다운 삶의 유지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사회권에 해당하는 의견과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하는 문항 모두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분석 결과 중 ‘모든 국민은 복지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유일하게 6점대로 가장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6. 정책 제언

- 첫째, 사회권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 모색이 필요하다. 개인 데이터의 집적, 공유, 연계, 저장, 활용과 이에 근거한 개입을 통한 사회권 보호라는 하나의 가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 혹은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의 보호라는 또 다른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뤄내느냐의 문제임.
- 둘째, 디지털 자료 집적 및 처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참여의 통로 보장은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일반 시민들에게 행정데이터 연계에 대해 교육을 통해 정보를 알려주고 프라이버시 딜레마 문제를 시민들이 숙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 덴마크의 경우에는 The Digitization and IT Committee를 두고 있음(The Danish Parliament, 2023).
 - 디지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국민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셋째, 디지털 환경 안전 강화 및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의 점증하는 추세와 가속화 현상을 염두에 두면 공공영역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의 디지털 경제사회지수(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는 디지털 안전과 관련된 지표를 담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23). 국내의 디지털 복지 전환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언급한 시민참여라든가 정보 거버넌스와 함께 디지털 환경 안전의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지수의 개발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넷째, 위기관리를 위한 최적의 정보의 수 및 종류를 찾아내야 함. 현재는 시스템 발전기에 해당하므로 과도한 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취약 집단의 정보 보호와 최일선 사회복지 관료의 업무경감을 위해 최적의 정보 종류와 수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과 선택권, 자동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점은 정책적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마련된 법적 토대가 바로 정보 주체의 실질적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다섯째, 다양한 위기의 발생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시급한 정책과제에 당면하여 정부는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음. 제도적 대응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임. 최근에는 외로움이나 은둔, 고립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복지국가 관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넘어 2장에서 살펴본 포괄적 관점에서의 비수급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의 발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개

입의 필요성은 대체로 높게 인식되고 있음. 그리고 취약한 집단일수록, 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동의 수준과 개입의 수용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5장에서는 도움 요청 의사와 관계가 있는 요인을 실증하기도 했음. 자격 박탈(social disqualification)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남성, 저소득층, 40~50대, 사회경제적 계층이 하향 이동한 경우, 또 국가 신뢰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 용어 : 한국 복지국가, 디지털 복지국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3절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널리 다뤄지기는 하지만 예리하게 다듬어지지 못하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전개되는 논의 거리들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논의의 단계상,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이점과 한계의 측면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각종의 이유로 뭉뚱하게 다뤄진다.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들을 다룰 때 주로 이러한 현상들이 관찰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변화한 복지국가 환경에서 예리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복지국가 역할 범위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 State)’의 문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 의제를 설정한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등의 제도 도입과 사회정책의 지속적 강화와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기틀을 단시간에 세웠다”(김기태, 정세정, 김현경, 강예은, 최권호, 최한수...김윤민, 2020). 그러나 이렇게 마련한 복지국가의 기틀에는 끊임없는 도전이 찾아오고 있다. 0.78이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낮은 출산율(통계청, 2022, 2023.6.18. 인출), 초고령사회로 빠른 진입, 30%가 넘는 1인 가구 비율(2021년 기준 33.4%, 통계청, 2021, 2023.6.18. 인출), 소득 빈곤을 넘어서는 다양한 배제의 등장,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 예측할 수 없었던 팬데믹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취약한 돌봄의 문제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2023년 3월 기사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의 가계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생계를 잇기도 힘든 상태이며, 이 중 175만 명은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커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최대수, 2023). 이러한 현상들은 ‘개인화된 위험’(Beck, 1986)을 포함하여 미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주하게 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을 가리킨다.

정세정과 김기태(2022)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의 지점을 포착했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미만 성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개인과 국가 모두를 포함하여 어떤 주체로부터의 도움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낮은 소득, 불건강 등과 같이 전통적 취약계층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공통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충분성이나 사각지대 해소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신청주의에 근거한 복지제도들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둔 바가 없었다. 당연히 이들이 처할 위험에 대응할 만한 정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복지국가 역할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는 데 있어 주요한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이들’의 문제는 복지국가의 확대와 축소의 역사적 과정에서 동시에 대두될 수 있다. 모순으로 들릴 수 있지만 복지국가의 전진과 후퇴 모두 새로운 위험 및 개인화된 위험을 낳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복지국가의 확장은 과거 사적 공동체에서 사람들 간의 비공식적인 접촉(contacts)을 통해 해결해야 했던 과업과 문제들이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공적 공동체에서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ssociation)를 통해 보장되는 가능성

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네트워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사회자본과 공적인 복지국가 사이의 길항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바 있다(Kumlin, Rothstein, 2005; Ferragina, 2017). 개인 사이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복지국가가 빠르게 대체한다면, ‘도움을 원하지도 않고 청하지 않으면서’ 공·사적 네트워크 속에서 섬처럼 고립된 인구의 비율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정체 혹은 후퇴 상황에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인구’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공적 안전망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다고 해서 그 틈을 사적 네트워크가 채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고찰은 비수급 개념을 확장시켜 복지국가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양화된 위험은 사회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며,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기존의 제도는 변화한 사회에 맞지 않게 된다’(헨리 조지, 2021).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급여의 제공이 욕구의 충족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전제(정세정, 김기태, 2022)에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는 가정된 바가 없다. 필요에 의해 발전한 제도는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와 가능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취약성(vulnerability)에 처할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디지털 복지국가’는 최근 복지국가 환경변화에 따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복지국가 발달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는 대표적인 변화다. 디지털 복지국가라는 우산 아래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 연구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

으며,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의 발굴, 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 예측, 부정수급의 발굴,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신청 및 제공 등이 실시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다.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신청 시스템, 네덜란드의 SyRI, 덴마크 글래스코 지역의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 등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논란 등이 실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디지털 복지국가의 의제를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지금까지 신청주의 복지급여 제도에서는 포착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위기관리 및 발굴 시스템의 발전, 즉 디지털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까지도 빠른 속도로 포착되기 시작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문법과 제도적 환경 안에서는 포착되지도 않고 정의되지도 않았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 디지털 복지국가의 등장에 따라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한국에서 균형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결합 등을 키워드로 하는 기술적인 차원에 한정됐다. 그에 반해 선행되어야 했을 디지털 복지국가의 윤리적, 규범적, 인권 측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소수이다(예: 김수영, 2016; 김수영, 김이배, 2014). 즉 디지털 기술의 쓰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왔지만, 그 쓰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고찰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사회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의미를 숙고하기보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발굴 및 지원 문제는 디지털 복지국가가 직면하는 대표적인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 딜레마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상술할 예정이다. 디지털 복지국가를 다룰 때, 다룰 수 있는 쟁

점은 크게 두 가지, 세분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취약 집단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낮은 접근성 이슈이다. 정보기술은 비대면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서비스 신청이나 상담 같은 비대면 서비스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가디언지는 영국 거주자 중 900만 명이 기능적 문맹이며, 성인 중 500만 명은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사용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Robert Booth, 2019).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문맹률이 낮아 다른 국가에 비해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주문을 위한 키오스크, 앱을 통한 서비스나 민원 신청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노인, 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디지털 복지국가 환경에서의 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 범위와 그에 따른 권한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역할 범위와 관련해서는 변화한 환경에서 국가가 사각지대를 더 잘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의제다. 권한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복지감시(welfare surveillance)’와 관련된 문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을 주축으로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초점을 둔 논의가 이뤄져 왔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넉넉히 잡아도 2015년 이래 다른 복지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로 부상했다. 네덜란드의 SyRI, 덴마크 Gladsaxe 지역의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 등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논란이 그와 같은 예가 될 것이다. 가디언지는 ‘디지털 디스토피아: 알고리즘이 빈곤층을 처벌하는 방법(Digital dystopia: how algorithms punish the poor)’을 제목으로 미국, 영국, 인도, 호주의 기자들이 ‘디지털 복지국가의 탄생(birth of the digital welfare

state)’과 관련하여 합동 취재한 기사를 실은 바 있다(Pilkington, 2019). 한국에서도 사회보장 관련 정보가 빠른 속도도 통합되고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이슈는 한국에서도 이미 제기됐어야 했거나 가까운 미래에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의제이다.

디지털 복지국가의 명암을 다루는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 장점은 활용하되 위험과 한계를 줄이기 위함에 있다. Fitzpatrick은 마샬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이뤄져 온 반면, 사회권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참고: Fitzpatrick, 2000; Henman, Marston, 2008에서 재인용).

2. 연구의 목적

이상의 연구 배경 아래 이 연구에서는 변화한 복지국가 환경에서 예리하게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복지국가 역할 범위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 State)’의 문제로 설정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도움 요청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국가의 개입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2) 디지털 복지국가의 현재를 고찰함으로써 변화한 사회환경에서 복지국가가 마주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단,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아주 세부적인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한 논의는 이미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반해 선행되었어야 할 비판적 고찰은 드물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구성, 연구의 진행 과정과 방법에 대해 다뤘다. 이 연구가 변화한 복지국가 환경에서 예리하게 다뤄지지 않는 못하고 있는 복지국가 역할 범위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 State)’의 문제로 설정했으므로 2장~4장까지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문제를, 5장은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검토했다.

2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복지국가 논의를 살펴봐야 할 이유(1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과 쟁점(2절), 해외의 사례(3절)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의 동향을 주요 관련 정책 동향(1절)과 관련 법제도 동향(2절)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4장과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4장에서는 포괄적 관점에서의 비수급 개념을 다루고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헌 고찰과 탐색적 차원의 분석을 시도했다. 5장에서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1절)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2절)을 분석했다. 3절에서는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6장 결론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 제언을 도출하여 정리했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1. 연구 방법

이 연구가 활용한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연구진 회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연구 관련 포럼의 개최와 참가, 양적 조사 수행과 심층 인터뷰, 국외 출장 등이다. 양적 조사 및 심층 인터뷰의 조사 내용, 표본 설계, 연구 방법 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제2023-0062호).

가.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는 19~64세 성인 4,000명을 목표 표본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웹조사로 수행되는 점과, 조사의 난이도를 함께 고려하여 65세 이상은 조사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해석도 19~64세에 한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조사의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2023년 5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이다. 표집틀은 조사수행기관이 보유한 약 20만 명의 온라인 조사 패널이다. 온라인 조사 패널은 47가지 세부적인 프로파일 질문으로 1개월/6개월/12개월마다 프로파일링이 정기 업데이트되는 등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본 조사의 표본은 2023년 4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해 모집단의 성별·연령대별·시도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비례배분하여 추출됐다. 양적 조사는 웹조사 방식으로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됐다.

〈표 1-3-1〉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의 표본 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목표 모집단	2023년 5월 31일 기준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목표 표본 및 표본 오차	① 목표 표본: 전국 4,000명 ②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pm 1.55\%p$
표본 추출 방법	성별·연령대별·시도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2023년 4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 산정	셀가중 (성별·연령대별·시도별 가중치 부여)
표집틀	조사수행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조사 패널 약 20만 명
조사기간	2023년 7월 3일 ~ 7월 19일
조사기관	에스티아이

〈표 1-3-2〉 만 19~64세 성별·연령대별·시도별 모집단

(단위: 명)

시도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64세
전국	계	6,820,385	6,589,037	8,027,947	8,609,976	4,270,128
	남	3,566,312	3,420,450	4,077,944	4,348,830	2,118,705
	여	3,254,073	3,168,587	3,950,003	4,261,146	2,151,423
서울 특별시	계	1,467,418	1,425,142	1,439,498	1,490,099	721,846
	남	701,365	712,872	712,085	733,168	345,148
	여	766,053	712,270	727,413	756,931	376,698
부산 광역시	계	417,514	394,343	491,842	540,194	303,854
	남	214,845	202,810	248,210	263,821	143,450
	여	202,669	191,533	243,632	276,373	160,404
대구 광역시	계	312,695	278,574	360,620	413,876	203,046
	남	165,160	147,926	178,020	202,269	97,663
	여	147,535	130,648	182,600	211,607	105,383
인천 광역시	계	399,363	406,924	481,351	509,573	252,664
	남	207,610	211,820	246,988	254,113	126,145
	여	191,753	195,104	234,363	255,460	126,519
광주 광역시	계	211,561	175,466	231,717	238,401	105,370
	남	110,418	90,318	115,316	118,090	50,787
	여	101,143	85,148	116,401	120,311	54,583

26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Ⅰ.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시도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64세
대전광역시	계	217,715	187,591	224,690	239,649	114,031
	남	113,970	98,846	112,032	119,599	55,624
	여	103,745	88,745	112,658	120,050	58,407
울산광역시	계	136,546	138,552	180,417	203,691	97,832
	남	77,202	74,663	92,522	102,725	49,876
	여	59,344	63,889	87,895	100,966	47,956
세종특별자치시	계	41,869	60,678	77,194	52,539	21,178
	남	21,373	29,740	38,510	27,507	10,597
	여	20,496	30,938	38,684	25,032	10,581
경기도	계	1,849,934	1,877,554	2,277,910	2,300,892	1,048,379
	남	973,312	976,991	1,160,059	1,162,813	528,094
	여	876,622	900,563	1,117,851	1,138,079	520,285
강원도	계	181,335	159,324	213,609	260,563	150,935
	남	101,139	84,696	108,880	134,492	75,495
	여	80,196	74,628	104,729	126,071	75,440
충청북도	계	200,897	186,620	234,423	268,275	143,721
	남	111,311	101,640	121,372	138,067	73,296
	여	89,586	84,980	113,051	130,208	70,425
충청남도	계	248,612	251,520	326,376	342,929	180,786
	남	137,484	136,276	173,594	182,052	92,833
	여	111,128	115,244	152,782	160,877	87,953
전라북도	계	212,487	174,490	251,194	298,216	156,920
	남	115,020	90,526	128,705	155,021	78,724
	여	97,467	83,964	122,489	143,195	78,196
전라남도	계	198,862	171,045	245,776	310,603	169,063
	남	110,917	89,848	130,762	167,436	87,465
	여	87,945	81,197	115,014	143,167	81,598
경상북도	계	277,871	264,967	366,170	447,264	250,858
	남	158,119	143,122	190,259	232,255	127,339
	여	119,752	121,845	175,911	215,009	123,519
경상남도	계	362,750	357,363	514,608	575,494	297,367
	남	202,915	188,556	264,265	294,420	149,745
	여	159,835	168,807	250,343	281,074	147,622
제주특별자치도	계	82,956	78,884	110,552	117,718	52,278
	남	44,152	39,800	56,365	60,982	26,424
	여	38,804	39,084	54,187	56,736	25,854

〈표 1-3-3〉 만 19~64세: 성별·연령대별·시도별 할당 표본

(단위: 명)

시도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64세
서울특별시	남	82	83	83	85	40
	여	89	83	85	88	44
부산광역시	남	25	24	29	31	17
	여	24	22	28	32	19
대구광역시	남	19	17	21	24	11
	여	17	15	21	25	12
인천광역시	남	24	25	29	30	15
	여	22	23	27	30	15
광주광역시	남	13	11	13	14	6
	여	12	10	14	14	6
대전광역시	남	13	12	13	14	6
	여	12	10	13	14	7
울산광역시	남	9	9	11	12	6
	여	7	7	10	12	6
세종특별자치시	남	2	3	4	3	1
	여	2	4	5	3	1
경기도	남	113	114	135	136	62
	여	102	105	130	133	61
강원도	남	12	10	13	16	9
	여	9	9	12	15	9
충청북도	남	13	12	14	16	9
	여	10	10	13	15	8
충청남도	남	16	16	20	21	11
	여	13	13	18	19	10
전라북도	남	13	11	15	18	9
	여	11	10	14	17	9
전라남도	남	13	10	15	20	10
	여	10	9	13	17	10
경상북도	남	18	17	22	27	15
	여	14	14	20	25	14
경상남도	남	24	22	31	34	17
	여	19	20	29	33	17
제주특별자치도	남	5	5	7	7	3
	여	5	5	6	7	3

조사표 개발은 연구의 초점을 토대로 연구진 회의와 원내·외의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양적 조사에는 가구 구성 및 응답자 일반

사항, 사회적 지지체계, 건강과 삶의 만족, 복지와 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 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조사표의 내용은 다음 외부 전문가의 서면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표 1-3-4〉 2023. 4. 26. ~ 5. 4. 요청한 조사표 서면 자문에 회신한 외부 전문가

이름	소속
이○○	○○○○연구원
김○○	○○○○대학교
이○○	○○대학교
김○○	○○○○연구원
강○○	○○대학교
김○○	○○○○○○○○원
김○○	○○대학교

나.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는 양적 조사에 참여했으며, 심층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11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터뷰는 인터뷰 진행자 1인과 인터뷰 대상자 1인, 그리고 녹음 및 진행을 도와줄 1인의 참여하에 실시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연구진 2인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인터뷰의 모든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절차(승인번호 제2023-0062호)에 따라 이뤄졌다. 연구진은 인터뷰 참여자에게 인터뷰 진행 방식과 절차, 인터뷰의 녹음, 비밀보장의 원칙, 인터뷰 참여에 대한 거부 또는 중단이 가능함 등을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표 1-3-5〉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번	이름 (가명)	성별	생년	취업상태	학력	인터뷰일	비고
1	A1	여	1963	미취업	초 중퇴	8.18	
2	A2	남	1984	취업 (일용직)	대졸	8.18	
3	A3	여	1991	미취업	대졸	8.24	
4	A4	여	1981	취업 (임시직)	대졸	8.24	1인 가구
5	A5	남	1965	미취업	대졸	8.25	1인 가구
6	A6	남	1999	취업 (일용직)	고졸	8.25	1인 가구
7	A7	남	1960	미취업	고졸	8.28	
8	A8	여	1983	미취업	고졸	9. 4	1인 가구
9	A9	여	1992	미취업	대학 수료	9. 7	
10	A10	여	1982	취업 (임시직)	대학원 졸	9. 8	
11	A11	여	1963	미취업	대졸	9. 8	1인 가구

인터뷰 장소는 투명 창문 또는 투명 출입문이 있는 4~8인 정원의 공간에서 이뤄졌으며 인터뷰 시작 시에는 음료를 제공하였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60~120분 이내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심층 인터뷰 조사에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한 이유, 국가의 복지제공에 대한 생각 등을 질문했으며, 질문지는 인터뷰 섭외 과정에서 미리 전달하였다.

[그림 1-3-1] 개인 인터뷰 질문

[Q1] 귀하께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응답을 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사안의 경중이나 도움 요청의 결과와 관계 없이 무엇이든 말씀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2] 귀하께서는 국가가 건강보험(예: 중증질환), 고용보험, 채무조정 정보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1) 미리 예측하고 2) 개입하여 정책을 지원하여 보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3] 1인 가구의 증가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각종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거나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정책을 지원하여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때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개인이 미리 신청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귀하께서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나 신청 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귀하께서 만일 위험에 처한다면 귀하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도 국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전문가 포럼

연구를 위해 2023년 3월 17일과 8월 11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3월에는 통합사례관리사와 ○○일보 기자가 참여하여 도움을 거부하는 현장 사례들을 다뤘다. 8월 포럼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와 쟁점, 디지털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의 쟁점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3월 포럼을 통해 연구의 방향과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8월 포럼을 통해서도 해외의 동향과 한국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3-6〉 2023년 3월 17일 전문가 포럼

구분	내용
일시	2023년 3월 17일 10시~12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사무소
구성	참여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영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일보 기자 권○○ 통합사례관리사 조○○ 통합사례관리사 양○○ 통합사례관리사 최○○ 통합사례관리사
내용	○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 왜 도움을 원하지 않을까? - 도움받을 곳은 있는가? - 어떤 경로로 도움을 원하지 않게 되었는지? - 도움을 원하게 되는(국가 개입을 수용하는) 경로는 어떠한가? ○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국가는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논의의 내용은 포럼 당일 논의의 흐름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표 1-3-7〉 2023년 8월 11일 전문가 포럼

구분	내용
일시	2023년 8월 11일 10시~12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평실
구성	[발표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의의와 쟁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2] 디지털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의 쟁점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토론: ○○○ ○○○ ○○○ ○○○ ○○○

한편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은 본 연구와 별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 관련 사업으로 수행 중인 포럼이다. 이에 이 포럼은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의 일환으로 2023년 9월 12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국가 개입 수준에 관한 문의를 주제로 제3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제3차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 내용에서 통찰을 끌어낼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사전 질문이 포럼 전에 전달되었으며, 포럼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을 통해 도출된 내용은 임덕영, 남윤재(2023)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그림 1-3-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논의 사항

- Q1. 선생님께서는 일하시는 지역에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례를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요? 아래 부가 질문들까지 참고하셔서 종합적 또는 각각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Q1-1.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문제(예: 정신건강, 아동학대, 빈곤)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서 눈에 띄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었습니까?
- Q1-2. 도움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께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Q1-3. 도움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본인의 의사에 반해) 지원이나 개입이 이뤄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해당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동의 등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습니까?
- Q2. 선생님께서는 복지지원을 위해 정보를 수집, 연계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Q2-1. 있었다면 해당 사례는 어떻게 진행 및 종결되었습니까?
- Q2-2. 그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과 그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Q3. 선생님께서는 수집, 연계된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발굴이나 지원을 위해 대상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했을 때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시나요? (정보의 수집과 연계에 대해 설명하시는지요?)
- Q4. 1) 사회보장의 문제와 2) 프라이버시 존중, 3) 도움 요청 의사의 문제가 충돌할 때 국가는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지원 범위와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Q5. 선생님께서는 복지제공을 위해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예: 현재 활용되고 있는 행정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험 사례 발굴을 위해 활용된 알고리즘의 품질과 양)이 복지제공의 차원(발굴, 권리구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를 기반으로 또는 디지털 정보기술이 현재 수준과 같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Q6.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복지제공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 중에서,
- Q6-1. 적절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데이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 Q6-2. 인권,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아야 할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국외 출장

국외의 최신 동향을 살피기 위해 2023년 6월 4일~10일까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를 방문하여 관련 연구자들과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서구와 북유럽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복지국가 관련 쟁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국가별 방문 기관과 면담자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3-8〉 국외 출장 일정 및 면담자

구분	내용
일정	2023.6.4.~2023.6.10.
출장자	정세정, 곽윤경 부연구위원
면담자	네덜란드(암스테르담) Assistant prof. Tijmen Wisman Platform Bescherming Burgerrechten Ronald Huissen (Platform Bescherming Burgerrechten)
	노르웨이(오슬로) prof. Jon Christian Fløysvik Nordrum, prof. Ingunn Ikdah, research assistant. Anna Pettersdatter Melkild (U. of Oslo, Faculty of Law)
	덴마크(코펜하겐) prof. Naja Holten Møller(U of Copenhagen), Post.doc., Benjamin Schwarz

2. 연구 진행 과정

연구의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3-3] 연구의 주요 진행 과정

내용
- 원내 착수워크숍 (2023.2.22) - 연구진 킥오프 회의 (2023.3.2~3.3) - 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023.3.15) - 연구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전체 연구진 회의 (2023.3.17) · 연구 내용 구체화 및 조사 방안 논의 - 전체 연구진 회의 (2023.3.30) · 조사표 구성, 연구 방향 점검 - 전체 연구진 회의 (2023.4.13) · 논문 발제, 연구 방향 점검 - 원내 연구진 회의 (2023.4.17) · 조사표 점검, 보고서 구성 논의 - 원내 연구진 회의 (2023.4.24) · 조사표 보완 - 전문가 서면 자문 요청 및 회신 (2023.4.26~5.4) - 전체 연구진 회의 (2023.5.4) · 조사표 보완 - 원내 연구진 회의 (2023.5.15) · 해외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논의 - 원내 연구진 및 내부 전문가 자문회의 (2023.5.18) · 해외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사전점검 - 해외 전문가 자문회의 (2023.6.4~6.10) - 원내 중간워크숍 (2023.6.27) - 해외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대해 원내 연구진 및 전문가 공유 (2023.6.27) - 전체 연구진 및 조사업체 회의 (2023.6.29) · 조사표 로직 및 문항 검토 - 외부 연구진 회의 (2023.7.14) - 전체 연구진 회의 (2023.7.24) · 해외 사례, 한국 사례 고찰 및 공유 계속 및 분석틀 논의 - 디지털 복지 관련 포럼 개최 (2023.8.11) ·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와 쟁점 · 디지털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의 쟁점 - 전체 연구진 회의 (2023.8.21) - 사회보장 모니터링 포럼을 통한 의견수렴(2023.9.12) - 전체 연구진 회의 (2023.9.14.) *내부 연구진 회의 및 내부 전문가 간담회 (수시) - 원내 최종워크숍 (2023.10.19)
* 조사의 기획과 수행 - 조사표 개발 (2023.2~2023.6) - IRB 승인 (2023.6.22) - 조사 실시 (2023.7.3~7.19) - 데이터 검토, 보완요청 및 회신 (2023.7.25~8.10) - 심층 인터뷰 수행 (2023.8.18.~9.8)



제2장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제1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

제2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 및 쟁점

제3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

제2장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제1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

20세기 초반 노동계급의 성장, 사회주의의 발흥,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 등을 계기로 복지국가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당시 제기된 주요한 도전 중 하나는 국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로저 백하우스, 2005). 또, 분배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원리를 개발해야 했다. 전후 서구의 국가 팽창에는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한 몫했다. Judt(2007)는 “계획자, 조정자, 촉진자, 중재자, 제공자, 관리인 및 보호자로서 국가에 대한 믿음은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p. 362)고 언급한 바 있다.

Titmuss(1976)는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정교화했다. 그는 ‘복지의 사회적 분업: 형평성 추구에 대한 몇 가지 고찰(The social division of welfare: some reflections on the search for equity)’(Titmuss, 1976, 2장)을 통해 복지의 분업구조를 사회적, 재정적, 직업적(occupational) 차원으로 구분하고 복지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냈다(Henman, Marston, 2008).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에는 교육, 건강, 주택, 아동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재정복지는 자녀, 배우자, 주택담보대출 감면 등 개인이 세금 제도를 통해 받는 혜택을, 직업복지는 병가, 직업 연금, 건강관리, 교육 등 개인이 고용을 통해 받는 혜택을 의미한다(Henman, Marston, 2008). 해당 서술에서 Titmuss(1976)는 웰빙의 다양한 형태인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

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행정적 절차나 제도적 장치에 의한 복지의 구분이 근본적인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정복지는 흔히 자신의 것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직업복지는 국가와 무관하게 자신의 노동 및 고용 계약을 통해 얻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복지는 자주 ‘복지 의존성’ 담론의 경우처럼 과분한 것으로 간주(Fraser, Gordon, 1994)되고는 한다. 그러나 Titmuss(1976)는 다른 형태의 제도를 통해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빈곤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취약한 사람들이 받는 복지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Titmuss(1976)는 차이가 인식될 때는 유사성을, 유사성이 인식될 때는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1950년대 영국에서 취약한 아버지가 조세 제도를 통해 받는 자녀 양육 지원은 저소득층의 아버지가 사회복지를 통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상당한 정책 개혁으로 이루어졌다(Titmuss, 1976).

Titmus(1976)의 선구적인 작업 이후 반세기가 넘게 지났다. 그 사이 사회정책 영역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가장 큰 환경변화를 당면했다. 이러한 가운데 Fitzpatrick(2000)은 Titmuss의 복지의 분업구조 틀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권이 다뤄지는 방식에 주목했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권에 대한 논의가 간과되어 왔다고 주장한 것이다(참고: Fitzpatrick, 2000; Henman, Marston, 2008에서 재인용). 그는 특히 ‘사이버 공간은 고르고(flat) 다각적인 공간(multilateral place)이 아니며, 네트워크의 노드(node)들은 모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2000: p. 390)에 주목했다. Titmuss가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를 제 공받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지적했다면 Fitzpatrick(2000)은 디지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차별을 지적한 것이다. Fitzpatrick(2000)은 특히 그 차별을 디지털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그중에서도 감시(surveillance)를 다뤘다.

그에 따르면 세 복지 영역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므로 복지 형태에 따른 감시도 동등성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복지를 통해 가족 관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재정 또는 직업복지를 통해 가족 관련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구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점검이 동등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Fitzpatrick(2000)은 바로 이와 같은, 수혜자가 복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 또는 가치적 구분이 존재하며 이는 점검, 감시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실업자는 다른 실업자에 비해 더 위험하거나 더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감시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McDonald, Marston, and Buckley, 2003). 참고로 Gandy(1993)는 차별적 감시 처우가 차별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으며, Lyon(2003)은 감시를 통해 감시 대상을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차등적인 감시 또는 거버넌스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구별되는 점검이나 거버넌스가 나쁜 측면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Dornan과 Hudson(2003)이 주장한 것처럼, 표적화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상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장기 실업의 예상 위험에 따라 실업자를 분류하고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의 유명한 구직자 분류 지수가 그 예다(Department of Employment, Workplace Relations and Small Business, 1998; McDonald, Marston and Buckley, 2003).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itmuss에 따르면 세 가지 형태의 복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나 자신의 몫을 되돌려받는 것처럼 간주되는 재정복지,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 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것처럼 간주되는 직업복지와 달리, 사회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차별 또는 구별은 전 세계가 직면한 디지털화의 환경변화 속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표적화, 점검 또는 감시 같은 갈등과 불평등의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복지의 디지털화는 복지국가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에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Collington, 2022).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의 ‘복지’국가¹⁾들은 AI를 서비스에 도입하는 것에서부터 관리, 행정 데이터 개방에 이르는 광범위한 디지털화 계획(digitalisation initiatives)을 채택함으로써 공공 조직과 행정의 기존 방식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Collington, 2022).

서구에서는 복지의 디지털화가 복지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Alston, 2019).²⁾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화가 복지국가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예: van Zoonen, 2020; Collington, 2022). 구체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축소/확대, 공공부문 역량의 강화/약화라든가 투명성과 관련된 제도적 공백, 시민참여의 부재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작은따옴표는 번역 과정에서 필자가 덧붙임, 원문에서는 Welfare state bureaucracies로 서술.

2) 동 보고서(Alston, 2019, p.23)에서는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다양한 발현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연구는 프라이버시권, 차별 금지, 공정한 재판, 표현과 정보의 자유 같은 전통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디지털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포착한 연구는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2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 및 쟁점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국가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자료의 구축 및 활용은 급여의 보편화, 충분성 보장,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요소로 인정됐다. 동시에 서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숙기를 지나면서 급여의 부정 및 과오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로 정보 인프라 구축이 인식되는 측면도 있었다.

국가가 개인의 민감 정보를 누적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공이 독점하는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 등과 같은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유관하게 등장했다. 디지털 하에서는 두 개의 숫자에 정보와 복지, 권력과 인권, 안전이 담보된다. 정보재는 초기에는 생산은 어렵고 접근성이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과 확산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접근성이 높아진다(김수행, 2006; 아론 바스타니, 2020). 점차 방대한 개인정보가 디지털의 형태로 구축되면서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다. 개인정보 획득 및 공유, 유출 과정에서 개인 동의의 문제와 이와 관련한 인권 보장의 문제가 등장하게 됐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 state)(Alston, van Veen, 2019; Jørgensen, 2021), 디지털 사회정책(Digital social policy)(Henman, 2022), 디지털 복지(Digital welfare)(Melchiori, Sanches, Cruz, Diniz, and Cunha, 2023) 등이 있다. 이번 절에서는 유사한 개념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디지털 복지국가’ 개념의 정의 및 활용 내용, 윤리적 논점,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2-1〉 디지털 복지국가의 정의 혹은 설명들

구분	내용
Alston (2019, p. 2)	“사회보호와 사회부조 제도가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로 더 자주 추동되면서, 자동화, 예측, 선별, 감시, 추적, 표적, 처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Kersing, Oldenhof, Putters, van Zoonen. (n.d.)	“자동화, 예측, 선별, 감시 및 개입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구동되는 사회보호 및 사회지원 시스템”
van Zoonen (2020, p. e10)	“데이터가 추동하는 사회정책으로의 변화”
Jørgensen (2023, p. 135)	“공공기관이 사회보호 및 사회부조 제도, 공공육, 보건의료 등과 같은 공적 서비스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

자료: 필자가 자료들을 수합해서 정리

먼저 디지털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를 가장 선구적으로 제시했던 Alston(2019)의 유럽연합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호와 사회부조 제도가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로 더 자주 추동되면서, 자동화, 예측, 선별, 감시, 추적, 표적, 처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로 설명했다. 이후 연구들에서도 Alston(2019)의 정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Kersing, Oldenhof, Putters, van Zoonen, n.d.; van Zoonen, 2020). 〈표 2-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의 및 설명 등을 종합하면, 디지털 복지국가는 세 가지 요소로 확인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정보의 방대한 집적과 이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전제로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정보와 기술이 사회보호, 사회부조 등 전통적 사회정책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사회정책 영역에서 디지털 정보와 기술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효과, 이를테면 자동화, 예측, 감시, 처벌 등을 포괄한다.

Henman(2022)은 디지털 복지국가의 역사가 2차 대전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았다. 영국의 연금사회보험부(Ministry of Pensions and National Insurance)는 인건비 감축을 목적으로 직원의 임금 및 통

계를 생산하는 자동데이터처리설비(Automatic Data Processing equipment)의 사진을 1959년 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당시의 데이터 설비가 디지털 장비일 가능성은 없지만, 데이터 집적 및 처리를 기계화했던 시도로 보인다. 1967년에 호주의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는 연금수급자에게 전자식 급여 지급을 시작했다. 그 이후 40년 동안 컴퓨터 기술은 사회정책의 집행과 실천에서 기술적인 중추 역할을 맡은 것을 물론이다. 데이터 분석 기술과 머신러닝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정책뿐 아니라 공공행정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Henman, 2022).

UN은 디지털 복지국가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이미 현실화됐거나 부상하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자동화, 예측, 식별, 감시, 탐지, 표적화 및 처벌에 사용되는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에 의해 점점 주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Alston, 2019). 또한 디지털 복지국가가 통제와 처벌의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으려면 사기, 비용 절감, 제재, 시장 중심의 효율성 정의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디지털 복지국가는 단순히 개인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집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Melchiori et al.(2023)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생체인식(biometrics) 기술이 디지털 복지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경향을 주목한다. 물론, 이와 같은 기술 변화가 복지 영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은 적용되고 있다. 이를 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125만 명의 국민이 정부24(www.gov.kr/portal/main)에 방문하고, 이곳에서 2023년 3월 기준 1,336종의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3. 4. 19. 보도자료). 그러나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

뤄지는 곳 중 하나는 바로 사회보장 영역이다(Melchiori et al., 2023).

디지털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를 Larasati Yuda, Syafa'at(2023)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제기한다. 차별(discrimination), 배제(exclusion), 불평등(inequality)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다. 앞서 살펴본 디지털 복지국가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지털 복지국가의 등장은 분명한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Alston(2019)은 디지털 복지국가의 저항하기 힘든 추세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복지국가가 “디지털 복지의 디스토피아로 좀비처럼 걸려 넘어질 위험성”(p.21)이 있다고 강조한다. 즉, 디지털 기술 발전이 끌어낼 복지행정의 효율화, 사각지대의 해소 등과 같은 발전적인 측면 외에도 부정수급의 발굴 과정에서 나타날 인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훼손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수행되고 있다. 관련 논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Melchiori et al.(2023)에 따르면, 디지털 복지를 다루는 논문이 26편 출판됐다. 그 가운데 16개는 유럽지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참여했고, 6개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지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었다. 다른 논문은 다양한 국적의 연구기관에서 참여했다.

Melchiori et al.(2023, p.6)은 복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디지털화의 일곱 가지 이유를 다소 모호하게 제시했다.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제시된 내용을 다소 투박하게 나열하면서 생긴 문제로 해석된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복지서비스의 표준화 및 일관성이다. 둘째, 복지 영역에서 관료의 과도한 재량적 판단 혹은 개입을 막고자 하는 동기다. 셋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의 주도성 및 역량을 높이고자 함이다. 넷째, 수급자가 신청 및 수급을 위해서 먼 거리

를 이동하는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다섯째, 복지급여의 과오수급을 막고 관련한 부정행위를 시정하고자 함이다. 여섯째, 행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곱 번째, 행정 과정에서 종이 서류 작업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해서 경비를 줄이고자 함이다.

사회정책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범주에서 이뤄진다. 여기에서는 Alston(2019)이 정리한 여섯 가지 범주에 필자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소개하겠다. Alston(2019)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첫째, 본인 인증(identity verification)이다. 본인 인증은 급여 신청, 자격 심사, 급여 지급 등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급여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중복 급여, 부정 및 오류 수급을 막고, 급여 지급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주로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생체인식기술을 통해서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지문 및 얼굴 정보가 포함된 전 국민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본인 인증 데이터 집적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보안, 사이버보안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Alston, 2019).

둘째, 급여 자격 심사(Eligibility assessment)이다. 즉, 급여 자격 심사를 디지털화하는 경우다. 이를테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4년부터 사회부조운영시스템(Social Assistance Management System)을 통해서 급여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IBM이 개발한 Curam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이는 호주, 독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활용한다. 2015년 온타리오주의 감사원은 프로그램 집행 과정에서 1,13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셋째, 복지급여액 계산 및 지급(Welfare benefit calculation and payments)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은 복지급여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급여액이 설정되고 지급되고 있다. 영국의 실시간 소득 정보시스템(Real Time Information system), 캐나다의 사회부조운영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에서는 급여 수급자에게 별도의 카드도 발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Alston, 2019). 먼저, 수급자들이 사회보장 수급에 관한 권리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카드의 소지로 인한 스티그마 효과로 인해서 수급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된다. 끝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모니터링되면서 인권 침해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넷째, 부정수급 예방 및 탐색(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이다. 주요 복지국가에서 디지털 기술은 주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네덜란드의 SyRI 시스템이 이와 같은 예에 해당한다. 여기에도 개인정보 보호 침해의 여지가 있다.

다섯째, 위험의 점수화 및 범주화(Risk scoring and classification)이다. 복지국가들은 특히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데, 다음 절에서 살펴볼 덴마크 외에도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이 그와 같은 예가 된다. 실업급여에서도 해당 기술이 활용되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잡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 및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직자들을 범주화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정책은 한국에서 이른바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디지털의 순기능이 도드라진다. 다만, Alston(2019)은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위험을 예시했다. 첫째, 전체 인구집단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예측 모델에 따라 개인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이다. 둘째, 점수화 및 범주화의 근거가 되는 기술이 공

개되지 않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다. 셋째, 점수화 및 범주화가 현재의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다.

여섯째, 복지 수급자와 기관 사이의 소통(Communication between welfare authorities and beneficiaries)이다. 과거 직접 방문, 전화, 편지 등을 통한 소통 방식은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영국의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에서 해당 문제가 의제가 되고 있으며, 호주와 그리스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스웨덴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잡한 온라인 시스템의 집행을 철회한 바 있다. 시스템이 결정한 것 가운데 최대 15%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Alston(2019)의 여섯 가지 범주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일곱 번째로 급여 지급 당국 사이의 소통 및 연계도 제시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급여 간 연계 및 조정, 급여 자격 심사, 급여 지급 결정, 급여 간 상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쟁점을 남긴다.

사회정책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다. 김수영(2016)의 연구는 사회복지 정보화가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정리한 국내의 보기 드문 선구적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정보화와 관련한 윤리 쟁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했다. 물론, 해당 네 가지 쟁점은 Mason(1986)이 제시한 범주를 준용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쟁점에 붙여서 필자가 두 가지를 덧붙여서, 여섯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는 자신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조건 아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수영(2016)은 정부의 다각적 정보 수집이 몇 가지 결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사적 데이터의 공개 범주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통장거래내역과 통화내역도 모니터링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 데이터 감시도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지불식간에 이뤄진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집단 데이터 감시는 수급자 전체에 대한 ‘유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하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수급자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 수급자들은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개인의 신상 정보를 더 누설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 이를테면, 부양의무자인 자녀와의 연락이 두절 됐음을 소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추가로 노출해야 할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둘째, 정확성의 문제다. 국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사망 및 출생 신고가 반영되지 않거나 과거 소득이 현재 소득과 합산돼서 제시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수영(2016)이 지적한 데이터 부정확성의 문제는 2023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임덕영, 남윤재, 2023)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복지 담당 공무원의 의견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다.

“행복e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통보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함.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통보되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위기가구 통보자료의 정보가 불일치함. 전화번호 불일치, 연락 두절, 빈집 등으로 가구원 정보 확인에 어려움 있음”(임덕영, 남윤재, 2023).

“최근 각종 데이터와 시스템 연계로 관리비 체납, 건보료 체납 등 정보

가 넘어오고 있어 위기 사유에 대한 가시적인 파악이 가능. 다만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선 조금 더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정보가 없을 때는 파악하면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미 있는 자료가 맞지 않을 경우 도움이 아닌 방해 요소로 작용”(임덕영, 남윤재, 2023).

김수영(2016)은 정보 연계를 통해서 실제로 부정수급을 포착하는 경우는 “의외로 적다”(p.209)고 지적한다.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시스템 안’에서만 정확할 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김수영, 2016, p. 209). 현장 공무원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오류를 수정하느라 대면 접촉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기회를 오히려 놓치고 있다(김수영, 2016; 임덕영, 남윤재, 2023).

물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리고 당분간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셋째,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다. 김수영(2016)은 급여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자기 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되는데,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국가는 정보 제공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당 정보의 활용, 분배, 처분에 관한 권한을 얻게 되는 상황”(p.211)이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2023a, 2023. 4. 24. 보도자료). 새롭게 포함된 발굴 시스템 연계 정보는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② 수도 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 위기 정보였다.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부각되는 문제는 정보의 처분권이

다. 김수영(2016)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연계된 정보들의 보유 기한 만료가 설정되지 않은 결과, 수급자들의 정보처리권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넷째, 접근성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소득 및 재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해당 공무원에 한정됐다(김수영, 2016). 물론, 개인 및 가구의 소득과 재산 데이터를 일반인들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더욱 크다.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네덜란드 SyRI의 알고리즘도 폐쇄성 및 비공개성 때문에 문제가 된 바 있다.

Mason(1986)과 김수영(2016)이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다섯 번째 쟁점은 디지털 자료 집적 및 처리 과정에 관한 민주주의의 문제다. 앞선 네 가지 의제를 다루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³⁾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집적 및 처리를 통한 개인의 사회권 보호와 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인권 침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둘러싼 의사결정의 투명성, 민주성 및 책임성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데이터 3법’의 개정 과정에서 정보 인권 침해와 사회적 합의 부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오병일, 2019). 데이터 집적, 공유, 활용, 저장 및 데이터의 알고리즘에 대한 적정 정도의 정보공개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및 집행 과정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해서, 영국의 사례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Cameron, Pope, and Clemence, 2013).

여섯째, 디지털 정보의 활용에 근거한 개입의 문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데이터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위기 아동의 징후

3) 이 부분은 김수영, 김수원(2022)에서도 데이터를 둘러싼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일부 다룬 바 있다.

가 보이면 케이스 워커가 해당 가구에 개입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개입에 동의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23년부터 44종의 위기 정보에 근거해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소방 협력을 통한 비상 개문 지침을 마련했다. 위법 혐의에 대한 개입에 준하는 국가의 물리적인 개입을 정당화하는 조치로 파악된다. 이 대목에서, ‘디지털 정보에 근거해서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인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Melchiori et al.(2023)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디지털 복지국가와 관련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디지털 복지가 추동하는 방향을 다음 〈표 2-2-2〉와 같이 정리했다. 다섯 가지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제와 불평등의 추동, 둘째, 시민권의 의미 변화 추동, 셋째, 현장 관료의 역할 변화 추동이다. 그리고 넷째, 불투명성의 심화, 다섯째, 시민 대상 감시 추동이다. 이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현상이 복지국가의 미래에 초래할 변화는 복합적이다. 물론, 현재 부각되는 비판의 지점들은 디지털화 초기에 일정한 시행착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디지털화 경향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가깝다.

〈표 2-2-2〉 디지털 복지가 추동하는 변화

변화	내용
1. 배제와 불평등을 추동	- 디지털 복지는 현재의 불평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배제를 양산. 배제집단에게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문제로 나타남 - 디지털 복지는 수급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시민의 역량을 약화시킴
2. 시민권의 의미 변화 추동	- 디지털 관련 서비스를 탐색하는 방법을 혼자서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을, 현재 디지털 복지정책은 다소 이상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디지털 복지정책에서 자동화된 결정은 개인의 주체성, 인권, 수치심,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과소평가함
3. 현장 관료의 역할 변화 추동	- 공공부문의 현장 직원들은 시민을 위한 안내자에서 시민의 디지털화에 대한 안내자로 변화 - 시민의 요구와 정책 입안자의 요구 사이에서 도덕적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
4. 불투명성의 심화	-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한 지향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매개하는 복지는 서비스 제공에 새로운 형태의 불투명성을 도입 - 디지털 기술이 매개하는 복지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모호한 알고리즘의 결과로 시민과 관료의 정책 이해 능력을 약화시킴 - 이러한 불투명한 관행이 새로운 디지털 복지에서 합법적인 통제와 배제의 수단으로 사용됨
5. 시민 대상 감시 추동	- 복지 시스템의 아웃소싱, 접촉자 추적에 기반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감시를 촉진하기 위한 개인 데이터의 집중적인 사용 등이 취약한 시민의 소외를 심화하거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자료: Melchiori et al.(2023), pp.7~8 내용을 필자로 표로 정리함.

Melchiori et al.(2023) 역시 디지털 복지에 대한 체계적 고찰의 대상이 된 논문 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전의 아날로그 방식의 서비스로 돌아가자는 정책 제언을 낸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디지털 복지가 보다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인간 중심적이고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기를 주장한다”(p.8)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화가 동반할 수 있는 효율성, 투명성, 과학성, 중립성, 효과성 등의 장점을 살리되, 여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평등, 사생활 침해, 배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다.

Alston(2019)의 입장도 유사하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술을 포함

한 디지털 기술은 그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많은 혜택을 촉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적절한 재정 정책과 인센티브, 규제 이니셔티브,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진보적인 디지털 복지국가를 설계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혜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p.12).

디지털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복지축소의 의도가 어른거린다는 혐의도 있다. 덴마크의 사례를 검토한 Collington(2022)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덴마크의 디지털화 전략을 살펴봤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공공부문 행정 및 서비스 제공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인프라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는 공공부문의 역량과 공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저하, 즉 복지국가의 축소로 이어졌다(Collington, 2022).

Collington(2022)의 논의를 보면,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에 대한 책임의 이동이 어떻게 일종의 축소로 간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암시를 준다. 그러한 차원에서 Pierson(1994)의 ‘체계적 축소(systemic retrenchment)’ 개념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 개념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의 맥락에 변화를 줌으로써 예산 삭감 등의 긴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체계적 축소는 자산조사 의존도 증가,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책임 이양, 급여와 수급 자격의 급격한 변화 등을 통해 야기된다(Pierson, 1996, p.157). 이러한 체계적 축소의 과정에서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한참 후에는 공공 목표를 실현하는 역량이 저하된다(Pierson, 1994, p.14). 체계적 축소 개념을 디지털 복지국가 환경에 적용하면, 복지국가의 인프라 변화

를 유도하는 정책은 예산 삭감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통치력 감소와 복지국가의 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

덴마크의 공공부문의 자산과 IT 역량에 대한 책임 이양은 디지털 기술과 정보의 거버넌스에 중대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복지국가 모델에 점점 더 강력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덴마크의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살펴보는 것은 복지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려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교훈과 경고를 동시에 던져줄 수 있다(Flyvbjerg, 2006).

더불어, 제도적 공백(institutional void) 개념도 검토 가능하다. 디지털 복지국가 논의에 제도적 공백 개념을 가져오면 사회 정책에서 어떤 새로운 규칙, 규범 및 개입이 데이터 전환을 형성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공식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van Zoonen(2020)은 네덜란드에서 이뤄진 복지의 디지털화를 고찰한 뒤, 복지의 디지털화에 민주적 위임 과정이 없는 제도적 공백, 데이터와 분석 모델 품질의 문제, 개인 정보 보호법(GRDP)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은 복지를 제공받기 위함에 있으나 이는 사기를 감지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결국 민주적 위임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시민들의 참여를 고객 만족도 같은 단순한 설문조사에만 참여하는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

이번 절에서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이 사회적 논쟁을 크게 불러일으킨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험이다. 덴마크(Jørgensen, 2021)나 네덜란드(Bekker, 2021)에서도 복지국가의 디지털화가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1. 덴마크 모델⁴⁾

먼저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코펜하겐과 인접한 Gladsaxe 지역의 2018년 정책 실험이 주목을 받았다(Jørgensen, 2021). 이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취약 아동을 일찌감치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모델을 발전시켰다. 이 모델의 목적은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아동이 실제 특별한 위험에 직면하기 이전에 해당 아동을 포착해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모델은 포인트에 근거해서 작동했는데, 이를테면 정신건강(3,000포인트), 실업(500포인트), 의사와의 면담 약속 지키지 않음(1,000포인트), 치과 의사와의 면담 약속 지키지 않음(300포인트) 등이다. 부모의 이혼 기록 등도 참고가 된다. 모델에서는 44개의 자료가 활용됐는데, 아동 부모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 및 전력, 시민권 여부, 친자 관계 여부, 부모의 주거지, 아동의 치과 진료 기록 등이다. 이를 위해서 9개의 자료가 활용됐는데, 잡센터 기록, 중앙개인등록(central personal register), 치과 기록, 데이케어기록 등이다. 이를 통해서 특정 아동의 자료에서 위험 사전 신호가 감지되면 케이스워커에게 알린다. 케이스워커는 주어진 정보에 근거

4) 덴마크의 복지국가 디지털화 관련 내용은 영어 자료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 Jørgensen(2021)에서 활용했음을 밝힘.

해서 개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입이 결정되면 가족은 이에 동의해야 한다.

지역 정부는 정보보호법에서 해당 사업을 예외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Jørgensen, 2021). 당시 해당 모델을 전국적으로 적용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거부 결정의 이면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Jørgensen, 2021). Gladsaxe 지역의 사업은 2018년 말에 중단됐다. 모델이 잦은 오류를 낸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오류의 주된 이유는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였다. 모델 예측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117건에 불과했다.

참고로, 덴마크의 복지국가도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하고 있다. 덴마크는 매우 중앙집중적인 급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Jørgensen, 2021), 덴마크 급여지급청(Udbetaling Denmark)⁵⁾이 연금, 아동수당, 주택급여, 실업급여 등을 지급한다. 2018년 기준으로 급여지급청은 2,220억 덴마크 크로네(한화 기준 약 43조 원)의 급여를 240만 명에게 지급했다(Jørgensen, 2021). 급여지급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청은 2014년부터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했는데, 주된 목적은 과오지급 혹은 부정수급의 모니터링 및 예방에 있었다. 이를테면, 실제로 파트너와 살고 있지만 한부모가정 수당을 받거나, 실업임에도 불구하고 모성 휴가수당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지급청의 모델들은 데이터들의 점점을 통해서 급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개인들을 포착하고, 이들을 익명화한 리스트를 생산하

5) Udbetaling Denmark는 영어로 번역하면 'Payment Denmark'이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덴마크 급여지급청'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음.

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급여지급청은 해당 사례들과 관련된 감독 부서와 정기적으로 소통을 한다. 2019년까지 급여지급청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합하기 위해서 약 60개의 모델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모델들은 과거 사례에 근거해서 개별 사례들을 긍정 혹은 부정으로 표시하는데, 이를 위해 데이터 처리 기법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s)가 활용된다. 이 같은 모델들은 머신러닝에 기반한 더 복잡한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기관의 자료가 활용된다. 급여지급청의 자체 데이터 외에도 중앙개인등록부(CPR), 건물 및 주택 중앙등록부(BBR), 회사 등록부(CVR, SE), 덴마크 주소 등록부(DAR), 소득 등록부(E-income), 세금 등록부(R75), 지역별 보건 등록부, 부가가치세 등록부, 사회부조 및 상병수당 등록부(STAR)를 포괄한다. 급여지급청의 모델은 소셜네트워크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급여지급청의 데이터 기반이 공공영역에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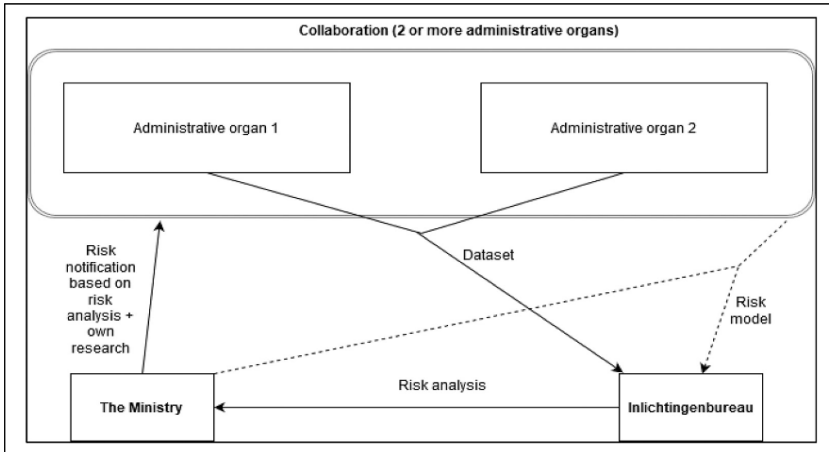
덴마크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격을 고려하면, 급여지급청이 다루는 데이터의 규모는 막대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 다수의 가구 혹은 개인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청의 데이터는, Gladsaxe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집적되고 분석되고 있다(Jørgensen, 2021). 급여지급청의 모델은 부정수급을 막는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의 개인정보를 담은 대규모의 데이터가 집적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Jørgensen, 2021).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더욱 크게 부각된다. 특히, 부정수급을 파악하기 위한 알고리즘 및 모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투명성의 문제가 남는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권을 가진 개인이 아니

라, 잠재적으로 부정수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상의 하나의 사례로 취급된다. 덴마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아직은 법적인 문제로 부상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렇지만, 다음에 살펴볼 네덜란드에서는 유사한 국가의 법 집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 네덜란드의 SyRI 모델

시스템 위험도 표시(Systeem Risico Indicatie, 이하 SyRI) 시스템은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 제도 분야에서 급여 오류, 부정수급, 세금 미납, 노동법 미준수 등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만든 법적 수단이다(Appelman et al., 2021). SyRI 프로젝트의 집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연합(collaborative alliance)” (Appelman et al., 2021, p.263)을 구성하고 특정 지역에서 SyRI를 사용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면 SyRI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 제안서는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은 관련된 모든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 그룹의 조언을 들은 후 공식적으로 SyRI 적용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여러 기관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 자료는 가명 처리를 거친다. 그리고 제안서에 설명된 위험 지표 및 모델에 따라 분석이 수행된다. 여기에서 위험 모델에 의해 특정된 사례들은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석의 대상이 된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데이터의 당사자는 위험 보고서 이후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될 때만 통보받는다. 중요한 것은 위험 모델과 지표, 임계값, 데이터 유형 및 관련자가 당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 2-3-1] 네덜란드의 SyRI 시스템에서 데이터 흐름 및 분석 과정



자료: Van Bekkum, Borgesius(2021). Figure 1.

SyRI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지방 정부, 네덜란드 조세 및 관세청, 사회보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⁶⁾ 이민 및 귀화 서비스, 고용보험청, 사회 및 고용 감찰청 같은 감독 기관 등이다. 이러한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데이터는 보건, 재정, 교육, 재정 지급, 고용 등 방대한 범위를 포괄한다. 특정 사례에 대한 ‘위험 보고서’가 제출되면, 해당 개인은 “사기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Appelman et al., 2021, p.263)된다. 이러한 자동화된 분석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이다.

6) “네덜란드의 사회보험 운영 기구는 은행(bank)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오늘날에도 사회보험 은행이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주 단체 및 노조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국가의 개입 보다는 자치적 운영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험 운영 기구가 국가에 의해서 주도 된다고 하더라도, 기구의 명칭은 중립적인 의미의 은행으로 정착되었다”(정기혜 외, 2012, p.15).

[그림 2-3-2] 네덜란드의 SyRI 모델 관련 네덜란드 정부 홍보물 및 관련 자료



자료: 네덜란드 정부 SyRI 관련 소개 파일 중 이미지(Ministe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2019). SyRI. Systeem Risico-indicatie. <https://open.overheid.nl/documenten/ronl-726a017340923eeca3e88165116108f182b36b3/pdf>에서 2023. 5. 20. 인출.)

여기서 논란이 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는 SyRI가 집행 과정에서 특정 지역,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주민이 거주하는 ‘문제’지역의 사람들을 분석하는 데만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Appelman et al., 2021).

네덜란드의 6개 시민단체들이 SyRI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동에 나섰다. 시민권 보호 플랫폼(Platform Bescherming Burgerrechten), 네덜란드 인권 변호사 위원회(Nederlands Juristen Comité voor de Mensenrechten) 등 6개 단체들은 문제 제기를 위해 연합을 형성했다(Van Bekkum, Borgesius, 2021). 이들은 2018년 3월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SyRI 시스템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이하 ECHR) 제8조를 위반했다며 헤이그 지방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 1항은 “모든 개인은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주거와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Council of Europe, n.d.). 헤이그 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개인 데이터의 정부 기관 간 연계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SyRI 법안이 ECHR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헤이그 법원의 판결의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구인들이 ECHR 제8조 위반을 주요 청구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법원은 SyRI 법안이 ECHR 제8조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헌법이 아닌 국제 인권 기준, 특히 ECHR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두는 것이 흔한 법적 관행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적용 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헌장 제7조 및 제8조와 관련한 보조 법규인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구분하여 설명했다. 법원은 “사생활 존중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ECHR의 성격을 인정하고, EU 헌장에는 “최소한 ECHR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있지만, GDPR은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ECHR에 따른 보호보다 더 확장된”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GDPR의 데이터 보호 원칙을 헌장의 기본권 보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Appelman et al.(2021)이 헤이그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판결에서 주목한 부분은 세 가지-투명성, 제도에 내재된 차별적 요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로 풀이된다.

첫째, 투명성(transparency)은 SyRI 판결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다.

SyRI의 시스템 자체가 법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즉, 위험 모델과 지표, 임계값, 데이터 유형 및 데이터 유출의 당사자조차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SyRI 시스템으로 인한 국가 개입의 정도와 심도, 국가 개입의 법적인 부합성 및 그러한 개입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세 가지 논점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Appelman et al., 2021). 세 가지 논점 가운데 첫 번째인 국가 개입의 정도와 심도에 대해서는 SyRI 시스템이 어떤 영역에 중점을 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이를테면, SyRI는 빅데이터의 수집, 자동화한 판단,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비정형데이터 수집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다면 이 가운데 무엇이 법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적절한지”(Appelman et al., 2021)에 대한 판단이었다.

두 번째 논점인 SyRI 시스템의 법적 부합성에 대해 법원은 이번 사례에 한정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세 번째 논점인 SyRI법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그러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즉, 두 번째 논점은 “피해 가거나 뛰어넘는”(Appelman et al., 2021, p.266) 방식을 헤이그 법원은 택했다. 세 번째 논점, 즉 ‘민주사회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SyRI 시스템과 관련한 모델이나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적절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적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둘째, SyRI의 불투명성은 시스템에 내재한 차별적인 성향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도 중요한 의제였다. 특히, SyRI가 이른바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이 거주하는 ‘문제 지역’에서 집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헤이그 법원은 공개적으로 “SyRI가 의도하지는 않을지라도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혹은 이민자집단에 대한 편견에 근거”(Appelman et al., 2021, p.

266)할 수 있다며 시스템이 차별과 낙인효과를 중화시킬 수 없다고 명시했다. Appelmann et al.(2021)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설하면서, 법원이 차별적인 요소를 제도의 투명성의 문제로 접근한 결과, 제도에 내재한 근원적 차별의 문제를 마치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로 치환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안전조치(safeguard)도 법원 판단의 주요 요소였다. 헤이그 법원은 SyRI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스템의 목적을 한정하고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는 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럽인권협약 8항 2조를 저촉했다는 것이다.⁷⁾ 헤이그 법원의 입장은 네덜란드 정부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수집, 집적,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감독 및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헤이그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van Bakkum, Borgesius, 2021). 네덜란드 정부는 대신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다. 새 법안의 이름은 파트너십에 의한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률안(Wet Gegevensverwerking Door Samenwerkingsverbanden)이었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슈퍼 SyRI’라 불리는 안이었다. 정부 일은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법률안은 헤이그 법원 판결의 영향도 반영됐다. 새로운 법률안의 특징은 정부 부처의 정보 교환 및 누적을 사회보장 영역에 한정하

7) 유럽인권협약 8항 1조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권리를 전제한 뒤, 2조에서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적용 예외를 제시했는데 이를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안녕, 무질서 또는 범죄의 예방, 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법률에 따르고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지 않고 폭넓게 적용하는 점에 있었다. 이를테면 금융사기, 돈세탁, 조직 범죄, 복잡한 건강 및 보안 문제 등을 포괄했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와 같은 접근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된다. 논점을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보장 부정수급’의 문제에서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 범죄’의 문제로 대치하고, 범죄의 한 범주로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서 법적인 논란을 피하고 시민사회의 동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1월 네덜란드 국가평의회가 상원에 보낸 서한을 보면 새로운 법안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Eerste Kamer, 2021, p.1)⁸⁾라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효과적인 범죄 대응도 법치주의 활동에 해당된다”(Eerste Kamer, 2021, p. 1)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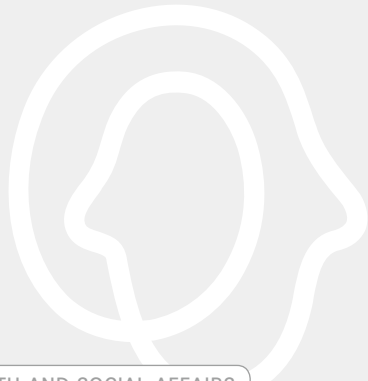
Bekker(2021)는 헤이그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사회보장 부정수급에 맞서기 위한 신기술 사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근거로 삼은 최초의 사례로 평가했다. 또 디지털 복지국가의 광범위한 출현을 고려할 때, 디지털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기회와 합법적인 경계를 탐색하기 위한 보편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네덜란드의 경험은 공공기관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와 신기술을 사용하고 이러한 기술이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8) 네덜란드 상원(https://www.eerstekamer.nl/behandeling/20211118/brief_van_de_vice_president_van_de)의 자료를 deepL에서 영어로 번역한 내용을 인용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동향

제1절 주요 관련 정책 동향

제2절 주요 관련 법제도 동향

제3장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동향

제1절 주요 관련 정책 동향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디지털 심화 시대”⁹⁾(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a, 2023. 4. 14. 보도자료)로 접어들었다. 그에 따라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2023년 4월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a)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계획은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비전으로 세우고, 추진계획으로서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에서 복지 관련 과제는 2.1. 한 곳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통합서비스(행정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통합창구로 연계·통합), 2.2.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초개인화 서비스(인공지능 기반의 알람·추천), 3.5. 공공분야 민간의 최신 AI기술 적극 활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3.5. 공공분야 민간의 최신 AI기술 적극 활용은 본인, 이웃, 신고의무자(의료인 등) 등의 신고정보를 빅데이터와 결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전 국민 복지 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전에 위기가구를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며, 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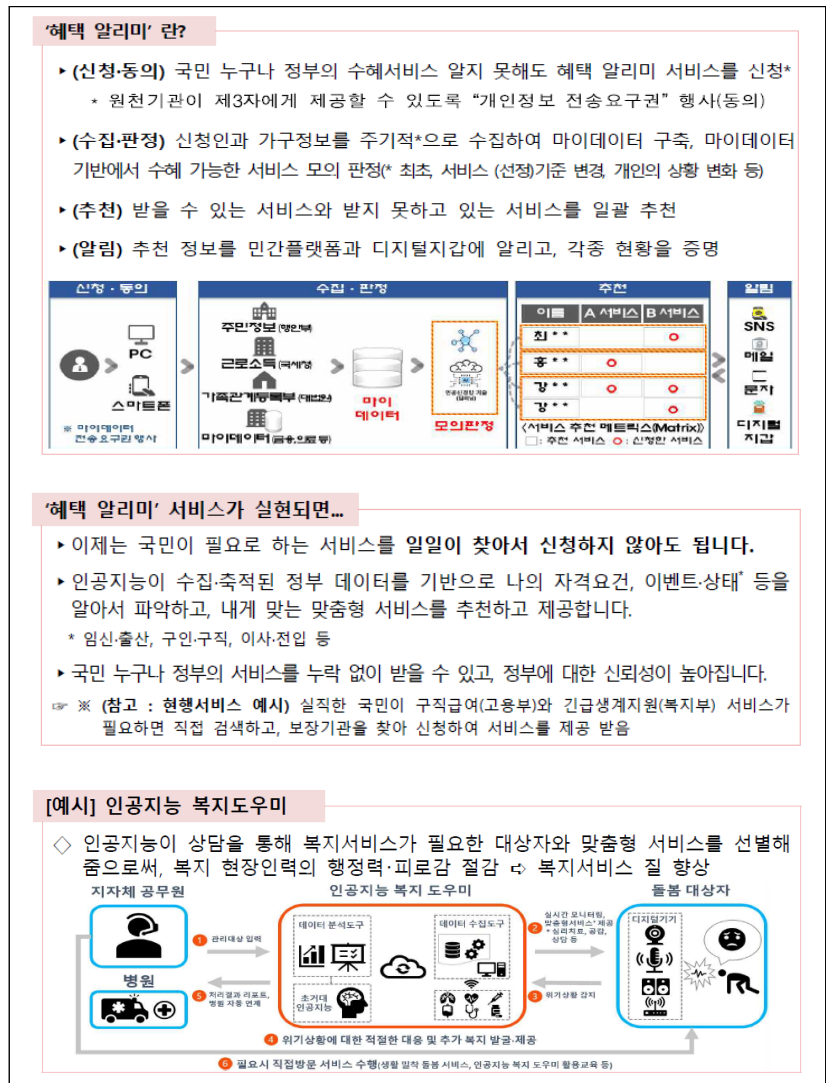
9) “국가사회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넘어, 디지털이 국가사회 구조를 파괴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a, p.1).

지능 복지도우미 도입,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디지털이 한국 복지국가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2023년 8월 28일에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추진하여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동 웹사이트의 사용성을 국민평가단이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2023, 2023. 8. 28. 보도자료). 정부24에서 다른 공공 웹/앱으로의 이동 없이 하나의 웹/앱 환경하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평가단의 도입은 시민참여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의 통로 보장은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의 계획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복지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참여할 권리의 보장, 즉 민주적 절차 마련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9월 4일에는 AI가 “단전·단수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 사각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식 등을 확인하는 사업(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인공지능 AI 복지사업, 복지부), AI가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분석하는 사업(행안부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등”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기술적, 업무적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b, 2023. 9. 4.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그림 3-1-1]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4.14)의 복지 관련 과제 예시



[그림 3-1-2] 행정안전부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예시

《 (예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조회’ 》	
현행	UI/UX 혁신
• ‘정부24’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동하여 검색 및 로그인·이용 ⇒ 각각 이질적인 UI 및 다른 서비스 여정 UX를 경험(총 10단계 절차)	• ‘정부24’에서 로그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단절 없이 이용 ⇒ 일관된 UI 및 서비스 여정 UX로 범정부 통합 창구를 경험(총 6단계 절차)

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2023. 8. 28. 보도자료).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서비스 온라인 창구 이용이 더 쉽고 편리해진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빠른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디지털화를 한은희(2023)는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는 1단계에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로 구분 이어지는 2단계에 들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봤다. 3단계에 해당하는 현재에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나 생활데이터, 음성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 3-1-1〉 한국의 디지털화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 ~2000년 (PC 중심)	- 2000~2010년 (web/인터넷 중심)	- 2011년 ~ 현재 (모바일/클라우드 중심 2015년부터 디지털 용어 본격 사용)
목적	- 정보의 디지털화: 데이터화/정보화	- IT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중심의 운영 혁신(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	- 디지털기술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매출 증대, 신규고객/매출 확보)
수단	- 개인 PC/대용량 컴퓨터 시스템/PC통신	- Information Technology	- Digital Technology
변화내용	- 정보 유형: 아날로그 → 디지털 정보로 전환	- 업무처리방식(업무 프로세스 IT화, 주문/생산 방식의 디지털화)	- 비즈니스모델(제품의 서비스화, 제품+서비스 결합, 신규 서비스)
예시	- PC+ O/A SW(윈도우, 한글 MS 오피스 등) - PC통신+이메일 - 서버(유닉스)	- Enterprise S/W(ERP/SCM) 기반 업무혁신, 공장자동화 등 - 비용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전환	- AI 기술 접목 - 공유/중개 플랫폼(Uber, Airbnb) - 가상화(가상화폐, 메타버스) - 사물인터넷

자료: 한은희(2023). 디지털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의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국가 재구조화 포럼 내부자료.

디지털 복지를 살펴보면서 전자정부 정책의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가 구축된 것은 국가기간전산망(National Basic Information System)이 구축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5대망(행정 전산망, 금융 전산망, 교육 연구망, 국방 전산망,公安 전산망) 중 행정 전산망이 1986년에 구축되었고, 1988년에는 교육전산망(KREN)과 연구전산망(KREONET)이 도입되었다. 1996년에는 정보통신부가 신설되었으며, 전자조달시스템(2002.9)과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개통하는 등(2002.11)의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격적 전자정부 정책 추진은 2000년 즈음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예: 정충식, 2021). 이러한 견해는 2000년 이후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의 수단으로 전자정부 정책이 채택됐음을 근거로 한다.

10) 전자정부 정책의 흐름은 김수영(2016), 정충식(2021), 한은희(2023)를 참조하여 정리했다.

〈표 3-1-2〉 한국 전자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김영삼 정부 (1993~1997)	- 정보통신부 신설(1994.12)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 수립(1995.3) · 정보화 기반 조성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1995.6) 및 시행(1996.1.1.) →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법률명 변경(2020.12) - 정보화촉진기금 조성(1996.1) -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1996.6)
김대중 정부 (1998~2002)	-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Cyber Korea21’ 수립(1999.3) -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e-KOREA VISION 2006’ 수립(2002.4) - 전자정부법 제정(2001.3) 및 시행(2001.7.1) - 대통령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구성 및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 전략 수립(2001.5) - 전자조달시스템 개통(2002.9) -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개통(2002.11)
노무현 정부 (2003~2007)	-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구성(2003.4) - 전자정부 로드맵 발표(2003.8) - Broadband IT KOREA 2007(2003.12) - u-KOREA 기본계획(2006).
이명박 정부 (2008~2012)	- 정보통신부 폐지(2008.2) -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 수립(2008.12)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2009.11) - 2010년, 2012년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 발표(2011.3)
박근혜 정부 (2013~2017)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2013.4) - 정부 3.0 정책 추진(2013.6) -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 - 정부 3.0 정책 추진(2014.7) - 2014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 - 전자정부 2020 종합계획 발표(2016.4) - 지능형정부 기본계획 발표(2017.3)
문재인 정부 (2017~2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족(2017.7) -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2017.9) -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개최(2017.11) - 정부혁신 전략 회의(2018.3) -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12)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2019.10) -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2019.12) -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2020.6)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20.7)
윤석열 정부 (2022~현재)	-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2022.9)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2023.4) - 데이터 칸막이 해소 위한 법제 정비 본격 추진 발표(2023.9.4.) -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핵심성과 발표(2023.9.4.)

자료: 정충식(2021)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3c).

<https://www.dpg.go.kr/DPG/main/index.do>(2023. 11. 9. 인출)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200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150여만 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소득과 재산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행정망 Client Server 시스템(C/S시스템)’을 도입한 해이기도 하다(김수영, 2016). 2007년에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의 행정정보를 연계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새울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게 했고, 2010년에는 45개 기관 589종의 소득재산정보와 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자 적발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한 2013년에는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행복e음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를 연결하여 수급자 이력 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2014).

2015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 구축이 이뤄졌다. ① 위기 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2개월 주기, 고위험군 약 20만 명(상위 4%))을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② 위기 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2020.5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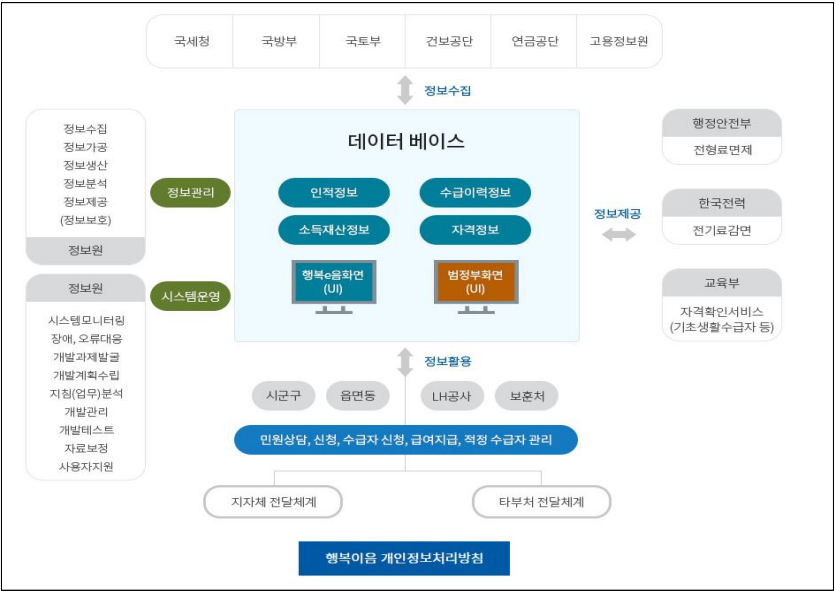
시간이 흐르면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입수하는 위기 정보는 34종에서 39종(2022.11)으로 늘어났고, 2023년 12월부터는 44종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3a, 2023. 4. 24. 보도자료). 복지등기 시범사업 확대, 민간 위기가구 발굴 업무 대상자 교육 등 민관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도 추진되었다. 경찰·소방 협력을 통한 비상 개문 지침을 마련(2023.1)하고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사업은 76종에서 80종으로 확대(2023.2)되었다.

〈표 3-1-3〉 복지의 디지털화 추진 과정

구분	내용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정확한 자산조사가 필요하여 최초의 공공사회 복지행정정보망인 보건복지행정망(C/S 시스템)을 구축
2007	시군구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새울시스템)을 구축
2010	증가하는 복지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 · 급여관리, 상담 및 사례관리, 시설정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 · 부정수급,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이력 관리, 사후관리 필요성
20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범정부복지정보통합시스템)
2015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위기 정보 18종)
2022. 9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 위기 정보 34종 정보 연계로 운영
2022. 11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 위기 정보 39종 정보 연계로 운영
2023. 12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 위기 정보 44종 정보 연계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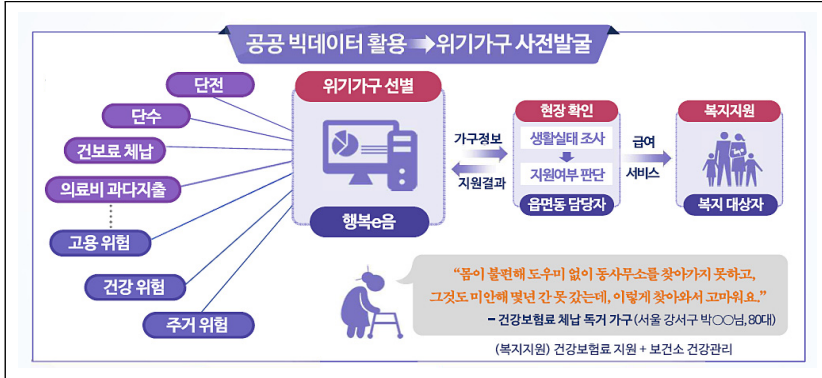
자료: 김수영, 김이배(2014); 김태완, 한수진, 이주미(2022)를 활용하여 필자 재구성.

[그림 3-1-3] 아주 많이 앞서가는 한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성도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23). <http://www.ssis.or.kr/lay1/S1T749C765/contents.do>에서 2023.11.9. 인출.

[그림 3-1-4]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23a).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2023. 4. 24. 보도자료).

이러한 발전의 덕택으로 2020년 이전에는 한 가구 내에서 가구원별로 급여, 서비스 대상이 다를 경우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2020년 1월 이후에는 모든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신청, 조사,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한은희, 2023). 국가 입장에서는 지자체 복지업무의 효율화, 복지재정의 효율화(중복누수, 부적정 수급 방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겨룰 수 있게 된 것이다(한은희, 2023).

이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적정급여 관리 차원에서,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함으로써 복지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가족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급여 자격 및 급여액이 변동되며, 조사 결과에 따른 변동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대상자 발굴(권리구제) 차원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

가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2014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신청 탈락자 가운데 보장 미수혜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2015년에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신청 가능자(5월), 복지 사각지대 정보(12월)를 제공해 왔다. 2016년에는 보육비용, 세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요금감면(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등) 신청 가능자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해졌다.

한계와 쟁점도 분명하다(한은희, 2023). 연계 정보 기반 자격판정의 한계다. 연계 정보들은 사회보장급여의 자격판정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므로 가구나 가족의 개념이 제도마다 다르고, 소득 또한 단일한 정보가 아니다. 이를테면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과 사회보험료 계산을 위한 소득의 개념은 같지 않다. 연계되는 데이터에는 시간차(gap) 이슈도 있다. 예컨대, 국세청 자료는 지난해 또는 2년 전 소득자료라는 점에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판정과 일선 공무원의 직권 판정은 다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금융정보 등 동의서가 그 예다.

[그림 3-1-5]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연계정보 현황(2023.4월 기준)

근거: 법률(제12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근거: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 내용	보유기관	정보 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 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기저귀 분유 지원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③ 중증질환 산정특례* ④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⑤ 장기요양 등급* 2) ① 전세 기준금액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신생아 난청 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맞춤형급여 신청*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세대원*	
* (2022. 34종→39종)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2023.12.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자료: 보건복지부(2023a).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2023.4.24. 보도 자료).

한편, 복지의 디지털화는 “일선 관료의 사회복지실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김수영, 김이배, 2014). 이 견해에 따르면 정보화를 통해 일선 사회복지 관료들의 업무 통일성과 신속성은 향상되었으나 데이터가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결정하게끔 함으로써 자율성과 재량권이 축소되었으며, 빨라진 정보처리 속도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리게 만든다.

Devlieghere, Gillingham과 Roose(2022)는 이를 데이터주의(dataism)와 관계주의(relationshipism)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데이터주의란 데이터가 시민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며, 관계주의란 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시민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Pedersen, 2019). 복지의 디지털화는 대상자의 소득·자산 정보를 이전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급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더불어, 복지의 디지털화는 사회복지 일선 관료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 바 있다. 다뤄야 하는 정보의 민감성이라든가, 현장 중심의 업무가 전산 중심의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야기된 결과이다. 주민과의 면대면 상호작용 속에서 성찰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받는 사회복지 일선 관료의 역할이 디지털 환경하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김수영, 김이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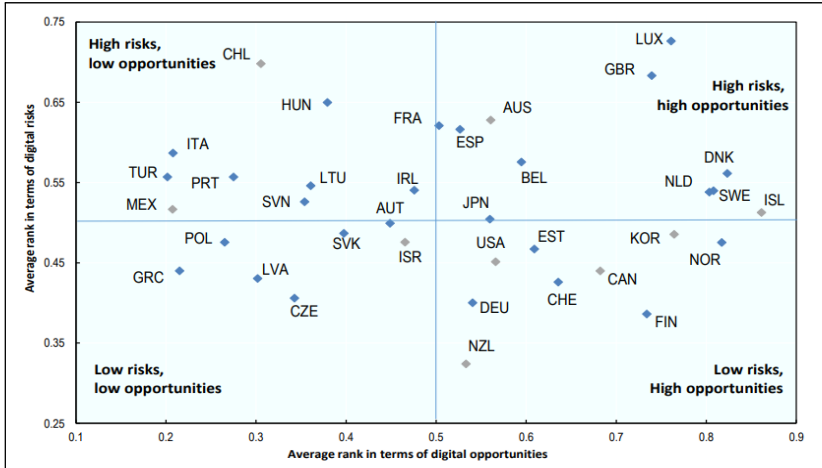
그 외에도 복지의 디지털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 위험모델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1) 편견과 차별을 증폭시킬 위험, 2)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인적 및 관계적 요인을 악화시킬 위험, 3) 낮은 품질의 데이터 이슈가 있을 수 있음이 논의된 바 있으며(Rosholm,

Bodilsen, and Villumsen, 2021), Salganic(2018)은 한 가지 목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 윤리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OECD(2019a)는 국가별 다차원의 디지털 관련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률(99.5%)과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경험률(6%)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밝힌 바 있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기회, 낮은 위험을 의미하는 1사분면에 위치해 있지만 개인정보 차원에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도 명백하다.

국내 기업을 통해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수는 2021년 4,650만 건, 2022년 1,034만 건,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822만 건이며,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 동안 국내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수는 누적 6,505만 2천 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년간 기업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306건 중 61%가 개인정보 유출 건이다(임지선, 2023). 물론 공공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은 기업에 비해 많은 수준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지자체는 30곳이었으며, 2021년에는 총 50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권고 50건, 과태료 9,360만 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그러나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을 염두에 두면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유출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6] 디지털 위기와 기회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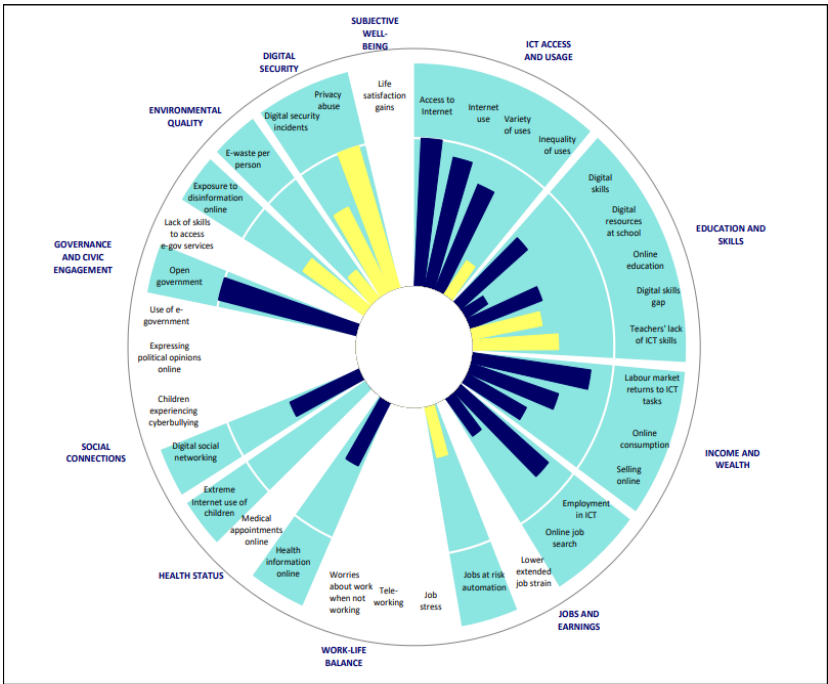


주: 디지털 전환의 위험은 9개 차원(ICT 접근 및 사용, 교육 및 기술, 일자리, 일과 삶의 균형, 건강상태, 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환경 품질, 디지털 보안)에 걸쳐 13개 지표를 포함함. 디지털 전환의 기회는 9개 차원(ICT 접근 및 사용, 교육 및 기술, 소득, 소비 및 부, 일자리, 일과 삶의 균형, 건강상태, 사회적 연결,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에 걸친 20개 지표를 통해 측정됨. 가장 낮은 값을 가진 국가는 0점, 가장 높은 결과를 가진 국가는 100점으로 비교하여 순위를 매김. 누락된 데이터 값은 각 국가의 점수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데이터 격차가 큰 경우 점수가 크게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될 수 있음. 누락된 지표가 10개 이상인 국가는 파란색 대신 회색으로 표시함.

자료: OECD(2016b).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Chapter 3. Comparing well-being in the digital age across OECD countries.

한국이 처한 상황은 다음 그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특히 거버넌스,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디지털 웰빙의 여러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보 거버넌스, 시민참여의 토대를 마련하고 관련 지표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3-1-7] 한국의 디지털 웰빙 바퀴(wheel)



주: 중앙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을, 바깥쪽 원은 최상위 수준임을 나타낸다. 기회(진한 파란 색)는 막대가 길수록 좋은 결과를, 위험(노란색)은 막대가 길수록 나쁜 결과를 의미한다. 음영처리된 흰색은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OECD(2019a).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in Korea?

<표 3-1-4> 웰빙과 관련된 디지털의 기회와 위기

	기회	위기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 시민, 정치커뮤니티 참여 증가 - 공공기관 서비스 제공 역량 향상 -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의 향상	- 허위정보 확산 가능성 - 활용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배제
개인보안	-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도입을 통한 거래 및 정보 교환의 안전성 향상	-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 디지털 보안 사고

자료: OECD(2019c).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Chapter 1. Understanding how the digital transformation affects people's well-being, p.22에서 일부 인용.

제2절 주요 관련 법제도 동향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래 2020년 6월과 12월에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되었고, 2023년에는 행정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을 제고하고 실질적 동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서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2절은 제9조의 2(위기가구의 발굴),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2조의 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민관협력)로 구성돼 있다(법제처, 2023a).

또한 2023년 3월 정부는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사각지대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하면서,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행안부, 통신사 등이 보유한 연락처와 세무조사 연계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했다.¹¹⁾ 주민등록상 주소지

11) 2014년 12월 제정되어 2015년 7월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은 2023년 8월 기준 스물세 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국가·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¹²⁾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 이용 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지침을 통해 긴급 시, 경찰 및 소방의 협조를 통해서 비상시 위기가구의 '개문'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2023.1) 개선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2023년 6월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기존 스물두 가지 항목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징수나 연금·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까지를 포함한 스물다섯 가지 항목으로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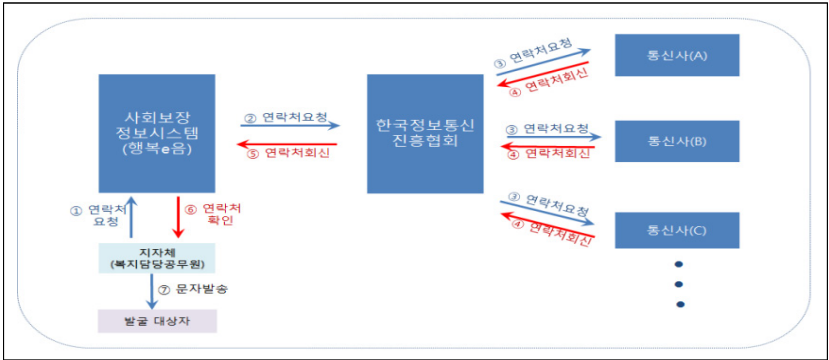
동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또한 의결되었다(법제처, 2023b). 2023년 4월 24일에는 1)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고, 2) 발굴한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연계하는 안을 신설하는 개정령안(공고번호 제 2023-95호)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 금액 범위를 기존 100

12) 전기통신회선설비(전송·선로설비 등)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업무(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예: SKT, KT 등)

만 원 ~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제8조 제1항) 하고,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 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별표 2 제5호). 끝으로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별표 2 제3호).

2023년 9월 19일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보건복지부, 2023b, 2023. 9. 19. 보도자료). 첫째, 제7조의 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를 신설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그간 수급자격 조사 시 수기로 확인해 왔던 진폐재해 위로금, 석면 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3-2-1]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간 기연계 현황: 이동통신요금 감면(송/수신), 통신료체납정보(수신)



자료: 보건복지부(2023b).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9.) - 위기 가구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 요청 근거 마련 -. 2023.9.19. 보도자료.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42865&filenum=1&dttime=20230919161732>에서 2023.11.9. 인출.

〈표 3-2-1〉 2023년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개정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1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 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 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 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 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 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 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 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급(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1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7의4. (생략)	1. ~ 7의 4.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신설>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1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 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 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 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9.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 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 하는 자의 가구정보
〈신설〉	10.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 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 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신설〉	11.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자료: 법제처(2023a).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9295,20230328\)](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9295,20230328))에 2023.8.14접속

〈표 3-2-2〉 2023년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개정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생략)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현행 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 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 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 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 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 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 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설〉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 사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2호, 2023. 6. 13, 일부개정]
〈신 설〉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 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신 설〉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징수나 연금·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자료: 법제처(2023a).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
발굴에관한법률/\(19295,20230328\)](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9295,20230328))에서 2023. 8.14. 인출.

〈표 3-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규 조문 대비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84호, 2023. 8. 29.,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3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 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인·단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 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 관·법인·단체·시설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법 제28 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 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 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 청 및 제공)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 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한국정 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회”라 한다)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법 제11조제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84호, 2023. 8. 29.,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3호, 2023. 9. 26., 일부개정]
	함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2.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 3.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생략)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략)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③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84호, 2023. 8. 29.,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3호, 2023. 9. 26., 일부개정]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 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u>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신 설〉	<u>④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u>

자료: 법제처(2023b).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2023.11. 9. 인출.

2.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하에서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는 동의의 법적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서부터 실질적 동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국제 법적 동향에 이르기까지 살피고 다뤄야 할 범위와 수준이 넓고 깊다. 이와 같은 가운데 2023년 3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내용은 여러 차원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이 연구와 관계된 부 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요건이 정비되고(제15조, 제17 조, 제18조, 제22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신설(제 37조의 2)됐다. 특히 방대한 데이터가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분석·처리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주체는 가공되거나 자동처리되어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동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거부, 설명의 요구 등을 명시한 제37조의 2항의 신설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향후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제는 다시 논의 및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제도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은 불가피하게 많은 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적시 개입과 지원의 충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적 과제가 발굴, 해소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2-4〉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현행(별표 2)	개정안(별표 2)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

현행(별표 2)	개정안(별표 2)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 (생략)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9. (생략) <신설> ③ (생략)	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9. (현행과 같음)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현행(별표 2)	개정안(별표 2)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삭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별표 2)	개정안(별표 2)
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② (생략) 〈신 설〉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
〈신 설〉	

현행(별표 2)	개정안(별표 2)
	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2023c).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에서 2023. 10. 1. 인출.



제4장

비수급 논의의 확장

제1절 비수급 논의의 검토

제2절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

제3절 소결

제4장 비수급 논의의 확장

제1절 비수급 논의의 검토

제4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사회권(social rights) 논의를 조금은 새로운 범위로 확장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도움 요청’은 포괄적인 의미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서비스 잠재적 이용자의 도움 요청(help-seeking) 행위 또는 서비스 이용(service utilization)의 촉진 및 저해 요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예컨대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전문적 도움 요청, 서비스 이용 행위를 설명하는 데 빈번하게 활용되는 앤더슨의 행동 모형은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선행요인(pre-disposing), 가능요인(enabling), 욕구요인(need)을 제시하였고(Andersen, Newman, 1973), 이와 관련된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Reijnders, Schalk와 Steen(2018)은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의 비수급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간 비영리 및 비공식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에서 도움 요청 행위의 결정 요인을 사회-심리적, 사회-역학적, 사회-문화적 연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예컨대 사회-심리적 연구의 반발이론(reactance theory)에 의하면 잠재적인 도움 제공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및 도움 제공 노력에 대한 거부하는 도움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유의 손실, 도움의 원천에 대한 의존을 우려한 결과일 수 있다(Gross et al., 1979; Reijnders

et al., 2018 재인용). 자아존중감 위협 모델(threat to self-esteem model)에 따르면 도움 요청은 도움과 관련된 긍정적인 요소(도움을 통한 문제의 해결)와 부정적인 요소(실패의 감정, 의존, 열등감 등)의 결합이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어떠한 요소를 더 크게 경험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Nadler, 2015; Reijnders et al., 2018 재인용). 형평이론(equity theory)은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과 도움을 제공받는 사람 간의 평등, 부채감, 상호호혜의 원칙 등이 도움 요청 행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상정한다(Cohen, 1999; Reijnders et al., 2018 재인용). 한편, 사회-역학 및 사회-문화적 연구는 도움 요청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데, 전자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도움 요청 행위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후자는 도움 요청 행위와 관련된 사회화 과정, 문화적 규범 및 가치에 집중한다(Howse et al., 2004; Nelson-Le Gall, 1985; van Groenou Glaser, Tomassini, and Jacobs, 2006).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도움 요청 행위,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본 연구의 분석에도 일정 부분 함의를 제공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를 통한 제도 및 프로그램 차원의 도움 요청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와는 맥락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의 영향 요인을 비수급(non-take-up)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비수급은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을 갖추었으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van Oorschot, 1991),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자발적 비수급(voluntary non-take-up) 또는 의도적 비요청(non-demand)에 초점을 두면 비수급의 문제는 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 잠재적 수급자의 결핍, 복잡하고 부적절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를 넘어 잠재적 수급자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간의 ‘사회적 관계’의 문제일 수 있으며,

국가-시민 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정치적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다(Warin, 2014, 2018a, 2018b).

복지국가를 통해 충분한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복지국가가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제공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면 사회정책의 목적을 상실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효과가 낮아져 결국 복지국가 역량의 약화로 이어진다. 자발적, 비자발적 이유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재정이 절감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 지출로 연결될 수 있다(Dubois et al., 2015; Hernanz et al., 2004). 복지국가의 사회권 논의는 복지국가가 제도와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비수급에 대한 전통적 논의들과 더불어 자발적 비수급, 비요청(non-demand)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비수급의 관점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의 영향 요인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의 폭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급(non-take-up)의 유형 및 결정요인

비수급은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을 갖추었으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van Oorschot, 1991), 비수급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van Oorschot(1991)은 비수급을 일차 비수급과 이차 비수급으로 구분했는데, 일차 비수급(primary non-take-up)은 복지급여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이 의

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차 비수급(secondary non-take-up)은 급여 신청을 시작하고 급여 자격조건을 획득했지만, 급여를 받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취약 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자격조건 규정으로 인해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삼차 비수급(tertiary non-take-up)으로 정의하기도 한다(van Mechelen, Janssen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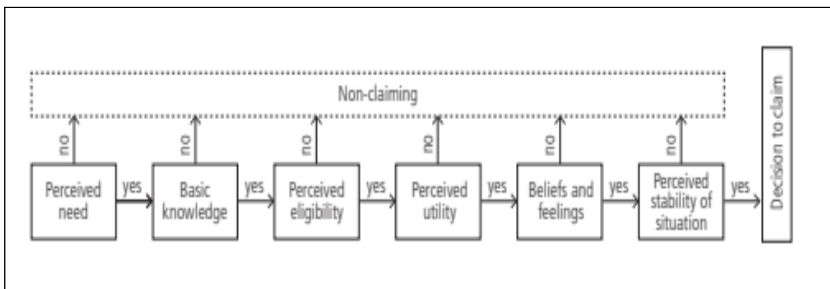
Warin(2014)은 비수급의 원인에 따라 비수급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급여 자격조건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의 부재로 인한 비수급(non-knowledge), 2) 급여를 인지했지만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수급(non-request), 3) 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해 발생하는 비수급(non-receipt), 4) 급여 자격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형태의 비수급(non-proposition). 처음의 두 유형은 van Oorschot(1991)의 일차적 비수급과 연결되며, 세 번째 유형은 이차적 비수급과 관련이 있다.

이 외에도 비수급의 범위에 따라 급여 전체를 받지 못하는 완전 비수급(total non-take-up)과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하는 부분 비수급(partial non-take-up)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시간적 차원에 따라 영구적 비수급(permanent non-take-up)과 일시적 비수급(temporary-non take-up), 급여 신청 절차의 시작 시점과 급여 수급 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마찰적 비수급(frictional non-take-up)으로 구분하기도 한다(Goedeme, Janssens, 2020; van Oorschot, 1996).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는 비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 및 분석틀이 여러 학문 영역에서 발전되어왔다. 특히 Kerr(1982)는 여섯 개의 연속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급여 신청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턱 모형(threshold model)을 제시했는데,

Kerr의 모형이 제안된 이후 다수의 비수급 관련 연구들이 이를 기반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림 4-1-1]에 제시된 것처럼 욕구에 대한 인식-제도에 대한 지식-자격조건에 대한 인식-급여의 효용에 대한 인식-급여 및 신청 절차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상황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여섯 개의 연속적인 조건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급여 신청이 이루어지고, 이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비수급(비신청)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림 4-1-1] Kerr의 문턱 모형(Threshold Model)



자료: Rosenstein(2021)의 Figure 1 (p.247) 중 일부 추출

van Oorschot(1991, 1996)은 Kerr의 모형이 가진 몇 가지 한계에 주목하고 비수급을 설명하는 통합적·동태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van Oorschot(1991), Craig(1991) 등에 따르면 급여 신청으로 이르는 과정은 연속적 메커니즘이기보다 상충하는 요인 간의 선택(trade-off)의 문제일 수 있다. 특히 Kerr의 모형은 비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예컨대 1) 급여 신청을 촉발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2) 복지급여에 의존(dependency)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초기 단계의 결정 과정에서 급여 신청을 막을 수 있으며, 3) 정보와 지식은 자격조건에 대한 인식, 효용에

대한 인식, 태도의 형성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4) 신청의 지연, 신청과 수급 사이의 대기기간 등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지 못한 정태적 모형이며, 5) 급여 신청 결정에만 초점을 두으로써 신청 결정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van Oorschot(1991)의 동태적 모형은 진입단계(threshold), 선택단계(trade-off), 신청단계(application)로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수급·비수급의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진입단계의 경우 정보, 자격조건에 대한 인식, 급여 수급에 대한 태도, 낮은 욕구 수준, 상황의 불안정성 등을 포함하며, 선택단계는 욕구·자격·효용에 대한 인지, 낙인(stigma), 복지 의존, 행정 절차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신청단계에서는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 효용, 탈락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이 수급·비수급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van Oorschot(1996)은 더 나아가 복지급여 비수급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잠재적 수급자 개인의 지식, 인식, 태도, 동기, 경험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조적, 행정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요인들에 대해 간과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다수준(multi-level) 요인 간의 상호작용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세 개의 서로 다른 수준-체계 수준, 행정 수준, 클라이언트 수준-내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들은 각각 비수급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각 수준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수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체계 수준은 비수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급여 구조 요인들을 의미하는데, 급여와 관련된 규정의 양, 규정의 복잡성, 부정확하고 모호하며 자의적인 자격기준, 자산 조사, 부정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낮은 수준의 급여, 포괄적인 급여 체계(다양한 종류의 비용에 대한 급여), 정기

적인 비용 대신 일시적인 비용에 대한 급여, 불안정한 자격조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van Oorschot, 1996). 이 외에도 자격조건의 측면에서 급여 간의 중첩과 상호작용의 영향, 문화적 규범에 도전하는 급여의 구조적 측면 등의 요인이 제시되기도 한다(Corden, 1995).

행정 수준 요인은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적 요인은 담당자의 실수 또는 충분하지 않거나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등의 행정 오류를 의미하며, 비수급과 관련하여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간접적 요인은 행정적 절차 및 담당자의 태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수급 과정에서 수치스럽고 경멸적인 경험, 서비스 제공 기능과 통제 기능(부정수급에 대한 감시 등)의 결합,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불충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복잡한 신청 절차, 불충분한 정보 또는 잠재적 수급자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 기반한 의사결정, 낮은 수준의 기술적 행정절차, 담당자의 잘못된 규정 해석 등을 들 수 있으며, 행정의 모든 측면이 비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rden, 1995).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수준에는 앞에서 논의한 van Oorschot(1991)의 동태적 모형이 위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동태적 모형의 세 단계(진입, 선택, 신청)와 단계별 비수급 영향 요인들을 상위 수준인 행정적, 구조적 맥락의 직·간접적 영향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클라이언트 수준의 지식, 인식, 태도, 경험 및 행위는 행정 수준의 정보와 상담의 양과 질, 행정 절차상의 다양한 장애 요인, 물리적 접근성, 행정 담당자의 처우 및 태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수준 요인 및 다수준 요인 간의 상호작용 관점을 활용하면 비수급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Lucas, Bonvin과 Humbelin(2021) 역시 거시, 중시, 미시 수준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비수급에 대한 “체계적이

고 관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거시 수준의 요인은 복지국가의 제도 설계 및 제도 설계에 내재된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는데, 급여 대상자 선별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통제, 급여 수급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 및 벌칙은 접근성을 낮추고 행정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중시 수준은 공공행정을 포함한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실천 방식을 의미하며, 클라이언트 또는 일선 행정관료의 행태를 포함하는 미시 수준에서는 전문 행정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학 영역에서도 합리적 선택 이론에 기반한 비용-편익 분석 관점에서 비수급의 원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급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거래비용, 학습비용, 심리적 비용, 낙인 등)과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효용 및 욕구) 간의 균형에 대해 주로 분석했다. 예컨대 급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으면 비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잠재적 수급자가 인지하는 욕구의 수준과 기대되는 급여 자격조건의 기간 등이 급여 수급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Bruckmeier, Wiemers, 2012; Currie, 2006; Humbelin, 2019; Moffit, 1983; Riphahn, 2001 등).

행동경제학자들은 급여 신청의 비용 및 편익 측면보다 급여 신청과 관련된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이나 행태적 제약조건(behavioral barrier)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급여 신청의 지연은 급여 신청에 따른 편익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 있으며, 신청 결정을 했더라도 지연 행동, 위험 회피 등으로 신청 결정에 따른 행위에 실패한다면 급여 신청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Maurer, Michell, 2016). 행동경제학자들은 더 나아가 복지 수급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미인식, 정보의 복잡성, 비인지적 신청 비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

인화된 정보에 기반한 지원 활동 및 교육, 자동 신청을 포함한 절차의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Baicker, Congdon, and Mullainathan, 2012; Domurat, Menashe, and Yin, 2021).

van Mechelen와 Janssens(2017)는 van Oorschot의 포괄적·동태적 모형 및 행동경제학 관점의 연구, 실증 연구들에서 밝혀진 비수급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확장된 분석틀을 제시했는데, 비수급의 유형을 일차, 이차, 삼차 비수급으로 구분하고, 클라이언트 수준, 행정 수준, 정책설계 수준의 맥락이 비수급의 각 유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전통적인 합리적 선택모형에 기반한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되는 요소와 함께 행동경제학에서 강조하는 행태적 제약조건(지연 행동, 위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촉발사건, 네트워크 효과를 포함한 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구성 등의 변수가 장기적인 잠재 소득과 기대 급여기간의 대리변수로 주로 활용되는데, 급여수준 및 기대 급여기간이 낮고, 잠재적 소득 능력이 클수록 비수급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Mechelen, Janssens, 2017). 비용 측면은 정보 비용(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 프로세스 비용(신청 및 수급 절차에 따른 시간과 노력 등), 심리적·사회적 비용(낙인, 사회적 규범에 대한 민감성 등)을 포함하는데, 지역사회 규모, 가구구성, 교육수준 등을 대리변수로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이 보유한 네트워크의 양과 질 역시 급여 수급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도움, 정보의 획득, 심리적 지지와 지원 등은 신청 결정 및 신청 행위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van Mechelen, Janssens, 2017).

Hernanz, Malherbet과 Pellizzari(2004) 역시 비수급 관련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비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정보의 부재, 사회·심리적 요인(낙인, 규범 등), 행정적 조건(엄격한 요구조건, 절차적 복잡성 등), 금전적 요인(욕구의 크기, 기대 급여 수준 등) 등이 포함된다.

비수급의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양적, 질적 연구들은 앞에서 논의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대체로 확인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급여 수준, 급여 기간, 정보 비용(급여 및 자격조건 규정 및 신청 절차 등), 행정 비용(대기, 신청서류 작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등) 등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급여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낙인, 자아존중감, 도덕적 규범 등을 포함하는 주관적 요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Eurofound, 2015; Humbelin, 2019; Warin, 2014). Craig(1991) 역시 비수급 결정요인으로 자존심, 무지, 스티그마, 자기성취, 자립 및 자활, 정부 기관과의 관여 의사, 급여 신청 및 수급과 관련된 가치의 인식 등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비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의 맥락과 관련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umbelin(2019)은 태도 관련 변수나 경제적 구조를 통제한 이후에도 인구집중도로 측정된 익명성의 부재가 비수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복지 태도 및 인식과 관련된 요인 역시 비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형성되는 태도, 인식, 믿음은 시민의 일상적인 활동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복지 수급과 관련된 인식 및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Humbelin, 2019). 정치이념 역시 비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보수적인 정치이념이 선호되는 지역에서 비수급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Humbelin, 2019).

급여 수급과 관련된 정책 집행에 대한 개인의 경험 역시 이후의 수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책 집행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경험은 비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인적 자본 수준이 낮은 취약 집단에서 더 크게 작용하였다(Christensen, Aaroe, Baekgaard, Herd and Moynihan, 2020; Lucas, Bonvin, and Humbelin, 2021). Revil(2021)은 의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자발적 비수급 경험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비수급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했는데, 비자발적 비수급 경험은 국가의 복지급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낳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제도적 규범은 이후에 발생하는 자발적 비수급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ckhardt(2021)는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복지급여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복지제공 기관과의 이전의 접촉 경험을 통한 사회화 경험, 빈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포함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가 급여 및 서비스 수급 결정과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위 또는 사회적 계층의 경로에 대한 개인의 인식(상향 또는 하향) 역시 비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ucas et al., 2021).

한편, 공식적·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지지체계가 비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Bertrand, Luttmer, and Mullainathan, 2000), 취약한 집단의 낮은 신뢰수준 및 사회적 배제는 복지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Simonse, Vanderveen, van Dillen, van Dijk, and van Dijk(2022)는 경제적 취약계층 31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비수급의 핵심 요인에 대해 분석했는데, 거부 및 재신청에 대한 두려움,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핵심 요인으로 드러났다. 낙인의 효과는 지역 수준에서 유의미한 요인이었으나 중앙정부의 복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는 복지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취약집단의 경우 도움을 받을 자원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비수급과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맥락 및 요인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체계적, 포괄적 관점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Willke(2021)는 전통적인 합리적 선택 또는 낙인(stigma) 접근을 넘어 대응(coping), 인정(acknowledgment), 시간적 관점의 차원에서 비수급을 분석하였다.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황에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비수급 확률은 증가하였고(대응), 과거의 성취를 인정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공공부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급률을 보였다(인정). 마지막으로 욕구 또는 결핍의 기간이 짧다고 인식할수록 비수급 확률이 증가하였다(시간적 관점).

이제까지 비수급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분석틀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수급은 다양한 맥락과 유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본 장의 핵심 분석 변수인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비수급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비수급의 정의 및 측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수급 관련 이론 및 분석틀,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진 비수급 영향 요인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비수급을 자발적 비수급(voluntary non-take-up), 비요청(non-demand)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면 비수급 관련 논의와 본 연구는 좀 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게 된다.

2. 비수급 논의의 확장: 자발적 비수급과 복지국가의 사회권

전통적인 비수급 논의는 비수급을 자원의 부족 및 결핍, 잠재적 수급자

의 수동성 및 취약성, 행정적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접근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수급은 이를 넘어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국가(제도)와 시민과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Warin(2014)은 자발적 비수급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 시민권의 맥락에서 비수급을 바라보았다. 비수급은 급여의 자격조건과 내용, 급여가 강제하는 규범이 잠재적 수급자의 경험, 개인적 환경 및 기대와 상충하는 경우 발생하는데, 비수급 결정은 급여 수급에 부과되는 비현실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에 대한 인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심리적, 도덕적, 정치적 이유의 결과일 수 있다. 잠재적 수급자가 급여 수급에 부과된 요구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거나, 복잡한 자격조건에 직면하여 낙담하거나, 급여 자격조건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비수급 결정의 확률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Warin, 2014). 또한 제공되는 급여의 성격과 절차, 급여에 내재된 규범에 따라 제도에 대한 잠재적 수급자의 신뢰와 확신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시민과 국가(제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자발적) 급여 비수급 결정은 거절이나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고, 무관심의 적극적인 표현일 수 있으며, 동시에 고립의 징후일 수 있다(Warin, 2014).

더 나아가 Warin(2018b)은 전통적인 비수급 논의가 급여 자격조건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제공된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비요청(non-demand)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요청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Warin(2018b)에 따르면 비요청은 의도적 비요청과 부정적 경험을 통한 비요청(suffered non-demand)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비요청의 원인에는 역량의 부재(지식, 노하우, 신뢰, 지원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피로, 복지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부정적 경험(낙인, 차별 등) 등이 포함된다.

의도적 비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비용편익분석, 2) 지배적인 규범에 대한 비동의, 3) 선호하는 대안의 존재, 4) 시민성, 5) 자발적 배제를 제시하였다(Warin, 2018b). 첫째,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한 비요청은 급여에 수반되는 비용과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에 대한 평가 과정의 반응적 결과로 “수급을 원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급여에 대한 가치 평가는 급여로 인한 즐거움, 편안함, 웰빙 등을 포함하는 감정적 평가(affective assessment)와 공정한 처우 등 공통의 가치 또는 객관적 특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평가(objective assessment)로 구분되는데,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한 의도적 비요청은 감정적 평가에 초점을 둔다. 둘째, 지배적인 규범에 대한 비동의로 인해 발생하는 의도적 비요청은 객관적 평가의 결과이다. 이것은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사용가치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일반적 규범으로 형성되는 교환 가치 또는 개인에 의해 인식되는 교환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급여가 내재하고 있는 지배적인 규범 및 가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가치가 우세하더라도 비요청으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잠재적 수급자가 급여 외에 다른 대안을 선호하는 경우 의도적 비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급여 수준이 낮거나 불충분한 경우(낮은 사용가치) 발생하며, 낮은 질의 급여에 내재된 규범에 대한 거부 의 표현(교환가치)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 시민성에 의해 동기화되는 의도적 비요청은 다른 사람들의 급여 우선순위를 위해 자신의 급여를 포기하거나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적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사용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의도적 비요청 행위를 통해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연대라는 공통의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배제로 인한 의도적 비요청은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청년집단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의 자발적 비요청이 있다. 취약 집단 청년에게 제공되는 훈련, 급여 등에 내재

된 개인의 책임성 같은 지배적 규범과 달리 청년들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은 아니며, NEET로서의 삶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도적 비요청은 훈련, 급여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후퇴하면서 규범에 도전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사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요인의 결과이지만, 비요청은 결핍, 배제, 고립을 경험하는 시민이 아닌 사회정책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급여의 내용과 절차, 규범에 내재한 가치에 대한 적극적 거절, 거부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비수급 논의에서 간과해 왔던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비수급의 주체 및 원인에 대한 논의를 시민과 국가(제도)와의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재설정하고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비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역시 접근성 논의를 넘어선 확장된 관점이 필요하다.

제2절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

1. 연구 개요 및 방법

본 절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에서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 및 주요 독립변수들은 <표 4-2-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종속변수는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

제 각각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의사”이다. 국가 도움 요청 의사의 영향 요인을 밝히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임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는 제1절에서 살펴본 이론적, 실증적 논의 및 분석자료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심리·정서 요인, 복지 태도 및 인식 요인, 정치이념 및 신뢰 요인, 복지 수급 경험 요인이 포함되며, 본 보고서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인식 관련 요인을 포함하였다.

표본에 포함된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 외에 어려움 경험 여부, 소득 수준, 연령대로 구분한 집단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컨대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했던 집단과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을 결정하는 맥락이 상이할 것이며, 현재의 욕구 수준을 대표하는 소득 수준이나 연령대별 차이에 따라서도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 세부 집단별로 이러한 맥락들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보고서의 전체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및 개인정보 인식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대한 신뢰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의 관계를 개인정보 인식이 매개하는지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항로짓(binary logit)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우도비(Likelihood Ratio) χ^2 검증, (pseudo-) R^2 , Hosmer-Lemeshow 검증, ROC 커브 및 c 통계량 등을 활용하여 로짓 분석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매개효과 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접근을 수정하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에 대한 Monte Carlo 추정 등을 포함하는 Zhao et al.(2010)의 접근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표 4-2-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정의 및 측정
종속 변수	국가 도움 요청 의향	생활비 부족 시, 목돈 필요시, 정서적 문제 도움 필요시 국가 (예: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 도움 요청 의향.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이분 변수로 측정 (1=예, 0=아니오)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5개 범주로 코딩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지역	3개 범주로 코딩 (광역시·특별시, 일반시, 군지역)
	가구형태	2개 범주로 코딩 (1=1인 가구, 0=기타 가구)
	교육수준	4개 범주로 코딩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결혼상태	1=유배우자, 0=기타
	경제활동	5개 범주로 코딩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실업, 비경활)
	가구소득	가구 균등화 소득, 자연로그 변환
건강·심리·정서	가구자산	가구 순자산(총자산-부채), 역쌍곡선 변환
	주관적 건강	3개 범주로 코딩 (좋음, 보통, 나쁨)
	삶의 만족도	3개 범주로 코딩 (만족, 보통, 불만족)
	외로움	외로움 관련 4개 문항(4점 리커트 척도) 합산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 높음
	우울	우울 관련 9개 문항(4점 리커트 척도) 합산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 높음
개인 정보 인식	계층 인식	10년 전, 현재, 10년 후 소득계층 인식 문항을 바탕으로 과거-현재, 현재-미래의 계층 인식 변화 변수 생성 (1=소득계층 인식이 낮아짐, 0=같거나 높아짐)
	본인 정보수집 동의	“국가가 나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다음의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5점 리커트 척도), 경제상황,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세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수준 높음
	국민 정보수집 동의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는 다음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5점 리커트 척도), 경제상황,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세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수준 높음

〈표 4-2-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계속)

변수		정의 및 측정
복지 인식 및 태도	복지 책임	“귀하는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구조적 원인
	공동체 의식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역코딩)
	성장-분배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분배가 중요(역코딩)
	선별-보편	“국가가 복지급여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 선호
	소득 격차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증세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부 책임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신뢰 및 정치 이념	일반 신뢰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1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
	국가 신뢰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국가”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
	정치이념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
복지 수급 경험	복지 수급 경험	10개 영역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 가구원의 수급 경험 여부를 질문. 한 영역이라도 ‘예’로 응답한 경우 1=경험, 모든 영역에서 ‘아니오’를 응답한 경우 0=미경험

2. 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도움 요청 관련 변수 및 주요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의사를 살펴보면 상황별로 도움 요청 의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비 부족의 경우 82.7%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목돈 필요의 경우는 75.5%, 정서적 문제는 60% 수준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와 비교하여 생활비 부족 상황은 기본적인 삶의 유지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책임 영역이라는 인식이 더 높은 결과일 수도 있다.

〈표 4-2-2〉 도움 요청: 국가

(단위: 명, %)

변수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요청	3,309 (82.7)	3,021 (75.5)	2,388 (59.7)
요청하지 않음	691 (17.3)	979 (24.5)	1,612 (40.3)
계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다음으로 세 영역의 도움 요청 의사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4-2-3〉에 제시하였다. 세 영역 모두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3%로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었고,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표 4-2-3〉 도움 요청: 국가(통합)

(단위: 명, %)

변수	N(%)
모든 영역 도움 요청	2,122 (53.0)
생활비 + 목돈	768 (19.2)
생활비 + 건강	136 (3.4)
목돈 + 건강	60 (1.5)
생활비	284 (7.1)
목돈	71 (1.8)
건강	70 (1.7)
모든 영역 도움 요청하지 않음	490 (12.2)
계	4,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표 4-2-4〉 도움 요청: 국가, 가족/지인

(단위: 명, %)

변수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국가+가족/지인 요청	1,846 (46.1)	1,688 (42.2)	1,557 (38.9)
국가만	1,464 (36.6)	1,332 (33.3)	831 (20.8)
가족/지인만	269 (6.7)	393 (9.8)	760 (19.0)
모두 요청하지 않음	422 (10.6)	586 (14.6)	852 (21.3)
계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도움 요청의 대상을 가족·지인으로 확장하여 도움 요청 의사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를 〈표 4-2-4〉에 제시하였다. 국가와 가족·지인을 포함하여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비중 역시 생활비 부족(46.1%), 목돈 필요(42.2%), 정서적 문제(38.9%) 순서를 보였고, 모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비중은 반대의 순서를 보였다. 정서적 문제의 경우 가족·

지인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비중이 19%로 생활비 부족이나 목돈 필요 상황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는데, 어려움의 영역에 따라 도움 요청 여부나 대상에 대한 선호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4-2-5〉 이전 국가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

(단위: 명, %)

변수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부족 미경험			2,602 (65.0)	2,155 (53.9)	2,211 (55.3)
부족 경험	도움 미요청		1,051 (26.3)	1,554 (38.8)	1,498 (37.4)
	도움 요청	지원	129 (3.2)	142 (3.6)	108 (2.7)
		미지원	218 (5.4)	149 (3.7)	183 (4.6)
계			4,000 (100.0)	4,000 (100.0)	4,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다음으로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각 영역에 대해 이전의 국가 도움 요청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4-2-5〉에 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은 국가 및 제도에 대한 태도, 신뢰, 규범을 형성하여 이후의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26.3%, 38.8%, 37.4%였고,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생활비 부족 8.6%, 목돈 필요 7.3%, 정서적 문제 7.3%로 영역별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도움을 요청한 후 실제 지원으로 연결된 비중은 각각 3.2%, 3.6%, 2.7%로 확인되었는데,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 후 실제 지원으로 연결된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2-6〉에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2-6〉 기술통계

구분	변수		N (%) M (SD)	구분	변수		N (%) M (SD)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045 (51.1)	건강· 심리· 정서	주관적 건강	좋은	1,503 (37.6)	
		여성	1,995 (48.9)			보통	1,949 (48.7)	
	연령	19~29세	792 (19.8)		삶의 만족도	나쁨	548 (13.7)	
		30~39세	770 (19.2)			만족	1,421 (35.5)	
		40~49세	933 (23.3)			보통	1,630 (40.8)	
		50~59세	1,007 (25.2)			불만족	949 (23.7)	
		60~64세	498 (12.4)			8.92 (3.13)		
	지역	대도시	2,189 (54.7)		우울	15.49 (5.68)		
		일반시	1,675 (41.9)			계층 인식 (과거-현재)	낮아짐	912 (22.8)
		군지역	136 (3.4)				기타	3,088 (77.2)
	가구형태	1인 가구	618 (15.4)	계층 인식 (현재-미래)		낮아짐	544 (13.6)	
		기타	3,382 (84.6)		기타	3,456 (86.4)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	887 (22.2)	본인 정보 (경제 상황)	2.92 (1.12)		
			대학 졸업	245 (6.1)		본인 정보 (건강상태)	3.08 (1.11)	
			대학원 졸 이상	2,538 (63.4)	본인 정보 (경제활동)		3.16 (1.11)	
				330 (8.2)		국민 정보 (경제상황)	3.46 (0.97)	
		결혼상태	유배우자	2,198 (55.0)	국민 정보 (건강상태)		3.48 (0.97)	
			기타	1,802 (45.0)		국민 정보 (경제활동)	3.56 (0.98)	
		경제활동	상용직	2,076 (51.9)	국민 정보 (경제활동)		3.56 (0.98)	
			임시일용직	472 (11.8)		국민 정보 (건강상태)	3.48 (0.97)	
			자영업 등	440 (11.0)			국민 정보 (경제활동)	3.56 (0.98)
			실업	351 (8.8)		국민 정보 (경제활동)		3.56 (0.98)
	비경험	661 (16.5)	국민 정보 (경제활동)	3.56 (0.98)				
	소득	542 (711)		국민 정보 (경제활동)	3.56 (0.98)			
	순자산	30,394 (55,807)			국민 정보 (경제활동)	3.56 (0.98)		
복지 인식 및 태도	복지책임	3.24 (0.97)		신뢰 및 정치 이념		일반 신뢰	4.04 (2.38)	
	공동체 의식	2.70 (0.90)			국가 신뢰	2.75 (0.91)		
	성장-분배	2.80 (1.02)				정치이념	3.09 (0.78)	
	선별-보편	3.18 (1.20)			복지 수급 경험		경험	2,966 (74.2)
	소득 격차	4.08 (0.80)		미경험		1,034 (25.8)		
	증세	2.95 (1.04)				정부 책임	3.77 (1.01)	
	정부 책임	3.77 (1.01)		정부 책임	3.77 (1.01)			

〈표 4-2-7〉 영역별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영향 요인

구분	변수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인구 ·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5 (.09)**	-.25 (.08)**	.02 (.07)
	연령	(19~29세)			
		30~39세	-.08 (.16)	-.10 (.14)	.06 (.12)
		40~49세	-.001 (.17)	.01 (.15)	.21 (.13)
		50~59세	.04 (.18)	-.15 (.16)	.10 (.14)
		60~64세	-.28 (.20)	-.37 (.18)*	.12 (.16)
	지역	(대도시)			
		일반시	.08 (.09)	-.02 (.08)	.10 (.07)
		군지역	-.22 (.23)	-.28 (.20)	-.05 (.20)
	가구형태	1인 가구	-.20 (.13)	-.24 (.12)*	-.08 (.11)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	.37 (.24)	.26 (.21)	.16 (.18)
		대학 졸업	.16 (.11)	.22 (.10)*	.08 (.09)
		대학원 졸 이상	-.01 (.18)	.23 (.16)	-.03 (.15)
	결혼상태	유배우자	-.04 (.12)	-.16 (.11)	.25 (.10)**
	경제활동	(상용직)			
		임시일용직	.02 (.16)	-.12 (.14)	.12 (.12)
		자영업 등	-.37 (.14)**	-.22 (.13)†	-.19 (.12)†
		실업	-.20 (.17)	-.27 (.15)†	-.16 (.13)
		비경활	-.35 (.14)*	-.26 (.12)*	-.07 (.11)
건강 · 심리 · 정서	가구 소득 (자연로그)		.01 (.04)	.04 (.03)	-.01 (.03)
	가구 순자산 (역쌍곡선)		.01 (.02)	.01 (.02)	.01 (.02)
	건강상태	(나쁨)			
		보통	.09 (.14)	.06 (.13)	-.05 (.12)
		좋음	.19 (.17)	.22 (.15)	-.06 (.13)
	삶의 만족도	(불만족)			
		보통	-.28 (.13)*	-.08 (.12)	.11 (.10)
		만족	-.31 (.16)†	-.26 (.14)†	.09 (.12)
	외로움		-.02 (.02)	-.01 (.02)	.01 (.02)
	우울		-.01 (.01)	-.01 (.01)	-.004 (.01)
	과거-현재 계층 하향		-.21 (.10)*	-.19 (.09)*	-.16 (.08)†
	현재-미래 계층 하향		.20 (.13)	.09 (.11)	.02 (.10)

〈표 4-2-7〉 영역별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영향 요인(계속)

구분	변수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이전 경험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	(어려움 미경험)			
		경험+미요청	-.53 (.10)***	.04 (.09)	-.29 (.08)***
		경험+요청+미지원	-.68 (.23)**	.22 (.22)	.81 (.25)**
		경험+요청+지원	2.21 (.52)***	2.17 (.46)***	2.11 (.31)***
사적 도움	지인 수	(없음)			
		1명	.10 (.15)	-.39 (.13)**	-.84 (.13)***
		2~3명	.04 (.13)	-.56 (.12)***	-.74 (.13)***
		4~5명 이상	-.21 (.18)	-.70 (.17)***	-.78 (.16)***
	사적 도움 요청 의사		.49 (.12)***	.82 (.10)***	1.18 (.11)***
개인 정보	본인 정보		.18 (.06)**	.21 (.05)***	.14 (.04)**
	국민 정보		.08 (.06)	-.02 (.06)	.07 (.05)
복지 인식 및 태도	빈곤 책임		.08 (.05)	.06 (.04)	.02 (.04)
	공동체 의식		.02 (.05)	.02 (.04)	.06 (.04)
	성장-분배		-.001 (.05)	-.04 (.04)	-.01 (.04)
	선별-보편		-.05 (.04)	.01 (.03)	.07 (.03)*
	소득 격차		.05 (.06)	-.04 (.06)	-.10 (.05)†
	증세 태도		.08 (.05)†	.08 (.04)†	.09 (.04)*
	정부 책임		.15 (.05)**	.19 (.04)***	.11 (.04)**
신뢰 및 정치 이념	일반 신뢰		-.04 (.02)*	-.01 (.02)	.01 (.02)
	국가 신뢰		.33 (.06)***	.30 (.05)***	.28 (.04)***
	정치이념		.08 (.06)	.06 (.05)	.02 (.05)
	복지 수급 경험		.30 (.10)**	.34 (.09)***	.19 (.08)*
	상수항		-1.06 (.56)†	-1.42 (.50)**	-2.48 (.45)***
			N=4,000 LR $\chi^2(46)=336.6$ *** Pseudo-R ² =.09	N=4,000 LR $\chi^2(46)=333.6$ *** Pseudo-R ² =.07	N=4,000 LR $\chi^2(46)=517.0$ *** Pseudo-R ² =.10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표 4-2-8〉 분석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검증

변수	생활비 부족 모형	목돈 필요 모형	정서적 문제 모형
Hosmer-Lemeshow χ^2 검증	$\chi^2(3,953)=3,994$, p=.32	$\chi^2(3,953)=3,958$, p=.47	$\chi^2(3,953)=3,999$, p=.30
c 통계량	.71	.68	.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려움의 영역별로 회귀 분석한 결과를 〈표 4-2-7〉에 제시하였고, 각각의 분석 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4-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우도비 검증은 세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R^2 는 .07~.10 수준이었다. 하위집단별 모형에 의해 예측된 값과 실제 관찰된 값을 비교하는 Hosmer-Lemeshow 검증 결과 및 모형에 의한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를 시각화한 ROC 커브의 면적에 해당되는 c 통계량 등을 통해 세 모형 모두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비 부족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도움 요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경제활동상태 중 자영업자·고용주 및 비경활 집단이 상용직에 비해 낮은 도움 요청 확률을 보였다. 건강·심리·정서적 요인 중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고, 과거에 비해 현재의 소득계층이 하향했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도움 요청 의사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과거의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 역시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과거에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도움 요청 의

사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고 실제 지원으로 연결된 경우 도움 요청의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족·이웃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는 정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복지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요인들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대체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높게 인식할수록 도움 요청 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경우 신뢰의 유형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일반 신뢰는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국가에 대한 신뢰는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본인 또는 가구원의 복지 수급 경험 역시 도움 요청 의사와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맥락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관련 변수 중 복지제공을 위해 “본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데 동의할수록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확률이 높았다. 다만 일반 국민의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수준은 도움 요청 의사와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 역시 이상의 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는 사적인 도움 요청과 관련된 대안의 존재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 혹은 지인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확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정서적 문제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의사의 경우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의 두 경우와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도움

요청 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전의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 사적 도움 요청 의사, 개인정보, 복지 태도 및 인식, 신뢰 및 정치이념, 복지 수급 관련 변수들은 앞의 두 경우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복지 태도 및 인식 관련 변수 중 보편주의에 대한 선호가 도움 요청 여부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증세에 대해 찬성하거나,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높게 인식할수록 도움 요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사적인 도움에 대한 대안의 존재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비 부족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생활비 부족 같은 일상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대안으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적인 영역의 도움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9〉 어려움 경험 여부별 생활비 부족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영향 요인

구분	변수		어려움 경험	
			경험 집단 회귀계수(표준오차)	미경험 집단 회귀계수(표준오차)
인구 ·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8 (.15)†	-.22 (.13)†
	연령	(19~29세)		
		30~39세	.47 (.25)†	-.49 (.23)*
		40~49세	.41 (.26)	-.30 (.24)
		50~59세	.53 (.27)*	-.30 (.25)
		60~64세	.63 (.32)†	-.89 (.27)**
	지역	(대도시)		
		일반시	.09 (.15)	.07 (.12)
	가구형태	군지역	-.60 (.33)†	.15 (.36)
		1인 가구	-.21 (.20)	-.14 (.19)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	.35 (.39)	.37 (.34)
		대학 졸업	.02 (.16)	.38 (.16)*
		대학원 졸 이상	-.10 (.30)	.20 (.24)
	결혼상태	유배우자	-.08 (.19)	.02 (.17)
건강 · 심리 · 정서	경제활동	(상용직)		
		임시일용직	-.01 (.23)	.10 (.24)
		자영업 등	-.47 (.20)*	-.34 (.20)†
		실업	-.51 (.24)*	-.03 (.25)
		비경활	-.42 (.24)†	-.28 (.17)
	가구소득 (자연로그)		-.01 (.05)	.01 (.06)
	가구 순자산 (역쌍곡선)		-.01 (.03)	.02 (.03)
	건강상태	(나쁨)		
		보통	.08 (.19)	-.06 (.23)
		좋음	-.08 (.24)	.23 (.26)
	삶의 만족도	(불만족)		
		보통	-.33 (.19)†	-.23 (.20)
		만족	-.44 (.24)†	-.21 (.24)
정서	외로움		-.08 (.03)*	.01 (.03)
	우울		-.02 (.02)	.01 (.02)
	과거-현재 계층 하향		-.32 (.15)*	-.12 (.15)
	현재-미래 계층 하향		.11 (.21)	.26 (.18)

〈표 4-2-9〉 어려움 경험 여부별 생활비 부족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영향 요인(계속)

구분	변수		어려움 경험	
			경험 회귀계수(표준오차)	미경험 회귀계수(표준오차)
이전 경험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	(어려움 미경험)		
		경험+미요청	-	-
		경험+요청+미지원	-.02 (.22)	-
		경험+요청+지원	2.78 (.52)***	-
사적 도움	지인 수	(없음)		
		1명	.09 (.22)	.11 (.21)
		2~3명	.04 (.21)	.002 (.17)
		4~5명 이상	-.47 (.32)	-.14 (.22)
	사적 도움 요청 의사		.14 (.19)	.72 (.15)***
개인 정보	본인 정보		.23 (.09)*	.15 (.07)*
	국민 정보		.04 (.10)	.11 (.08)
복지 인식 및 태도	빈곤 책임		.13 (.08)†	.08 (.07)
	공동체 의식		-.07 (.07)	.09 (.07)
	성장-분배		.03 (.07)	-.03 (.07)
	선별-보편		-.04 (.06)	-.06 (.05)
	소득 격차		-.14 (.10)	.18 (.08)*
	증세 태도		-.02 (.07)	.17 (.07)**
	정부 책임		.09 (.08)	.21 (.07)**
신뢰 및 정치 이념	일반 신뢰		.04 (.03)	-.12 (.03)***
	국가 신뢰		.30 (.09)**	.35 (.08)***
	정치이념		.11 (.09)	.07 (.08)
복지 수급 경험			.18 (.17)	.39 (.13)**
상수항			.40 (.85)	-2.47 (.80)
			N=1,398 LR $\chi^2(45)=177.0^{***}$ Pseudo-R ² =.12	N=2,602 LR $\chi^2(43)=228.5^{***}$ Pseudo-R ² =.10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전체 표본을 과거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과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를 〈표 4-2-9〉에 제시

하였다(세 가지 어려움의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생활비 부족의 경우에 대해서만 분석).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의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상태별 국가 도움 요청 의사에서 차이를 보였다(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우 포함).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도움 요청 의사 확률이 낮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도움 요청 의사 확률이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하여 상용직에 비해 자영업, 실업, 비경제활동 집단의 도움 요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삶의 만족도, 외로움 같은 심리·정서적 변수들 역시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확률은 낮았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소득계층이 하향했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과거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으로 연결된 긍정적 경험은 도움 요청과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 복지제공을 위한 본인 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에 동의할수록 도움 요청 확률이 높았다. 사적 도움, 복지 인식 및 태도, 신뢰 및 정치이념 관련 변수들은 대체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에 대한 신뢰수준은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다른 분석 결과에서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던 복지 수급의 경험 역시 어려움 경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20대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도움 요청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도움 요청 의사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건강·심리·정서 요인 역시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의 분석 결과와 달리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

지 않았다. 반면, 사적 도움 요청 의사는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 복지 태도 및 인식, 정치이념 및 신뢰, 복지 수급 경험 관련 변수들이 대체로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증세에 대한 태도,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정부에 대한 신뢰, 복지 수급 경험 등이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표 4-2-10〉 소득수준별 생활비 부족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영향 요인

구분	변수		소득 수준	
			저소득층 (하위 30%) 회귀계수(표준오차)	고소득층 (상위 30%) 회귀계수(표준오차)
인구 ·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성	-.40 (.17)*	-.15 (.17)
	연령	(19~29세)		
		30~39세	-.19 (.29)	-.11 (.30)
		40~49세	-.25 (.30)	.07 (.33)
		50~59세	-.18 (.30)	-.20 (.33)
		60~64세	-.50 (.36)	-.54 (.36)
	지역	(대도시)		
		일반시	.16 (.16)	-.11 (.16)
		군지역	.41 (.44)	-.35 (.45)
	가구형태	1인 가구	-.14 (.22)	.03 (.26)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	.40 (.38)	.69 (.47)
		대학 졸업	.02 (.18)	.47 (.23)*
		대학원 졸 이상	.51 (.46)	.44 (.31)
	결혼상태	유배우자	.16 (.21)	.04 (.23)
건강 · 심리 · 정서	경제활동	(상용직)		
		임시일용직	.05 (.27)	-.10 (.32)
		자영업 등	-.30 (.26)	-.43 (.25)†
		실업	.01 (.26)	-.52 (.40)
		비경활	-.62 (.24)**	-.14 (.26)
	가구 소득 (자연로그)		.06 (.05)	-.10 (.17)
	가구 순자산 (역쌍곡선)		.07 (.04)*	-.05 (.04)
	건강상태	(나쁨)		
		보통	.36 (.22)	.08 (.32)
		좋음	.15 (.30)	.25 (.34)
	삶의 만족도	(불만족)		
		보통	-.33 (.22)	-.07 (.26)
		만족	-.22 (.29)	-.10 (.29)
	외로움		-.02 (.04)	-.02 (.03)
	우울		-.02 (.02)	-.01 (.02)
	과거-현재 계층 하향		-.44 (.17)**	-.14 (.23)
	현재-미래 계층 하향		.24 (.24)	.41 (.25)

〈표 4-2-10〉 소득수준별 생활비 부족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영향 요인(계속)

구분	변수		소득 수준	
			저소득층 (하위 30%) 회귀계수(표준오차)	고소득층 (상위 30%) 회귀계수(표준오차)
이전 경험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	(어려움 미경험)		
		경험+미요청	-.54 (.19)**	-.30 (.20)
		경험+요청+미지원	-.50 (.32)	-.99 (.50)*
		경험+요청+지원	2.78 (.74)***	1.06 (.78)
사적 도움	지인 수	(없음)		
		1명	.23 (.27)	.17 (.29)
		2~3명	.32 (.25)	-.04 (.23)
		4~5명 이상	-.22 (.40)	-.27 (.28)
	사적 도움 요청 의사		.19 (.24)	.62 (.20)**
개인 정보	본인 정보		.29 (.10)**	.25 (.10)**
	국민 정보		-.12 (.12)	.06 (.11)
복지 인식 및 태도	빈곤 책임		.14 (.09)	.05 (.09)
	공동체 의식		-.09 (.09)	.07 (.09)
	성장-분배		.02 (.09)	.05 (.09)
	선별-보편		-.09 (.07)	-.03 (.06)
	소득 격차		-.02 (.12)	.05 (.11)
	중세 태도		.01 (.08)	.03 (.08)
	정부 책임		.25 (.09)**	.12 (.09)
신뢰 및 정치 이념	일반 신뢰		-.02 (.04)	-.08 (.04)*
	국가 신뢰		.28 (.10)**	.35 (.10)**
	정치이념		-.05 (.12)	.15 (.10)
복지 수급 경험			.40 (.18)*	.21 (.17)
상수항			-.11 (.95)	-.90 (1.50)
			N=1,282 LR $\chi^2(46)=166.2^{***}$ Pseudo-R ² =.14	N=1,257 LR $\chi^2(46)=108.8^{***}$ Pseudo-R ² =.09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다음으로 전체 연구 대상을 현재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집단(표본의 하위 30%)과 고소득 집단(표본의 상위 30%)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를 <표 4-2-10>에 제시하였다.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과 미경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일부 차이가 나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 집단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 경제활동상태 중 비경험 집단에 서 도움 요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과거에 비해 현재의 소득계층이 하향했다고 인식할수록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확률이 낮아졌다. 반면 고소득 집단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주목할 부분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과 도움 요청 의사와의 관계인데, 저소득 집단에서는 국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고 지원으로 연결된 경우 도움 요청 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고소득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 태도 및 인식 관련 변수는 대체로 두 집단 모두에서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과 도움 요청 간의 정적 관계가 저소득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복지 수급 경험 역시 저소득 집단에서는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 외에 본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수준과 국가에 대한 신뢰는 두 집단 모두에서 도움 요청 의사와 일관된 정적 관계를 보였다.

〈표 4-2-11〉 연령대별 생활비 부족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영향 요인

구분	변수		연령대	
			20~30대 회귀계수(표준오차)	40~50대 회귀계수(표준오차)
인구 ·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성	-.03 (.16)	-.38 (.14)**
	연령	(19~29세)		
		30~39세	.08 (.18)	.04 (.14)
	지역	(대도시)		
		일반시	.23 (.16)	-.03 (.13)
		군지역	-.32 (.41)	-.11 (.34)
	가구형태	1인 가구	-.14 (.19)	-.55 (.21)**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	.42 (.29)	-1.48 (.84)†
		대학 졸업	-.01 (.20)	.38 (.16)*
		대학원 졸 이상	.01 (.40)	.13 (.24)
	결혼상태	유배우자	-.42 (.20)*	-.01 (.18)
건강 · 심리 · 정서	경제활동	(상용직)		
		임시일용직	-.37 (.24)	.24 (.27)
		자영업 등	-.40 (.30)	-.11 (.20)
		실업	-.10 (.28)	-.30 (.27)
		비경활	-.55 (.23)*	-.29 (.21)
	가구 소득 (자연로그)		-.02 (.06)	.01 (.06)
	가구 순자산 (역쌍곡선)		.01 (.03)	.004 (.03)
	건강상태	(나쁨)		
		보통	.06 (.25)	.15 (.21)
		좋음	.64 (.29)*	-.05 (.25)
	삶의 만족도	(불만족)		
		보통	-.22 (.22)	-.34 (.20)†
		만족	-.39 (.26)	-.22 (.25)
정서	외로움		.0001 (.03)	-.02 (.03)
	우울		-.01 (.02)	-.01 (.02)
	과거-현재 계층 하향		-.06 (.18)	-.36 (.15)*
	현재-미래 계층 하향		.11 (.27)	-.003 (.18)

〈표 4-2-11〉 연령대별 생활비 부족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영향 요인(계속)

구분	변수		연령대	
			20~30대 회귀계수(표준오차)	40~50대 회귀계수(표준오차)
이전 경험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	(어려움 미경험)		
		경험+미요청	-.71 (.18)***	-.53 (.16)**
		경험+요청+미지원	-.79 (.35)*	-.83 (.35)*
		경험+요청+지원	2.40 (1.02)*	2.04 (.62)**
사적 도움	지인 수	(없음)		
		1명	-.23 (.26)	.44 (.22)*
		2~3명	-.03 (.23)	.32 (.19)†
		4~5명 이상	-.50 (.29)†	.23 (.28)
	사적 도움 요청 의사		.66 (.19)***	.26 (.17)
개인 정보	본인 정보		.08 (.09)	.24 (.08)**
	국민 정보		.12 (.10)	.04 (.10)
복지 인식 및 태도	빈곤 책임		.11 (.09)	.06 (.07)
	공동체 인식		-.04 (.09)	.04 (.08)
	성장-분배		-.08 (.08)	.06 (.07)
	선별-보편		-.07 (.07)	-.02 (.06)
	소득 격차		-.02 (.10)	.07 (.09)
	증세 태도		.07 (.08)	.04 (.07)
	정부 책임		.28 (.08)**	.11 (.08)
신뢰 및 정치 이념	일반 신뢰		-.01 (.04)	-.08 (.03)*
	국가 신뢰		.36 (.09)***	.35 (.08)***
	정치이념		-.05 (.11)	.18 (.09)*
복지 수급 경험			.35 (.17)*	.38 (.14)**
상수항			-.55 (.89)	-1.50 (.84)†
			N=1,562 LR $\chi^2(43)=182.3$ *** Pseudo-R ² =.13	N=1,940 LR $\chi^2(43)=186.0$ *** Pseudo-R ² =.11

주: † <0.1 * <0.05 ** <0.01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집단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를 〈표 4-2-11〉에 제시하였다. 연령대에 따라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 가구형태, 과거-현재 계층 하향 인식 변수는 40~50대 집단에서만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남성, 1인 가구, 계층 하향 인식 집단의 경우 도움 요청 확률이 낮았다. 반면 20~30대 집단의 경우 유배우자, 비경제활동 집단의 도움 요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국가의 도움 요청 및 지원 경험은 양 집단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국가에 대한 신뢰, 복지 수급 경험 역시 양 집단에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사적 도움 관련 변수 및 정치이념은 20~30대 집단과 40~50대 집단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40~50대 집단은 도움을 요청할 가족 및 지인이 존재하는 경우 도움 요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반면, 20~30대 집단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사적 도움 요청 의사는 20~30대 집단에서만 국가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고, 정치이념은 40~50대 집단에서만 국가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표 4-2-12〉 국가 신뢰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개인정보 인식의 매개효과

	생활비 부족 시 국가 도움 요청 여부 계수(표준오차)
간접효과	0.016 (0.004)***
95% 신뢰구간	0.009 ~ 0.023
총 효과 대비 간접효과	0.132 (0.016 / 0.121)

주: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Monte Carlo 추정을 통해 이루어졌음(Zhao et al., 2010).

매개효과 분석 모형에는 〈표4-2-7〉에 제시된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모두 포함되었음.

† <0.1 * <0.05 ** <0.01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일관되게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대한 신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에 대한 신뢰수준과 국가 도움 요청

의사와의 관계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국가에 대해 신뢰할수록 국가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확률이 높았다.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을 포괄적이고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도움 필요 세 영역에서의 도움 요청 의사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고, 도움 요청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 외에 세부 집단별로도 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수 중 전반적으로 남성의 도움 요청 확률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비수급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우 복지 수급이 사회적 자격 박탈(social disqualification)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비수급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Lucas et al., 2021),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40~50대 집단에서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집단이 오히려 도움 요청을 원하지 않는 자발적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에서 실업 및 비경제활동 집단의 도움 요청 의사가 낮았고, 외로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과거-현재 계층을 하향이라고 인식할수록 도움 요청 의사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집단

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을 주저하거나 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제도를 통한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복지 인식 및 태도 관련 변수들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에서 복지 인식 및 태도 관련 변수들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거나 마주한 문제가 아닐 수 있고,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를 복지과 관련된 가치, 규범, 이념 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 역시 언제든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제도 및 복지 수급과 관련된 긍정적 규범, 가치 및 태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시민 간의 관계 형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수급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급여 신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긍정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Christensen et al., 2020; Lucas et al., 2021; Revil, 2021 등). 복지 수급과 관련된 긍정적 경험은 제도에 대한 인식, 수용성, 권리의식 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제도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범을 형성하여 자발적 비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맥락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및 지원의 과거 경험은 도움 요청 의사와 매우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본인 또는 가족의 복지 수급 경험 역시 하위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도움 요청 의사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복지 수급 과정에서 긍정적 경험을 통해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태도 및 구

범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비공식적 자원과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Warin(2018b) 역시 자발적 비수급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선호하는 대안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본 장에서의 분석 결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의 수는 생활비 부족의 경우에는 도움 요청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도움 요청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일상적인 생활비 부족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공식적 자원의 존재가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같은 영역에서는 국가의 도움에 우선하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계층 및 지위의 경로에 대한 인식이 급여 신청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Lucas et al., 2021),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계층이 하향했다고 인식하는 경우 도움 요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이러한 집단의 경우 국가 도움 요청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장벽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미래의 계층 이동에 대한 인식은 도움 요청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익명성(지역의 인구밀집도를 대리변수로 활용) 및 보수-진보의 정치이념 역시 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Humbelin, 2019), 본 연구에서도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익명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군지역(농촌지역 등) 거주와 도움 요청 간의 부적 관계가 나타났고($p < .10$), 40~50대 연령 집단에서는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도움 요청 확률이 높았다. 다만 군지역의 낮은 도움 요청 의사는 대안적인 비공식 네트워크

의 존재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비수급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합리적 선택모형에 기반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급여 수준 및 기대 기간, 잠재적 소득 등의 대리변수로 활용되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 구성 등은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구소득 및 자산 수준 역시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대표성 있는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일 수 있는데,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매우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기존의 연구들과 일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van Mechelen, Janssens, 2017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본 보고서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 모형에 투입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수준 역시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특히, 국가 신뢰와 도움 요청 간의 관계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총 효과의 약 13%). 국가에 대한 신뢰는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확률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여 도움 요청에 긍정적 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세정·김기태(2022)의 연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음에도 도움 요청을 원하지 않는 자발적 배제집단,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요청을 원하지도 않는 고립집단이 생각보다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에

주목하고 도움 요청 영향 요인을 탐색적 수준이지만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복지국가 사회권 논의는 주로 공급자의 관점에서 제도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수급자의 관점에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논의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배제되거나 고립된 집단을 파악하여 공적인 제도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개입 및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본 장에서의 논의 및 분석 결과는 이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제1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제2절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제3절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제 5 장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제1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이 장에서는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및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인식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대,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소득계층, 1인 가구 여부, 가구 내 돌봄 필요 가구원 유무를 포함하며, 사회인식은 국가 신뢰도,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분배와 성장 선호도, 복지급여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예: 주관적 건강, 가구 내 돌봄 필요 가구원 유무 등)에 따른 분석은 정책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별하여 해당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인식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을 살펴보고 회귀분석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이 장 전체에서 활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1-1〉 활용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정의 및 측정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3개 범주로 코딩 (청년 19~34세, 장년 35~49세, 중년 50~64세)
	주관적 건강	3개 범주로 코딩 (불건강, 보통, 건강)
	학력(교육수준)	3개 범주로 코딩 (고졸 이하,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경제활동	5개 범주로 코딩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실업, 비경활)
	소득계층	2개 범주로 코딩 (중위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
	가구형태	2개 범주로 코딩 (1=1인 가구, 0=기타 가구)
사회 인식	돌봄 가구원	2개 범주로 코딩 (돌봄 가구원 있음, 돌봄 가구원 없음)
	국가 신뢰도	3개 범주로 코딩 (신뢰하지 않는 편, 보통, 신뢰하는 편)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3개 범주로 코딩 (공동체 이익 중요, 중간, 개인의 이익 중요)
	분배와 성장 선호도	3개 범주로 코딩 (분배 중요, 중간, 성장 중요)
도움 필요 경험 및 사적 자원 여부		3개 범주로 코딩 (저소득층, 중간, 전 국민)
종속 변수	생활비 부족 시, 목돈 필요시, 정서적 문제 도움 필요시 국가 (예: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 도움 요청 의향.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이분 변수로 측정 (1=있음, 0=없음)	생활비 부족 시, 목돈 필요시, 정서적 문제 도움 필요시 국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지 이분 변수로 재코딩 (1=있음, 0=없음)
	개인 소득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소득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
	생계유지 위기에 대한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생계유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 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주: 본 조사는 조사 방법의 한계상 2022년 기준의 세전 월평균 가구 총소득을 만 원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 중앙값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이상과 중위소득 미만으로 구분함.

먼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했다. 첫째, “국가가 나에게 복지(예: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다음의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C1)는 진술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5점)’로 응답할 수 있도록 보기를 구성하고, ‘다음의 정보’를 경제상황, 건강상태, 경

제활동상태로 구체화하여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했다. 둘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OO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C20)는 문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매우 동의한다(10점)’로 응답할 수 있도록 보기를 구성하고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건강정보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의 없는 정보 수집에 대한 수용’을, 두 번째 질문은 ‘국가의 개인정보 집적에 대한 동의’를 질문한 것이다.

[그림 5-1-1]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문항

C1. 국가가 나에게 복지(예: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다음의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나의 경제상황 (예: 소득, 재산, 부채, 세금납부 이력)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건강상태 (예: 과거의 질환, 손상력, 치료 이력)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경제활동상태 (예: 취업/실업 상태, 구직활동 여부)	①	②	③	④	⑤

C20.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1)소득정보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재산정보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부채정보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건강정보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첫 번째 질문인 ‘국가가 나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경제상황(예: 소득, 재산, 부채, 세금납부 이력), 건강상태(예: 과거의 질환, 손상력, 치료 이력), 경제활동상태(예: 취업/실업 상태,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데 대한 동의 정도는 경제활동상태(3.16점), 건강상태(3.08점), 경제상황(2.92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3점)을 기준

으로 한다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와 경제활동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학력, 경제활동 참여상태, 돌봄 가구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19~34세)과 중년(50~64세)이 장년(35~49세)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았다. 다만,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청년이 복지제공을 위한 정보 수집에 동의 수준이 높았던 반면, 건강상태 및 경제활동상태에 대해서는 중년의 동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보통 또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동의 수준을 보였다. 학력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고, 경제활동상태는 임시, 일용, 특수직의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다.

분석 결과는 취약한 집단일수록, 구체적으로는 해당 영역의 욕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집단일수록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본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혹은 개입의 가능성이 큰 집단일수록, 본인의 정보공개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1) ¹⁾

구분		나의 경제상황		나의 건강상태		나의 경제활동상태	
		평균 (점)	F값	평균 (점)	F값	평균 (점)	F값
전체		2.92		3.08		3.16	
성별	남	2.94	1.26	3.12	5.76	3.17	0.03
	여	2.90		3.03		3.16	
연령대	청년(19~34세)	2.98	7.92 ***	3.09	6.51 **	3.20	5.29 **
	장년(35~49세)	2.82		2.99		3.08	
	중년(50~64세)	2.95		3.14		3.21	
주관적 건강상태	불건강	3.10	9.75 ***	3.30	15.58 ***	3.33	9.1 ***
	보통	2.86		3.00		3.11	
	건강	2.92		3.09		3.18	
학력	고졸 이하	3.02	6.19 *	3.20	10.25 ***	3.25	5.30 **
	대졸	2.88		3.03		3.14	
	대학원 졸	2.87		2.99		3.08	
경제활동 상태	상용	2.85	4.94 ***	3.01	4.67 ***	3.08	6.81 ***
	임시일용특수	3.06		3.21		3.32	
	고용자영자(무급)	2.96		3.15		3.18	
	비경활	3.02		3.14		3.28	
소득계층	실업	2.93		3.11		3.21	
	중위소득 이상	2.85	10.67 *	3.01	11.08 **	3.11	6.32 *
	중위소득 미만	2.97		3.13		3.20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2.92	0.02	3.11	0.64	3.17	0.05
	2인 가구 이상	2.92		3.07		3.16	
돌봄 가구원 유무	유	3.09	18.46 ***	3.25	19.45 ***	3.29	10.05 *
	무	2.88		3.04		3.14	

주: 1) 국가가 나에게 복지(예: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다음의 정보 (나의 경제상황, 나의 건강상태, 나의 경제활동상태)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사회인식에 따라 “국가가 나에게 복지(예: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다음의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

다”(C1)는 데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집단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와 개인 중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분배와 성장 중 분배가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복지급여 대상 범위가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

〈표 5-1-3〉 사회인식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1) ¹⁾

구분		나의 경제상황		나의 건강상태		나의 경제활동상태	
		평균 (점)	F값	평균 (점)	F값	평균 (점)	F값
국가 신뢰도	신뢰하지 않는 편	2.71	67.51	2.88	61.04	2.97	66.79 ***
	보통	2.95		3.11		3.18	
	신뢰하는 편	3.28		3.41		3.54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공동체 이익 중요	3.08	9.48 ***	3.20	5.31 **	3.28	5.1 **
	중간	2.86		3.03		3.12	
	개인의 이익 중요	2.91		3.08		3.17	
분배와 성장 선호도	분배 중요	2.96	3.97 *	3.09	4.51 *	3.18	10.05 ***
	중간	2.85		3.01		3.06	
	성장 중요	2.95		3.13		3.24	
복지 급여 대상 범위	저소득층	3.03	11.58 ***	3.19	11.16 ***	3.29	15.41 ***
	중간	2.81		2.97		3.03	
	전 국민	2.89		3.05		3.15	

주: 1) 국가가 나에게 복지(예: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다음의 정보(나의 경제상황, 나의 건강상태, 나의 경제활동상태)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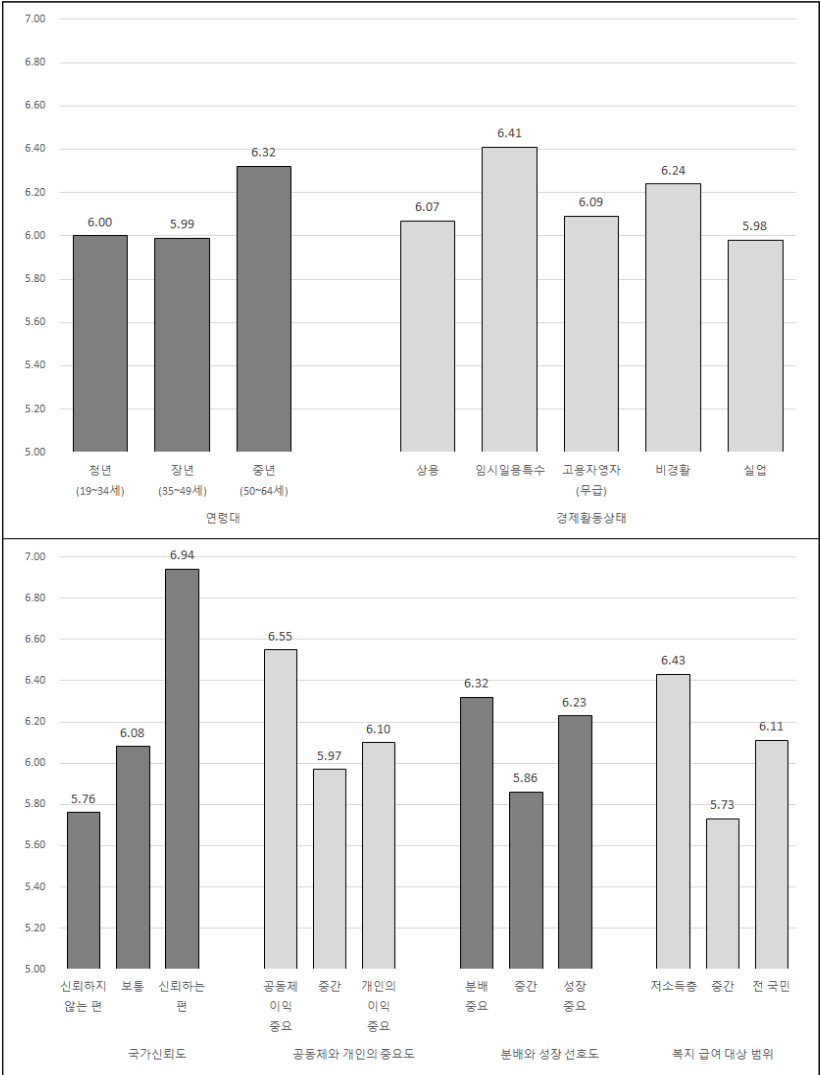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OO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C20)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봤다. ‘OO정보’로는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건강정보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10점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정보(6.66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부채정보(6.28점), 소득정보(6.12점), 재산정보(6.11점) 순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돌봄 가구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년, 임신/일용/특수직, 돌봄 가구원 있는 경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정보, 부채정보, 건강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사회인식에 따라서는 국가 신뢰도,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분배와 성장, 복지급여 대상 범위, 이념적 성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를 신뢰하는 편, 공동체 이익 중요, 분배 중요, 저소득층 중심 복지를 선호하는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 중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소득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중년(6.32점), 임신/일용/특수직(6.41점)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인식 관련 국가를 신뢰하는 편(6.94점), 공동체 이익 중요(6.55점), 분배 중요(6.32점), 저소득층 중심 복지를 선호하는 경우(6.43점) 동의 수준이 높았다.

[그림 5-1-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인식에 따른 소득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수준¹⁾



주: 1)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소득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표 5-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2) ¹⁾

구분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건강정보	
		평균(점)	F값	평균(점)	F값	평균(점)	F값	평균(점)	F값
성별	전체	6.12		6.11		6.28		6.66	
	남	6.19		6.18		6.25		6.66	
연령대	여	6.04	4.21*	6.02	4.17*	6.32	0.77	6.65	0.01
	청년(19~34세)	6.00		5.94		6.16		6.41	
주관적 건강상태	장년(35~49세)	5.99	8.42***	6.02	8.3***	6.26	2.74	6.52	20.91***
	중년(50~64세)	6.32		6.31		6.39		6.97	
학력	불건강	6.25		6.30		6.55		6.91	
	보통	5.94	10.56***	5.96	6.64**	6.14	7.12***	6.49	9.27***
경제활동 상태	건강	6.30		6.22		6.36		6.78	
	고졸 이하	6.16		6.14		6.33		6.82	
소득계층	대졸	6.11	0.25	6.10	0.25	6.25	0.4	6.60	3.24*
	대학원 졸	6.06		6.03		6.33		6.59	
1인 가구 여부	상용	6.07		6.03		6.21		6.54	
	임시·일용·특수 고용자·영자(무급)	6.41		6.45		6.60		6.98	
독거노년 가구원 유무	비정규직	6.09	3.13*	6.12	3.8	6.12	3.23*	6.74	4.04**
	실업	6.24		6.22		6.38		6.77	
1인 가구	실업	5.98		5.98		6.25		6.66	
	중위소득 이상	6.08		6.06		6.26		6.58	
독거노년 가구원 유무	중위소득 미만	6.14	0.58	6.14	0.85	6.29	0.14	6.71	2.70
	2인 가구 이상	5.98		5.97		6.17		6.44	
독거노년 가구원 유무	여부	6.14	2.28	6.13	2.05	6.30	1.34	6.70	5.64
	유	6.34	6.5*	6.38	9.66**	6.45	3.62	6.93	9.97**
독거노년 가구원 유무	무	6.08		6.05		6.25		6.60	

주: 1)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00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표 5-1-5〉 사회인식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2) ¹⁾

구분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건강정보	
		평균(점)	F값	평균(점)	F값	평균(점)	F값	평균(점)	F값
국가 신뢰도	전체	6.12		6.11		6.28		6.66	
	신뢰하지 않는 편	5.76		5.76		6.02		6.31	
	보통	6.08	60.79***	6.06	59.17***	6.22	37.15***	6.62	57.62***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신뢰하는 편	6.94		6.95		6.97		7.47	
	공동체 이익 중요	6.55		6.52		6.71		7.24	
	중간	5.97	13.77***	6.01	11.06***	6.13	12.68***	6.52	21.95***
분배와 성장 선호도	개인의 이익 중요	6.10		6.04		6.27		6.58	
	분배 중요	6.32		6.36		6.54		6.72	
	중간	5.86	13.67***	5.88	11.69***	5.98	17.12***	6.40	13.16***
복지 급여 대상 범위	성장 중요	6.23		6.15		6.39		6.85	
	저소득층	6.43		6.43		6.59		6.96	
	중간	5.73	24.10***	5.75	21.99***	5.89	21.95***	6.16	31.52***
전 국민		6.11		6.07		6.28		6.72	

주: 1)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00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인식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소득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와의 관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사회인식 관련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기초분석 결과와 유사했다.

먼저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층, 경제활동상태와 국가의 소득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정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청년(19~34세)에 비해 중년(50~64세)이, 경제활동상태에서 비경제활동에 비해 임시, 일용(특고) 근로자가, 돌봄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소득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인식 변수를 투입한 모형 2를 살펴보면, 연령, 경제활동상태는 여전히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사회인식 변수에서는 이념 성향(진보), 국가 신뢰도, 공동체 중요도 인식, 복지 대상 인식범위가 국가의 소득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유의한 관계가 검증된 성별(남성)과 돌봄 가구원 유무(돌봄 가구원 있음)는 사회인식 변수를 투입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편에 비해 보통 또는 신뢰하는 편의 경우, 공동체 중요도 인식에서 개인 이익에 비해 공동체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국가의 소득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편복지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소득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복지를 선호하는 입장은 정보공개가 전 국민에게 해당하고, 그래서 본인의 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거부감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표 5-1-6〉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인식과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¹⁾와의 관계

구분		모형1		모형2	
		b	s.e	b	s.e
성별(ref. 여성)		0.16747*	0.07819	0.08393	0.07753
연령층 (ref. 청년 19~34세)	장년(35~49세)	0.07020	0.09937	0.03510	0.09779
	중년(50~64세)	0.38764***	0.09750	0.20345*	0.09755
주관적 건강상태 (ref. 불건강)	보통	-0.19708	0.11935	-0.19358	0.11793
	건강	0.20343	0.12586	0.02147	0.12542
교육수준 (ref. 고졸 이하)	대졸	-0.03252	0.08960	-0.02431	0.08797
	대학원 졸	-0.13671	0.15579	-0.13806	0.15259
경제활동상태 (ref. 비경활)	상용	0.05195	0.11377	0.07370	0.11139
	임사·일용(특고)	0.40524**	0.13822	0.33219*	0.13542
	자영자·고용주(무급가족)	-0.00632	0.16155	-0.00416	0.15811
	실업	0.24718	0.15956	0.24915	0.15617
소득계층(ref. 중위 60% 이상)		0.00828	0.08390	0.03042	0.08237
1인 가구 여부(ref. 2인 이상 가구)		-0.13375	0.11032	-0.07956	0.10814
돌봄 가구원 유무(ref. 없음)		0.21056*	0.10520	0.17390	0.10312
이념 성향 (ref. 보수)	중도			-0.06015	0.10244
	진보			0.41474***	0.11293
국가 신뢰도 (ref. 신뢰하지 않는 편)	보통			0.37756***	0.08382
	신뢰하는 편			1.07437***	0.10987
공동체 중요도 인식 (ref. 개인 이익)	보통			0.03881	0.08643
	공동체 이익			0.27922*	0.11171
분배 인식 (ref. 성장)	보통			-0.16506	0.09224
	분배 선호			0.07336	0.10158
복지 대상 범위 인식 (ref. 저소득층)	보통			-0.53901***	0.10258
	국민 전체			-0.28130**	0.08777
상수		5.78268	0.22171	5.72294	0.24345
N		4,000		4,000	
Adj R ²		0.0126		0.0553	

주: 1)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소득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에 대 한 동의 정도

2)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한편,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 중에는 국가의 정보수집이 복지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부정수급이나 세금 탈세나 탈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보 수집에 찬성한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거 되면 악용하는 사례도 없어질 거고 그게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복지를 악용하는 사람은 잘 받아 가고 이게 에프엠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좀. 그런 게 약간씩 있더라고요.” A5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히 공개가 되지 않으면 돈 어디다 숨겨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 완벽하게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공개가 돼야지 그 격차를 줄이는 거를, 국가가 하는 거는 딱 국가가 그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소득이 더 적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때도 이렇게 소득 보는 것처럼 전부 공개되어 있으면 국가가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주는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공개를 다 하면 약간 그런 걸 평등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복지 같은 거를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A9

제2절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그동안 국가의 복지제공에 대한 인식조사는 정부의 책임 여부, 수급 대상 범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컨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국가가

복지급여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저소득층, 전 국민)’ 등이 그러한 문항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 및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즉,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도움 요청 여부와 국가 복지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C3)와 “어떤 사람이 ...인 경우, 국가는 복지정책/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C18)를 통해 측정했다.

[그림 5-2-1]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문항

C3.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도움 요청 여부와 국가 복지 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주시요. (※ 복지는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 등을 의미)

어려움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복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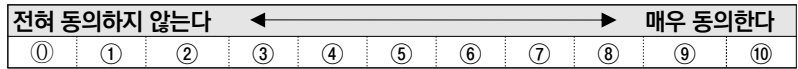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그림 5-2-1]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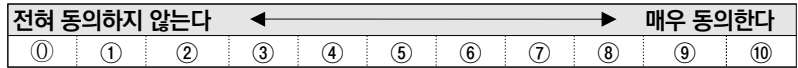
C18.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귀하가 동의 또는 반대하시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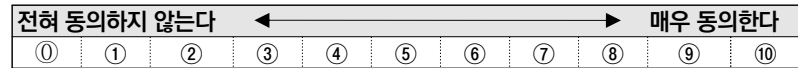
1) 신체건강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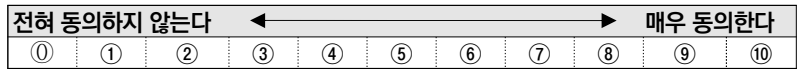
2) 정서적 문제(예: 불안, 우울, 공황장애)가 있어 보이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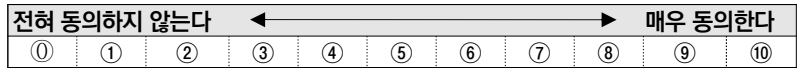
3) 생계유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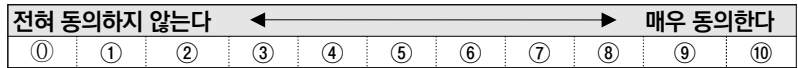
4) 가족이나 지인,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이 생활하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5) 팬데믹 하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걸린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6) 연령, 장애, 질환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전혀 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먼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도움 요청 여부와 국가 복지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 정도’(C3)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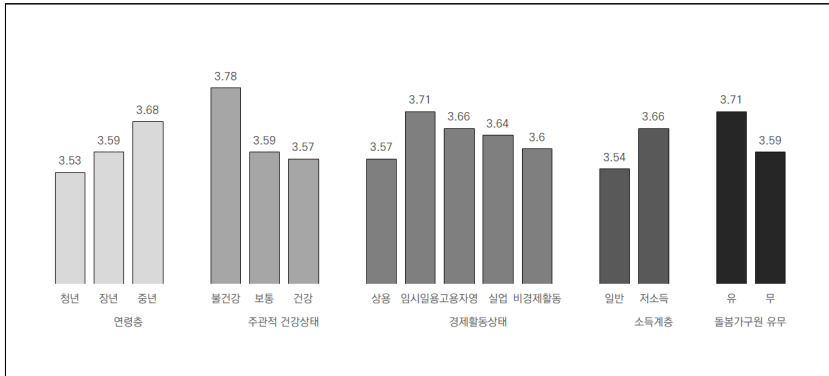
분석에 따르면,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3.6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3점) 이상의 점수로,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복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2.42점(보통 3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의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의받지 않는 국가 개입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혹은 자유권의 훼손도 일부 용인할 수 있다는 정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권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상충하는 가치에서 국민들은 전자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와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복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두 가지 질문 모두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소득계층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돌봄 가구원 유무에 따른 동의 정도의 차이는 본인 요청과 무관하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대체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경제활동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소득계층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상태에서 임시, 일용, 특수직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인 경

우보다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 학력, 1인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본인 요청 여부에 따른 복지제공 여부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욕구가 있는 취약 집단에서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5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즉, 개인정보 공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은 좀 더 수용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취약하지 않은 상용직, 건강한 집단, 돌봄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도 평균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수용적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A10은 시부모님이 서로 다른 지역에 따로 거주함에 따라, 혹시 모를 불상사를 걱정하던 중, 지자체에서 먼저 독거노인을 위한 119 비상벨을 설치해 주었다고 했다. 또, 이를 통해 위급상황 시 시부모님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하였다.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보면 제가 깜짝깜짝 이렇게 놀라는 게 그래도 나라에서 관리가 잘 되고 이렇게 복지 부분이 이렇게 강화, 없던 게 생겨 나기도 했구나. 느낀 게, 그 독거노인 신청하면 그 비상벨 이렇게 누르는 걸 설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누르면 번호를 미리 받으셔서 제1 보호자, 2 보호자 이렇게. 아니면 그 응급실 응급 119 그 센터로 연계가 된대요.” A10

심층 인터뷰 참여자 중에는 가족 중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할머니가 계셨으나, 내외부적 상황으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변 복지관 등이 문을 닫았고,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외부인에게 쉽게 돌봄을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님이 근무시간 중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관련한 정보를 모르다 보니,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도 잘 몰랐고, 어떤 정보가 적용되는지 판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그런 정보가 워낙 딱 원하는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블로그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막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글을.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그럴 때 그런 정보를 찾을 때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어디다가 딱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A9

〈표 5-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복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평균	F값	평균	F값
전체		3.61		2.42	
성별	남	3.61	0.09	2.45	3.08
	여	3.60		2.39	
연령대	청년(19~34세)	3.53	8.72***	2.53	9.71***
	장년(35~49세)	3.59		2.41	
	중년(50~64세)	3.68		2.35	
주관적 건강상태	불건강	3.78	10.68***	2.25	9.42***
	보통	3.59		2.43	
	건강	3.57		2.46	
학력	고졸 이하	3.64	0.81	2.42	0.47
	대졸	3.60		2.41	
	대학원 졸	3.59		2.47	
경제활동 상태	상용	3.57	3.17*	2.48	4.70***
	임시일용(특수)	3.71		2.34	
	고용자영자(무급)	3.66		2.30	
	실업	3.64		2.43	
	비경제활동	3.60		2.35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상	3.54	17.86***	2.47	5.78*
	중위소득 미만	3.66		2.39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3.59	0.44	2.41	0.04
	2인 이상 가구	3.61		2.42	
돌봄 가구원 유무	유	3.71	9.87**	2.38	1.26
	무	3.59		2.43	

주: 1)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심층 인터뷰 참여자 일부는 개인이 아주 위급할 때는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첫째, 65세 이상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건사고 등을 미리 알리고, 해당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도 본인의 목숨을 살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 사전에 물어보고, 이러한 응답을 바탕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국가가 개입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둘째, 개인이 도움을 거부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 즉 개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파악은 하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 발생 시, 동의 없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도움을 거부하는 당사자의 생명을 살린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징계나 처벌은 면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없거나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이들은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아니 위급할 때는 동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이지. 어떻게 꼭.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동의를 먼저 아니잖아요. 아니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A11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리를 해줬다가 만약에 이제 정신질환으로 뭐 좀 긴급한 사고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6

“다만 의사는 묻되. 그래도 싫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책임 안 묻는 조건으로 설득해서 데려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동의하는 선에서 해 주는 게 맞지만 거부하더라도 이게 생명을 끊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내가 욕은 먹고 뭐 징계를 받더라도. 왜냐하면 저도 주변 사람들 이렇게 간 걸 봤으니까. 그래서 살아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A2

한편, 개인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기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에 대해 설득하고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근데 국가가 도와주러 갔는데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이거나 내가 의사를 싫다 좋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면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도와드리러 갔는데 감사하게 그 도움을 받아들이시면. 근데 그렇게 거절을 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A9

“본인이 복지관이나 복지센터에 가서 신청도 하지 않는 상태고 그다음에 공공적으로 거부를 하고 이런 상태면 그거를 강제 개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전, 전화가 됐든 뭐 우편물이 됐든 사전에 몇 번의 공지는 또 해야겠죠. 그 정도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액션을 못 취해서 사고가 일어난 건 개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만약 거부를 한다. 그런데 의사 타진을 했는데 거부를 계속 한 3회 정도 했다 그러면 그건 그것까지 국가에서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 A5

“살려놨는데 왜 살렸냐고 이렇게 화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랑 의식 없는 식물인간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가족들이 또 그거를 살려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저희 엄마가 사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건 아니고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

요. 이제 엄마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암 투병하셨었는데, 끝에 이렇게 되게 고통스러워하시기는 하셨어요. 많이. 그래서 그거는 본인 의사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A10

국가 지원에 대한 수용성을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 유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적 자원(가족, 지인)의 유무에 따라서도 살펴볼 수 있다.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정서적 문제(우울, 스트레스, 외로움 등)가 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는 네 가지 경우의 상황 모두에서 도움 필요 경험이 있었던 경우, 본인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 사적 자원이 없는 경우는 사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 비해 국가의 복지제공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서적 문제에 대한 국가 지원 수용성 동의 정도는 사적 자원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다($p < 0.05$). 이는 정서적 문제가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유무에 따른 국가의 복지제공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2〉 도움 필요 경험 및 사적 자원 여부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평균	F값
전체			3.61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	있음	3.70	20.50***
		없음	3.56	
	사적 자원 유무	있음	3.58	7.50**
		없음	3.67	
갑자기 큰 목돈 필요	경험 여부	있음	3.66	10.28**
		없음	3.56	
	사적 자원 유무	있음	3.57	13.72***
		없음	3.69	
정서적 문제	경험 여부	있음	3.67	14.66***
		없음	3.56	
	사적 자원 유무	있음	3.59	4.62*
		없음	3.66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돌봄 필요	경험 여부	있음	3.65	11.11***
		없음	3.56	
	사적 자원 유무	있음	3.58	10.49**
		없음	3.70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도움 필요	경험 여부	있음	3.64	11.61***
		없음	3.54	
	사적 자원 유무	있음	3.56	12.81***
		없음	3.67	

주: 1) * p<0.05, **p<0.01, ***p<0.001
2) 사적 자원 보유 여부는 각 도움 필요 상황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있음'으로 재코딩하여 분석함.
3)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또한 개인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중요시하는 경우, 성장보다는 분배를 선호하는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전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국가의 복지제공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3〉 사회인식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구분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평균	F값
국가 신뢰도	신뢰하지 않는 편	3.69	10.44***
	보통	3.54	
	신뢰하는 편	3.61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공동체 이익 중요	3.70	4.11*
	중간	3.58	
	개인의 이익 중요	3.60	
분배와 성장 선호도	분배 중요	3.87	52.97***
	중간	3.56	
	성장 중요	3.49	
복지급여 대상 범위	저소득층	3.60	21.44***
	중간	3.46	
	전 국민	3.70	

주: 1)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혼, 가족 및 지인과의 갈등, 친구나 지인으로부터의 사기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심각한 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다.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누가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에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일단 가족은 진짜 제가 뭐 잘못될 정도로 크게 막 그럴 경우 아니면 별로 도움 요청하고 싶지 않고요.... 저도 안 빌려줄 것 같고. 개네한테 빌려달라는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개네가 뭐 다 뭐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유 있게 살아도 어쨌든 개네들한테 그럴 제가 입장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개네들한테 해 줄 그것도 없지만 뭐 어쨌든 그런 사이는 아니고.” A8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워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일단 사람을 믿을 수가 요즘 별로 없잖아요. 사기가 많아서.” A3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을 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했지만, 자신이 때린 것만 기억하는 것, 경제적 형편에 대한 자랑 등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제가 연락을 거부된 상황이죠.” A1

“없어요. 아예 전혀 없고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해서 저를 낳은 거라서 이제 전 남편의 이제 딸은 하나 있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 가 계시니까 실질적으로는 저 혼자죠.” A5

“마음의 준비가 되지도 않는 이혼을 한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남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애 엄마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딸한테서. 엄마가 죽었다고. 병원에 있을 때는 전화 한번 없다가. 그만큼 사이가 이제 별로 안 좋았다는 말 이죠.” A7

“이제 제 개인적인 가정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주요한 계기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막 깊은 속마음을 막 털어놓거나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없다고 느꼈어요.” A6

“네네. 제가 그나마 진짜 제가 벗어나지 않고 했던 게 어머니가 반이어서. 그나마 이제 어머니마저 제가 연이 끊기면 정말 저는 진짜 아무도 없죠. 친가도 외가도, 친구들도 지금 단절된 상황이고.” A2

국가의 신뢰도나 분배와 성장에 대한 선호 등과 같은 사회인식에 따라 서도 국가 지원에 대한 수용성은 차이가 있었다.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동의 정도가 3.69 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가를 신뢰하는 경우(3.61점), 보통인 경우(3.54 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모순적이다.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와 ‘국가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서의 국가를 다소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자는 일종의 체계, 제도를, 후자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국가 신뢰 정도에 따른 국가 지원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보고를 참고하여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뭐 정치인들이죠.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정치인들은 그렇게 신뢰가 안 가죠.” A5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인 국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행정기관.” A5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공공기관이죠. 네네. 그것까지 신뢰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A5

“이런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그거를 안 주겠어?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A3

“일단은 정치인은 믿을 수 없고요. 어떤 정치인이든 정치인 그런 거 그

래서 나는 뭐 지방선거고 뭐 대통령 선거고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싶고. 별로 그런 신뢰가, 그런 인물들에 대한 신뢰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시스템 같은 거는 뭐 그냥 공공기관이나 뭐 그런 나라 자체에 뭐 그런 게 아예 없진 않은데.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A8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Jon Christian Fløysvik Nordrum 교수는 정권에 대한 신뢰는 시스템(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차이가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고, 타 국가와 비교하여 정당 간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집권당에 따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인사 변동이 심하지 않아 국가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정세정, 박윤경, 2023).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인 경우, 국가는 복지정책/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복지 욕구 영역을 신체건강 문제, 정서적 문제, 생계유지의 위기, 관계의 단절(가족이나 지인,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이 생활하는 경우), 감염병(팬데믹 하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걸린 경우), 돌봄 부재(연령, 장애, 질환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전혀 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의 경우로 구분했으며, 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부터 10점 ‘매우 동의한다’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복지개입 수용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돌봄 공백으로 7.14점이었으며, 감염병/생계유지 위기(6.88점), 신체건강 문제(6.34점), 관계 단절(6.28점), 정서적 문제(6.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복지제공 동의 정도는 앞에서 살펴본 도움 필요 경험 여부에 따른

동의 정도에서도 낮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복지제공, 즉 국가 개입의 수용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팬데믹의 여파를 고려하면 감염병보다 돌봄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돌봄 공백이 낳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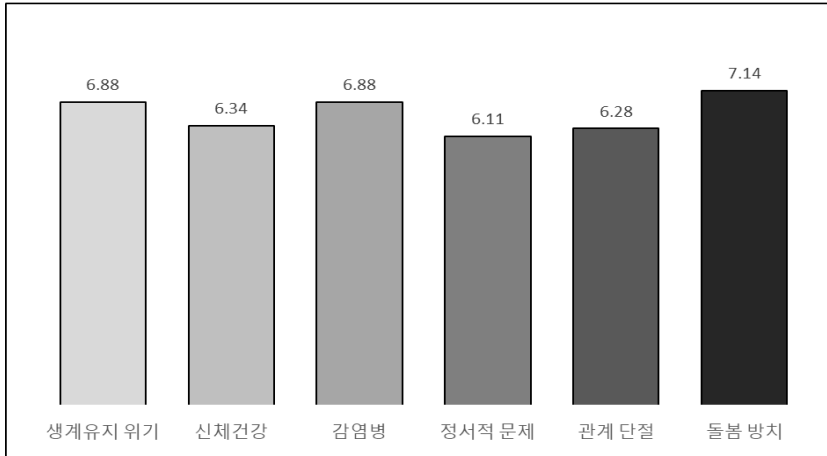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상당수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시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에게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다. 둘째, 진료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부담감과 사회적 낙인감이 마음의 장벽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 병원과 같은 전문기관 방문 시, 비용 문제도 무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내 속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발설하는 게 그게 좀 되게, 되게 어려운 장벽이라고 느껴져요, 그 자체가.” A6

“정신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도움 주는 거는 그냥 상담원이 그냥 상담해 주는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얘기만 듣고 뭐 얘기만 하는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또 전문가는 비용도 비싸고 일단 별로 인식이 병원에 그런 정신병원 그런 데는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또 기록이 남거나 이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A8

[그림 5-2-3] 복지 욕구 영역별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어떤 사람이……인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⑩ 매우 동의한다 11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복지 욕구 영역별 국가의 복지제공 동의 정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대체로 복지욕구 영역에 관계 없이 연령층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임시일용직(특수고용포함)인 경우, 돌봄 가구원이 있는 경우 동의 수준이 높았다. 대체로 성별, 학력,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동의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정서적 문제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 성별과 1인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돌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의 복지개입 수용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미만의 저소득층은 정서적 문제와 관계 단절에 처한 경우 국가의 개입 수용도가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보다 국가의 복지개입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1인 가구 당사자보다 2인 이상 가구에서 돌봄 부

재 시 국가의 복지개입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2인 이상 가구에서 아동 혹은 노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크게 발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인식의 측면에서는 국가를 신뢰하는 편(약간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인 경우,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경우,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시하는 경우, 국민 전체보다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공을 선호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인식의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중도적인 성향을 갖는 집단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계유지 위기 영역에서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개인 동의 없이 국가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7.33점),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다음 순으로 높으며(6.92점), 공동체와 개인의 중간 수준으로 응답한 집단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6.67점). 이러한 경향은 다른 복지 욕구 영역과 사회인식(분배와 성장, 복지급여 대상 범위)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2-4〉 복지 욕구 영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구분	생계유지 위기		신체건강 문제		감염병		정서적 문제		관계 단절		돌봄 방식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성별	전체	6.88		6.34		6.88		6.11		6.28		7.14	
	남	6.87	0.04	6.37	0.74	6.88		6.16		6.25		7.03	
연령대	여	6.88		6.30		6.87	0.01	6.06	1.83	6.30	0.48	7.25	10.95***
	청년(19~34세)	6.42		6.09		6.44		5.71		5.92		6.70	
	장년(35~49세)	6.76	53.16***	6.24	18.78***	6.76	54.29***	6.08	33.28***	6.23	28.04***	7.01	59.34***
	중년(50~64세)	7.33		6.61		7.32		6.44		6.60		7.58	
주관적 건강상태	불건강	7.46		6.78		7.37		6.58		6.75		7.73	
	보통	6.77	20.46***	6.23	12.94***	6.73	17.5***	6.00	13.75***	6.15	14.15***	6.99	24.97***
학력	건강	6.81		6.31		6.89		6.08		6.27		7.11	
	고졸 이하	6.91		6.46		6.90		6.17		6.32		7.15	
	대졸원 졸	6.85	0.37	6.29	2.25	6.85	0.63	6.08	0.55	6.27	0.38	7.11	1.58
	대졸원 졸	6.93		6.30		6.99		6.12		6.19		7.33	
경제활동 상태	사무	6.76		6.22		6.79		6.03		6.20		7.02	
	임시·일용특수	7.19		6.62		7.04		6.32		6.51		7.29	
	고용자영자(무급)	7.05	4.32**	6.47	4.03**	7.11	2.54*	6.28	3.14*	6.46	2.98*	7.34	3.6**
	실업	6.92		6.45		6.95		6.28		6.38		7.22	
소득계층	비정규	6.85		6.31		6.85		6.00		6.18		7.24	
	중위소득 이상	6.82	1.51	6.25	3.68	6.87	0.03	6.02	4.51*	6.18	4.56*	7.17	0.60
	중위소득 미만	6.91		6.39		6.88		6.18		6.34		7.12	
	1인 가구	6.84		6.40		6.80		6.04		6.21		6.98	
돌봄 가구원 유무	2인 이상 가구	6.88	0.13	6.32	0.64	6.89	0.80	6.12	0.61	6.29	0.68	7.17	4.11*
	유무	7.34	32.05***	6.82	36.33***	7.08	6.10*	6.62	39.21***	6.71	27.24***	7.42	13.57***
		6.78		6.24		6.84		6.01		6.19		7.08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표 5-2-5〉 복지 욕구 영역별 사회인식에 따른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구분		생계유지 위기		신체건강 문제		감염병		정서적 문제		관계 단절		돌봄 방치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국가 신뢰도	신뢰하지 않는 편	6.65	26.22	6.09	29.82	6.69	33.75	5.91	26.76	6.09	24.06	6.93	33.38
	보통	6.85	***	6.33	***	6.79	***	6.05	***	6.22	***	7.08	***
	신뢰하는 편	7.41	***	6.87	***	7.49	***	6.66	***	6.80	***	7.71	***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공동체 이익 중요	7.33	19.51	6.54	8.22	7.37	23.31	6.32	4.45	6.45	7.09	7.69	29.5
	중간	6.67	***	6.17	***	6.67	***	6.01	*	6.12	***	6.93	***
	개인의 이익 중요	6.92	***	6.43	***	6.90	***	6.13	*	6.37	***	7.14	***
본배와 성장 신호도	본배 중요	7.52	52.8	6.64	15.67	7.40	37.46	6.43	13.62	6.68	21.4	7.61	35.58
	중간	6.57	***	6.11	***	6.60	***	5.93	***	6.04	4	6.87	***
	성장 중요	6.76	***	6.35	***	6.82	***	6.08	***	6.25	***	7.10	***
복지 급여 대상 범위	저소득층	7.19	38.49	6.41	7.41	7.08	39.75	6.19	3.71	6.40	7.06	7.55	71.22
	중간	6.35	***	6.10	***	6.33	***	5.94	*	6.04	***	6.49	***
	모든 국민	6.95	***	6.42	***	7.05	***	6.15	*	6.32	***	7.2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인식과 '생계유지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복지 개입 수용성)'와의 관계를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사회인식 관련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기초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먼저 모형 1에서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층과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경제활동상태와 돌봄 가구원 유무가 국가의 개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 비해 장년층과 중년층의 국가 개입 수용성이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 보통 또는 건강한 경우보다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비경제활동자에 비해 임시·일용(특고) 근로자인 경우, 돌봄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 돌봄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국가의 개입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인식 변수를 투입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층과 주관적 건강상태, 돌봄 가구원 여부가 여전히 국가의 개입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인식 변수(이념 성향, 국가 신뢰도, 공동체 중요도 인식, 분배 인식, 복지 대상 범위 인식)는 모두 개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국가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유의수준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제활동상태(임시·일용(특고))는 사회인식 변수를 투입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

사회인식 변수가 국가 개입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보수에 비해 진보 성향인 경우,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보통 또는 신뢰하는 편인 경우, 성장보다 분배를 선호하는 경우 국가 개입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과 공동체 중요도에서 보통으로 응

답한 경우는 개인 이익이 중요하다는 경우보다 국가 개입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선별복지(저소득층 집중)보다 보편복지(국민 전체)를 선호하는 경우 역시 국가의 개입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6〉 생계유지 위기에 대한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인식

구분		모형 1		모형 2	
		b	s.e	b	s.e
성별(ref. 여성)		-0.00109	0.07474	-0.10057	0.07394
연령층 (ref. 청년 19~34세)	장년(35~49세)	0.37901***	0.09499	0.32485***	0.09326
	중년(50~64세)	0.9029***	0.09320	0.69516***	0.09303
주관적 건강상태 (ref. 불건강)	보통	-0.51496***	0.11408	-0.44517***	0.11247
	건강	-0.36822**	0.12031	-0.44415***	0.11961
교육수준 (ref. 고졸 이하)	대졸	-0.00531	0.08564	-0.03976	0.08389
	대학원 졸	-0.03912	0.14892	-0.07148	0.14552
경제활동상태 (ref. 비경활)	상용	-0.07957	0.10875	-0.06394	0.10623
	임사일용(특고)	0.28919*	0.13212	0.21573	0.12914
	자영업자고용주(무급가족 실업)	-0.03194	0.15442	-0.03985	0.15078
소득계층(ref. 중위 60% 이상)		-0.04878	0.15252	-0.04367	0.14893
1인 가구 여부(ref. 2인 이상 가구)		0.00222	0.08019	0.02354	0.07855
돌봄 가구원 유무(ref. 없음)		0.04556	0.10545	0.08375	0.10313
이념 성향 (ref. 보수)		0.43295***	0.10056	0.3924***	0.09834
국가 신뢰도 (ref. 신뢰하지 않는 편)	중도			-0.11625	0.09769
	진보			0.25367*	0.10770
공동체 중요도 인식 (ref. 개인 이익)	보통			0.36459***	0.07994
	공동체 이익			0.76438***	0.10478
분배 인식 (ref. 성장)	보통			-0.16502*	0.08243
	공동체 이익			0.07956	0.10653
복지 대상 범위 인식 (ref. 저소득층)	보통			-0.00709	0.08796
	분배 선호			0.64122***	0.09687
복지 대상 범위 인식 (ref. 저소득층)	보통			-0.59286***	0.09783
	국민 전체			-0.16472*	0.08370
상수		6.73406	0.16652	6.71001	0.19502
N		4,000		4,000	
Adj R^2		0.0382		0.08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제3절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생각은 일곱 가지 문항(C19)을 통해 살펴봤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 ~ ‘매우 동의한다(10점)’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1) ‘국가 및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에 대해 전체 평균 7.53점, 2) ‘국가 및 지자체는 개인정보 활용에 사생활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진다’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7.64점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간다운 삶의 유지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사회권에 해당하는 의견과 개인정보 활용에 사생활을 보호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하는 의견 모두 동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복지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유일하게 6점대로 가장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긍정적 태도와는 별개로 개인에 대한 개입과 지원에는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나 개인의 생활에 이제 개입하는 정도가 저는 큰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나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섭이나,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도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A6

“몰라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A8

“좋다 생각해요. 저는 복지 사각지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뭐 그런 거 많이 볼 때마다 제 세금이 저런 데다 썼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 많이 내고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A3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굴하여 접근할 때는 다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사전 고지 없이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 오거나 전화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편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전, 미리 우편이나 메모 등으로 사전에 고지를 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기를 바랐다. 주민센터 혹은 구청의 공무원 대신, 통장이나, 동대표, 사회복지사 등 다소 친근감을 가질 만한 분들이 가정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거는 이제 뭐 일차로 그렇게 해보고 뭐 반대로 하거나 뭐 오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나 이제 조금 이제 직급을 낮추든지 해서 뭐 주민자치단체라든지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다시 또 2차, 3차로 할 수 있는 뭐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왜냐하면 도움 주겠다는데 뭐 안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개 중에 있어요, 있기는. 생각 자체가 또 틀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확률을 이제 줄여가는 거죠. 그래, 이제 뭐 그래, 주민자치단체 이런 데서 이제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뭐 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7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싫고 먼저 연락을 하든가 뭐 우편이나 뭐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든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어떤지 의견을 먼저 물어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일방적으로 그런 거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A4

“정보 수집.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 뭐 애가 어디 살고 뭐 이렇게 건보료를 체납 했거나 공과금이 미납되는 상황이면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갑자기 연락처 동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너 지금 공과금 미납된 거 같은데 힘드냐? 그러면 누가 날 감시하고 있냐? 차라리 뭔가 우편이든 메모를 붙이는 거죠.” 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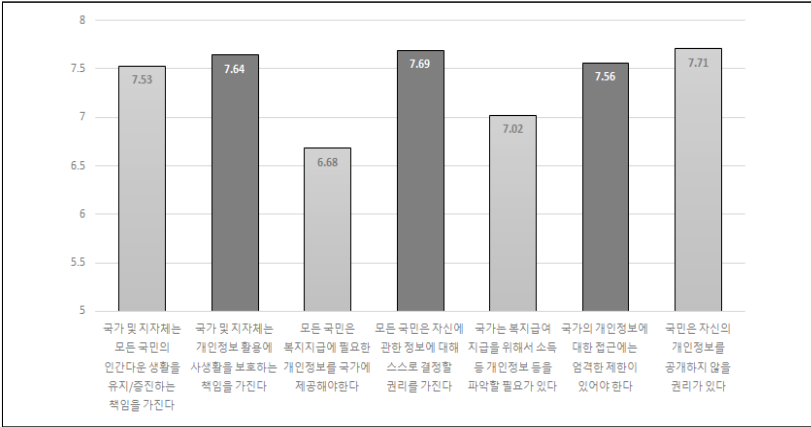
[그림 5-3-1]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문항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u>안전다운</u>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u>사생활</u> 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모든 국민은 복지(현금급여 또는 서비스) 지급에 필요한 <u>개인정보</u> 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모든 국민은 <u>자신에 관한 정보</u> 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를 <u>스스로 결정할 권리</u> 를 가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국가는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서 소득 등 <u>개인정보</u>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국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는 <u>엄격한 제한</u> 이 있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국민은 자신의 <u>개인정보</u> 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그림 5-3-2]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 주관적 건강상태, 학력, 1인 가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년, 건강하지 않은 편, 대학원 졸업,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이 있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중년 7.91점, 불건강 7.90점, 대학원 졸 7.81점, 2인 가구 이상 7.58점)이 가장 높은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의 책임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중년 8.13점, 불건강 7.84점, 대학원 졸 7.93점, 2인 가구 이상 7.68점)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2인 가구 이상일수록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할 책임과 그와 동시에 사생활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사회인식에 따라서는 국가 신뢰도,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분배와 성장, 복지급여 대상 범위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를 신뢰하는 편일수록, 공동체 이익이 중요할수록, 분배가 중요할수록, 저소득층

중심 복지를 선호할수록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높은 국가 신뢰, 7.93점, 공동체 이익 중요, 8.05점, 분배 중요, 8.12점, 저소득층 중심 복지 선호, 7.81점)이 가장 높은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의 책임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높은 국가 신뢰, 8.07점, 공동체 이익 중요, 8.15점, 분배 중요, 8.14점, 선별복지 선호, 7.92점)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1에 대한 인식

구분		1) 국가 및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국가 및 지자체는 개인정보 활용에 사생활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진다	
		평균	F값	평균	F값
전체		7.53		7.64	
성별	남	7.50	0.99	7.58	2.82
	여	7.56		7.69	
연령대	청년(19~34세)	7.13	53.29***	7.10	90.55***
	장년(35~49세)	7.44		7.55	
	중년(50~64세)	7.91		8.13	
주관적 건강상태	불건강	7.90	17.55***	7.84	7.19***
	보통	7.36		7.52	
	건강	7.61		7.71	
학력	고졸 이하	7.31	11.07***	7.39	13.71***
	대졸	7.59		7.71	
	대학원 졸	7.81		7.93	
경제활동 상태	상용	7.45	2.55*	7.58	1.89
	임시일용특수	7.70		7.73	
	고용자영자(무급)	7.70		7.87	
	비경활	7.47		7.60	
	실업	7.56		7.63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상	7.56	0.73	7.7	2.73
	중위소득 미만	7.51		7.59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28	11.87***	7.40	10.06**
	2인 가구 이상	7.58		7.68	
돌봄 가구원 유무	유	7.62	1.75	7.57	0.84
	무	7.51		7.65	

주: * p<0.05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표 5-3-2〉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1에 대한 인식

구분		1) 국가 및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국가 및 지자체는 개인정보 활용에 사생활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진다	
		평균	F값	평균	F값
전체		7.53		7.64	
국가 신뢰도	신뢰하지 않는 편	7.48	18.60***	7.57	21.51***
	보통	7.41		7.51	
	신뢰하는 편	7.93		8.07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공동체 이익 중요	8.05	30.20***	8.15	27.17***
	중간	7.34		7.49	
	개인의 이익 중요	7.53		7.59	
분배와 성장 선호도	분배 중요	8.12	73.68***	8.14	56.57***
	중간	7.13		7.27	
	성장 중요	7.53		7.66	
복지 급여 대상 범위	저소득층	7.81	84.65***	7.92	91.33***
	중간	6.84		6.91	
	전 국민	7.73		7.8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3) ‘모든 국민은 복지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6.68점, 4)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7.69점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보다 자신에 관한 정보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년,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 복지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중년 7.03점, 불건강 6.94점)이 높았고,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중년 8.09점, 불건강 7.96점)도 역시 높았다. 성별과 학력에 따라서는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7.81점)과 대학원 졸(7.94점)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5-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2에 대한 인식

(국민의 복지 지급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 결정과 정보 자기결정권)

구분		3) 모든 국민은 복지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를 가진다	
		평균	F값	평균	F값
전체		6.68		7.69	
성별	남	6.67	0.00	7.57	14.79***
	여	6.68		7.81	
연령대	청년(19~34세)	6.31	38.08***	7.24	66.56***
	장년(35~49세)	6.59		7.61	
	중년(50~64세)	7.03		8.09	
주관적 건강상태	불건강	6.94	7.56***	7.96	13.5***
	보통	6.56		7.53	
	건강	6.73		7.78	
학력	고졸 이하	6.63	0.83	7.47	10.78***
	대졸	6.68		7.75	
	대학원 졸	6.81		7.94	
경제활동 상태	상용	6.62	2.46*	7.64	2.34
	임시일용특수	6.86		7.84	
	고용자영자(무급)	6.90		7.86	
	비경활	6.60		7.56	
	실업	6.62		7.67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상	6.65	0.53	7.73	1.67
	중위소득 미만	6.7		7.65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6.57	1.79	7.53	4.64*
	2인 가구 이상	6.70		7.71	
돌봄 가구원 유무	유	6.87	6.32*	7.67	0.04
	무	6.64		7.69	

주: * p<0.05,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사회인식별로는 국가 신뢰도,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분배와 성장 선호도, 복지급여 대상 범위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인식 정도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를 신뢰하는 편,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모든 국민은 복지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높은 국가 신뢰 7.42점, 공동체 이익 중요 7.09점)이 높았고, 동시에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높은 국가 신뢰 8.06점, 공동체 이익 중요 8.04점) 역시 높았다. 다른 사회인식 항목에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래 <표 5-3-4>를 살펴보면 중간(중도)의 평균값으로 인한 집단 간 차이로 판단되어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5-3-4>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2에 대한 인식

(국민의 복지 지급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 결정과 정보 자기결정권)

구분		3) 모든 국민은 복지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평균	F값	평균	F값
전체		6.68		7.69	
국가 신뢰도	신뢰하지 않는 편	6.38	59.09***	7.71	20.49***
	보통	6.62		7.51	
	신뢰하는 편	7.42		8.06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공동체 이익 중요	7.09	17.06***	8.04	16.20***
	중간	6.50		7.53	
	개인의 이익 중요	6.69		7.71	
분배와 성장 선호도	분배 중요	6.83	15.10***	8.10	50.82***
	중간	6.42		7.31	
	성장 중요	6.81		7.77	
복지 급여 대상 범위	저소득층	6.83	24.82***	7.99	118.84***
	중간	6.26		6.89	
	전 국민	6.80		7.9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5) ‘국가는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 소득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에 대한 응답은 전체 평균 7.02점, 6) ‘국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전체 평균 7.56점, 7)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전체 평균 7.71점으로 보통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였다. 앞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국가가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파악의 필요보다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의 엄격성과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학력과 1인 가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인 가구 이상은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파악에 대한 동의 수준(7.06점), 국가의 개인정보 접근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7.61점),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동의 수준(7.74점)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 수준별 유의한 차이는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대학원 졸 7.84점)과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동의 수준(대학원 졸 8.06점)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에서 대학원 졸의 높은 동의 수준과 연결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인식에 따라서는 역시 모두(국가 신뢰도,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분배와 성장, 복지급여 대상 범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는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서 소득 등 개인정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국가를 신뢰하는 편(7.78점),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7.48점), 저소득층 중심 복지를 선호하는 경우(7.31점)에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3에 대한 인식

구분		5) 국가는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서 소득 등 개인정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6) 국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7)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전체		7.02		7.56		7.71	
성별	남	6.99	1.35	7.51	2.85	7.69	0.26
	여	7.06		7.62		7.72	
연령대	청년(19~34세)	6.65	55.39	7.10	71.95	7.34	39.06
	장년(35~49세)	6.89		7.45		7.67	
	중년(50~64세)	7.43		8.03		8.02	
주관적 건강상태	불건강	7.27	9.29	7.81	9.43	7.89	13.56
	보통	6.89		7.43		7.54	
	건강	7.10		7.65		7.86	
학력	고졸 이하	6.97	0.80	7.29	15.25***	7.52	10.41***
	대졸	7.03		7.65		7.74	
	대학원 졸	7.13		7.84		8.06	
경제활동 상태	상용	6.94	2.64*	7.58	0.35	7.75	0.73
	임시일용특수	7.22		7.53		7.69	
	고용자영자(무급)	7.16		7.65		7.72	
	비경활	7.00		7.53		7.60	
	실업	7.04		7.51		7.64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상	7.03	0.02	7.62	1.93	7.8	5.86*
	중위소득 미만	7.02		7.53		7.64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6.81	8.21**	7.29	12.64***	7.52	6.24*
	2인 가구 이상	7.06		7.61		7.74	
돌봄 가구원 유무	유	7.12	1.97	7.52	0.35	7.65	0.73
	무	7.00		7.57		7.72	

주: *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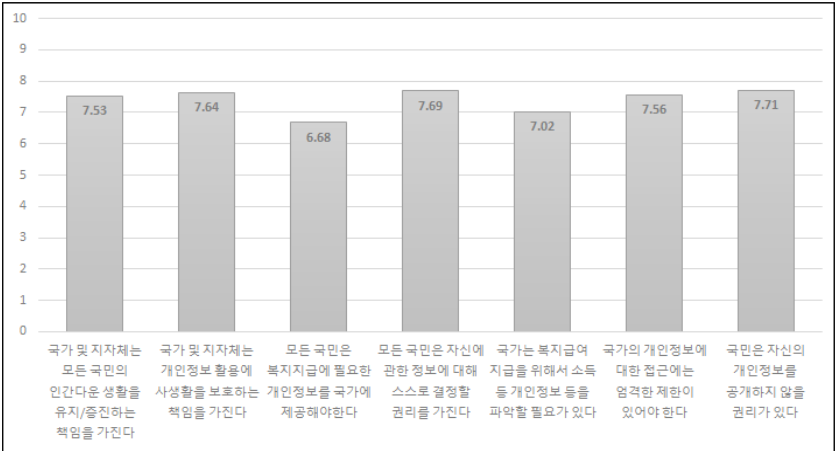
〈표 5-3-6〉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3에 대한 인식

구분		5) 국가는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서 소득 등 개인정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6) 국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7)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전체		7.02		7.56		7.71	
국가 신뢰도	신뢰하지 않는 편	6.72	70.34***	7.62	6.43**	7.82	10.87***
	보통	6.97		7.44		7.54	
	신뢰하는 편	7.78		7.74		7.88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공동체 이익 중요	7.48	21.18***	7.81	10.89***	7.89	10.37***
	중간	6.88		7.40		7.54	
	개인의 이익 중요	6.99		7.64		7.81	
분배와 성장 선호도	분배 중요	7.19	16.10***	7.91	26.14***	8.05	32.49***
	중간	6.78		7.29		7.40	
	성장 중요	7.14		7.60		7.78	
복지 급여 대상 범위	저소득층	7.31	44.21***	7.77	68.41***	7.93	84.09***
	중간	6.53		6.91		7.01	
	전 국민	7.09		7.79		7.95	

주: * p<0.05,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그림 5-3-3〕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은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였다. 우선,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들은 국가가 일정 기준 등을 세워, 모든 정보가 아닌 일부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하고, 알고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려주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았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였다. 물론, 복지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정보 유출의 위험은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게 참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 비슷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참 걱정도 많이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조건을 걸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조건을 1, 2, 3, 4 뭐 이렇게 순위대로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일차적으로 이 사람 병원을 많이 다녔다. 이러면 조건을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A7

“개인 인권이랑 국가 개입 정도가 이렇게 충돌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건데, 저희는 만들어 가는 시점이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사례를 좀 보면서 취할 거 취하고 아니면 적당 선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A10

“근데 그거를 인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가 사실 맞기는 한데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근데

국가에서 그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고 그냥 진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A9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은 복지제도의 자격요건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했음을 언급한 것이다.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범위를 좀 극빈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약간 넓혀줄 필요는 있어요.” A5

“체감 안 되죠. 너무 작으니까. 더 내려가야죠. 지역. 뭐 집만 달랑 하나 있는 사람하고 집 두 채, 뭐 아니면 다른 또 수입이 있는 사람하고 차별을 뒤편이죠. 집만 달랑 하나 있고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이런 사람은 그거에 좀 할인율을, 건강보험료 할인율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7

“근데 건강보험이나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항상. 나는 병원에서 도움도 못 받는데 너무 건강검진 너무 진짜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 번 전화를 한 적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 너무 많아요. 내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심해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뭔가 또 새로 이걸 한 대요. 그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은 집값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11월에 다시 또 그거 해서 산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내고 있는 거죠.” A11

“근데 그 80만 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다른 알바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한 달에 50만 원인가 이상 벌면 그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 주말 동안 이렇게 해서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게 저처럼 이렇게 바로 취업이 되지 않으면 되게 좀 곤란하거든요. 당장 80만 원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다가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지?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완화되면 약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좋았지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으면.” A9

복지제도 신청 탈락자에게, 탈락 이유를 알려주어, 다음에 다시 신청할 때 이를 대비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보았다.

“뭔가 저도 도움이 돼서 어머니 이런 거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냥 안 된다는 통보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됐는지라도, 뭐 제비뽑기로 안 된 건지 네가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됐는지. 그러면 뭔가 그걸 보완하잖아요. 다시 신청할 텐데. 그래서 좀 그런 거라도 좀. 뭔가 안 됐다면 무슨 사연 때문에 안 됐는지라도 알려줘야 그래야 대화가 통하는 대상자라면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하고 수긍하고 갈 텐데.” A2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변화한 복지국가 환경에서 예리하게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복지국가 역할 범위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 State)’의 문제로 설정했다.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지국가의 확대와 축소의 과정에서 모두 대두될 수 있으며, 앞으로 복지국가 역할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복지국가’는 최근 복지국가 환경변화에 따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이다. 위험 예측, 부정수급의 발굴, 비대면의 서비스 신청 및 제공 등이 실시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다. 또한 현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위기관리 및 발굴 시스템의 발전, 즉 디지털 복지국가의 등장은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까지도 빠른 속도로 포착하기 시작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문법과 제도적 환경 안에서는 포착되지도 않고 정의되지도 않았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 디지털 복지국가의 등장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와 관련한 논의들은 기술의 쓰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위험과 한계를 줄이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고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디지털의 장점은 활용하되 위험과 한계를 줄이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복지국가 환경에서 복지와 관

련된 복지국가 역할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 State)의 문제로 설정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가 활용한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연구진 회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양적 조사 수행과 심층 인터뷰 등이다.

2.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Fitzpatrick(2000)은 Titmuss의 복지의 분업 구조들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권이 다뤄지는 방식에 주목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권에 대한 논의가 간과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Titmuss가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지적했다면 Fitzpatrick은 디지털 공간에서 행해지는 차별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서구에서는 복지의 디지털화가 복지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Alston, 2019).¹³⁾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화가 복지국가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예: van Zoonen, 2020; Collington, 2022). 이를테면 복지국가의 축소/확대, 공공부문 역량의 강화/약화라든가 투명성과 관련된 제도적 공백, 시민참여의 부재를 들 수 있다.

Alston(2019)의 유럽연합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를 “사회보호와 사회부조 제도가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로 더 자주 추동되면서, 자동화, 예측, 선별, 감시, 추적, 표적, 처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로 설명한다. 디지털 복지국가는 세 가지 요소로 확인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13) 동 보고서(Alston, 2019, p.23)에서는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다양한 발현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와 분석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연구는 프라이버시권, 차별 금지, 공정한 재판, 표현과 정보의 자유 같은 전통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디지털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포착한 연구는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보의 방대한 집적과 이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전제로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정보와 기술이 사회보호, 사회부조 등 전통적 사회정책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사회정책 영역에서 디지털 정보와 기술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효과, 이를테면 자동화, 예측, 감시, 처벌 등을 포괄한다. 한편, 디지털 복지국가는 차별, 배제, 불평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이슈도 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윤리적 쟁점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프라이버시, 둘째, 정확성, 셋째, 데이터 소유권과 정보 처분권, 넷째, 접근성, 다섯째, 디지털 자료 집적 및 처리 과정에 관한 민주주의 문제, 여섯째, 디지털 정보 활용에 근거한 개입의 문제다. 이 대목에서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Melchiori et al.(2023)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디지털 복지국가와 관련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디지털 복지가 추동하는 변화를 배제와 불평등 추동, 시민권의 의미 변화, 현장 관료의 역할 변화, 불투명성의 문제 심화, 시민 대상 감시의 추동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Melchiori et al.(2023) 역시 디지털 복지에 대한 체계적 고찰의 대상이 된 논문 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전의 아날로그 방식의 서비스로 돌아가자는 정책 제언을 낸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Alston(2019)의 입장도 유사하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그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많은 혜택을 촉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적절한 재정 정책과 인센티브, 규제 이니셔티브,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진보적인 디지털 복지국가를 설계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혜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p.12). 복지국가는 디지털화가 동반할 수 있는 효율성,

투명성, 과학성, 중립성, 효과성 등의 장점을 살리되, 여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평등, 사생활 침해, 배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이 사회적 논쟁을 크게 불러일으킨 두 가지 해외 사례를 살펴봤다. 덴마크 Gladsaxe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취약 아동을 포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모델을 발전시켰다. 이 모델의 목적은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아동이 실제 특별한 위험에 직면하기 이전에 해당 아동을 포착해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지역 정부는 정보보호법에서 해당 사업을 예외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으며(Jørgensen, 2021), Gladsaxe 지역의 사업은 2018년 말에 중단됐다. 모델이 잦은 오류를 낸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오류의 주된 이유는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였다. 모델 예측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117건에 불과했다.

네덜란드의 시스템 위험도 표시(Systeem Risico Indicatie, 이하 SyRI) 시스템은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 제도 분야에서 급여 오류, 부정수급, 세금 미납, 노동법 미준수 등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만든 법적 수단이다(Appelman et al., 2021).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데이터는 보건, 재정, 교육, 재정 지급, 고용 등 방대한 범위를 포괄한다. 특정 사례에 대한 '위험 보고서'가 제출되면, 해당 개인은 "사기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Appelman et al., 2021, p.263)된다. 이러한 자동화된 분석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이다. 이 시스템이 논란이 된 지점 가운데 하나는 SyRI의 집행 과정에서 특정 지역,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주민이 거주하는 '문제'지역의 사람들을 분석하는 데만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Appelman et al., 2021). Appelman et al.(2021)이 헤이그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판결에서 주목한 부분은 세 가지로 풀이된다. 세 가지는 투명성, 제도에 내재된 차별적 요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였다. 첫째, 투명성(transparency)은 SyRI 판결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다. SyRI의 시스템 자체가 법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즉, 위험 모델과 지표, 임계값, 데이터 유형 및 데이터 유출의 당사자조차도 공개되지 않았다. 둘째, SyRI의 불투명성은 시스템에 내재한 차별적인 성향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도 중요한 의제였다. SyRI가 이른바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이 거주하는 ‘문제 지역’에서 집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셋째, 안전조치(safeguard)도 법원의 판단의 주요 요소였다.

헤이그 법원은 SyRI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스템의 목적을 한정하고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럽인권협약 8항 2조를 저촉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¹⁴⁾

3.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동향

정부는 최근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추진하여 정부24, 복지포, 국민건강보험 등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동 웹사이트의 사용성을 국민평가단이 평

14) 유럽인권협약 8항 1조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권리를 전제한 뒤, 2조에서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적용 예외를 제시했는데 이를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안녕, 무질서 또는 범죄의 예방, 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법률에 따르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 국민평가단의 도입은 시민참여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의 통로는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복지라는 점에서 국민의 참여할 권리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위원회는 2023년 9월 4일 AI가 “단전·단수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 사각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식 등을 확인하는 사업(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인공지능 AI 복지사 사업, 복지부), AI가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분석하는 사업 등”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기술적, 업무적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b).

이렇듯, 한국 사회는 빠른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복지국가로서 한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12월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을 구축했다. ①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 대상자(2개월 주기, 고위험군 약 20만 명(상위 4%))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②위기 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2020.5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위기징후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 정보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39종의 정보였으며 총건수는 회차별 약

500만 명 수준이 되도록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위기 정보는 34종에서 39종(2022.11)으로 늘어났고, 2023년 12월부터는 44종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3a, 2023. 4. 24. 보도자료). 복지 등기 시범사업 확대, 민간 위기가구 발굴 업무 대상자 교육 등 민관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도 추진되었다. 경찰·소방 협력을 통한 비상 개문 지침을 마련(2023.1)하고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사업은 76종에서 80종으로 확대(2023.2)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덕택으로 2020년 이전에는 한 가구 내에서 가구원별로 급여, 서비스 대상이 다를 경우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2020년 1월 이후에는 모든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신청, 조사,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한은희, 2023).

국가 입장에서는 지자체 복지업무의 효율화, 복지재정의 효율화(중복 누수, 부적정 수급 방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을 겨룰 수 있게 된 것이다(한은희, 2023).

이 시스템의 한계와 쟁점도 분명하다(한은희, 2023). 연계 정보 기반 자격판정의 한계다. 연계 정보들은 사회보장 급여의 자격판정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므로 가구나 가족의 개념이 제도마다 다르고, 소득 또한 단일한 정보가 아니다. 이를테면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과 사회보험료 계산을 위한 소득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다. 연계되는 데이터에는 시간차(gap) 이슈도 있다. 국세청 자료는 지난해 또는 2년 전 소득자료라는 점에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판정과 일선 공무원의 직권 판정은 다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 외에도 복지의 디지털화는 “일선 관료의 사회복지 실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김수영, 김이배, 2014). 이 견해에 따르면 정보화를 통해 일선 사회복지 관료들의 업무 통일성과 신속성은 향상

되었으나 데이터가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결정하게끔 함으로써 자율성과 재량권이 축소되었으며, 빨라진 정보처리 속도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리게 만드나. Devlieghere, Gillingham과 Roose(2022)는 이를 데이터주의(dataism)와 관계주의(relationshipism)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한 바 있다. 데이터주의란 데이터가 시민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다는 데이터 논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관계주의란 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시민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Pedersen, 2019). 복지의 디지털화는 대상자의 소득자산 정보를 이전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급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더불어, 복지의 디지털화는 사회복지 일선 관료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 바 있다. 다뤄야 하는 정보의 민감성이라든가, 현장 중심의 업무가 전산 중심의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야기된 결과이다. 김수영과 김이배(2014)는 주민과의 면대면 상호작용 속에서 성찰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받는 사회복지 일선 관료의 역할이 디지털 환경하에서 그 역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보았다.

그 외에도 복지의 디지털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 위험모델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1) 편견과 차별을 증폭시킬 위험, 2)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인적 및 관계적 요인을 악화시킬 위험, 3) 낮은 품질의 데이터 이슈가 있을 수 있음이 논의된 바 있으며(Rosholm, Bodilsen, Villumsen, 2021), Salganic(2018)은 한 가지 목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 윤리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래 2020년 6월과 12월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2023년에는 행정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을 제고하고 실질적 동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서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봤다.

정부는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사각지대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하면서,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행안부, 통신사 등이 보유한 연락처와 세부조사 연계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2023.3)했다.¹⁵⁾ 또한 지침을 통해 긴급 시, 경찰 및 소방의 협조를 통해서 비상시 위기가구의 ‘개문’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2023.1)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3년 9월 19일에는 다음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보건복지부, 2023b, 2023. 9. 19. 보도자료). 첫째, 제7조의 2(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를 신설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그간 수급자격 조사 시 수기로 확인해 왔던 진폐재해위로금, 석면 피해자 요양 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하에서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주요

15) 2014년 12월 제정되어 2015년 7월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은 2023년 8월 기준 스물세 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는 동의의 법적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부터 실질적 동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국제법적 동향에 이르기까지 살피고 다뤄야 할 범위와 수준이 넓고 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2023년 3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내용은 여러 차원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이 연구와 관계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 요건 정비(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신설(제37조의 2)이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주체는 가공되거나 자동 처리되어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동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거부, 설명의 요구 등을 명시한 제37조의 2항의 신설은 의미가 있다.

향후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제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제도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은 불가피하게 많은 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데이터의 양이 적시 개입과 지원의 충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적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비수급 논의의 확장

4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사회권(social rights) 논의를 확장하고자 했다. 즉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의 영향 요인을 비수급(non-take-up)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자발적 비수급(voluntary non-take-up) 또는 의도적 비요청(non-demand)에 초점을 두면 비수

급의 문제는 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 잠재적 수급자의 결핍, 복잡하고 부적절한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를 넘어 잠재적 수급자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간의 '사회적 관계'의 문제일 수 있으며, 국가-시민 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정치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Warin, 2014, 2018a, 2018b).

복지국가를 통해 충분한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복지국가가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제공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면 사회정책의 목적을 상실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효과가 낮아져 결국 복지국가 역량의 약화로 이어진다. 자발적, 비자발적 이유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재정이 절감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Dubois et al., 2015; Hernanz et al., 2004). 복지국가의 사회권 논의는 복지국가가 제도와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Warin(2014)은 자발적 비수급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 시민권의 맥락에서 비수급을 바라보았다. 그에 따르면 결국 시민과 국가(제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자발적) 급여 비수급 결정은 거절이나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고, 무관심의 적극적 표현일 수 있으며, 동시에 고립의 징후일 수 있다(Warin, 2014). 비요청은 결핍, 배제, 고립을 경험하는 시민이 아닌, 사회정책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급여의 내용과 절차, 규범에 내재한 가치에 대한 적극적 거절, 거부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비수급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비수급의 주체 및 원인에 대한 논의를 시민과 국가(제도)와의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재설정하고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비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역시 접근성 논의를 넘어선 확장된 관점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탐색적인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의 핵심 종속변수는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각각에 대한 “국가 도움 요청 의사”이다. Kerr의 비수급 결정 모형, van Oorschot의 통합적·동태적 모형, 합리적 선택 이론에 기반한 비용-편익 분석 모형, 인지적 제약과 행태적 제약을 고려한 행동경제학적 모형, 자발적 비수급·비신청에 대한 Warin의 논의 등과 비수급 관련 실증 연구들을 통해 포괄적이고 탐색적인 수준의 분석 모형을 구성했다. 또한 생활비 부족, 목돈 필요, 정서적 문제 세 영역에서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세부 집단별 분석, 매개 효과 분석 등을 실시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국가 도움 요청 확률이 낮았고, 특히 저소득층, 40~50대 연령 집단에서 성별 차이가 컸다.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집단이 오히려 도움 요청을 원하지 않는 자발적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일정 부분 확인됐다. 복지 인식 및 태도 관련 변수들은 도움 요청 의사와 대체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에서 복지 인식 및 태도 관련 변수들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했다. 더불어, 복지 수급과 관련된 긍정적 경험, 사회적 계층 및 지위의 하향 인식 등이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익명성, 정치이념 등은 일부 하위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공식적 자원의 존재는 도움 요청 상황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보였는데, 일상적인 생활비 부족 같은 상황에서는 비공식적 자원의 존재가 국가 도움 요

청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목돈 필요, 정서적 도움 같은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대한 신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수준은 대체로 매우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국가에 대한 신뢰와 도움 요청 의사와의 관계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배제되거나 고립된 집단을 파악하여 공적인 제도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에서 개입 및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보고서에서 논의 및 분석한 결과는 이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에서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을 기술통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했다. 첫 번째는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다음의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5점)’로 응답할 수 있도록 보기를 구성하고, ‘다음의 정보’를 경제상황,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로 구체화하여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OO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문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 ~ ‘매우 동의한다(10점)’로 응답할 수 있도록 보기를 구성하고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건강정보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했다.

분석 결과, 취약한 집단일수록, 구체적으로는 해당 영역의 욕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집단일수록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혹은 개입의 가능성이 큰 집단일수록, 본인의 정보공개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인식에 따라서는 공동체와 개인 중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분배와 성장 중 분배가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복지급여 대상 범위가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두 번째 질문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OO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봤다. ‘OO정보’로는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건강정보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10점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정보(6.66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부채정보(6.28점), 소득정보(6.12점), 재산정보(6.11점) 순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돌봄 가구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년, 임신/일용/특수직, 돌봄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정보, 부채정보, 건강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는 것에 동의 수준이 높았다. 사회인식에 따라서는 국가 신뢰도, 공동체와 개인의 중요도, 분배와 성장, 복지급여 대상 범위, 이념적 성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를 신뢰하는 편, 공동체 이익 중요, 분배 중요, 저소득층 중심 복지 선호의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도움 요청 여부와 국가 복지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 정도’

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3.6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3점) 이상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국가는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복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2.42점(보통 3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의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경험이었었던 경우, 본인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 사적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 비해 국가의 복지제공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가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어떠한가? 복지 욕구 영역을 신체건강 문제, 정서적 문제, 생계유지의 위기, 관계의 단절, 감염병, 돌봄 방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가의 복지개입 수용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돌봄 부재로 7.14점이었으며, 감염병/생계유지 위기(6.88점), 신체건강 문제(6.34점), 관계 단절(6.28점), 정서적 문제(6.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복지제공 동의 정도는 앞에서 살펴본 도움 필요 경험 여부에 따른 동의 정도에서도 낮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복지제공, 즉 국가 개입의 수용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팬데믹의 여파를 고려하면 감염병보다 돌봄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돌봄 공백이 낳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가 넓은 것으로 추정된다.

프라이버시권과 사회권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는 인간다운 삶의 유지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사회권에 해당하는 의견과 개인정보 활용에 사생활을 보호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하는 의견 모두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국민은 복지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유일하게 6점대로 가장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1. 사회권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 모색

제2장에서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환경의 변화,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 및 관련한 논점을 살펴보고, 디지털 복지국가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핵심적인 논점은 상충되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로 요약된다. 즉,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 데이터의 집적, 공유, 연계, 저장, 활용 및 이에 근거한 개입을 통한 사회권 보호라는 하나의 가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 혹은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의 보호라는 또 다른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뤄내느냐의 문제다. 물론, 디지털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심화, 편견의 강화 등의 문제도 논점으로 부각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희소하다. 아직까지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문제를 부각하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다. 물론, 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혹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이뤄졌다(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17, 경재웅, 2023; 정원준, 2023). 그러나 국가의 사회권 보호와 배치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혹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논점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희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의할 대목 또한 짚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 복지국가에 대한 해외의 연구 혹은 논의를 국내에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 디지털 복지국가 환경에서 핵심으로 간주되는 개인인증 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지문 및 얼굴 정보가 포함된 전 국민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됐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번 발급되면 변경이 어려운 일률적인 국민식별번호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성준호, 2016). 한국은 다양한 공공기관 사이에서 데이터를 연계 구축하기에 유리한 상황에 있으며,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됐다. 그러나 이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개인인증과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Callander(2019)는 영국의 개인정보 관련 단체인 Privacy International 홈페이지에 쓴 글에서 다른 복지국가의 동향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국가 정체성 시스템(그 자체로 권리문제를 제기함)을 사회 보호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것이다... 생체 데이터는 정의상 특정인과 그 사람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심각하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특히 민감하다”(Callander, 2019). 즉, 해외의 우려가 한국에서는 이미 도래한 현실

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환경이 크게 다르다.

둘째, 디지털 복지국가와 관련한 해외 연구나 분석에서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집적 및 활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는 한국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민간이 집적한 의료보험 등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오작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Eubanks, 2018). Alston(2019) 역시 복지국가의 공공기관들이 복지 수급자들을 선별하고 감시하는 데 더 자주 민간기업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환경이 다르다. 물론, 한국에서도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 목적 활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셋째, 해외에서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부정수급 및 과오수급을 포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Alston(2019)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효율화, 비용 절감, 부정수급 적발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왔다. 서구의 복지국가가 성숙기를 지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보편성을 획득한 이후에, 과오수급 및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여전히 보편적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급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으로부터 배제되는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려는 동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

ChatGPT 혹은 Bard로 체감되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다 보니, 관련한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장하석, 2023.2.14.; Narayan, Hu, Coulter and Mukherjee, 2023.4.5.) 영국 케임브리지대 물리학 교수인 장하석

(2023.2.14.)은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 속도를 조망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이 커지기 전에 고기능 챗봇의 개발, 판매,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잘 모르는 이야기다. 여러 다른 분야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적합한 규제가 당연시되고 있다”(장하석, 2023.2.14.). 물론, 오픈에이아이에 대한 우려의 지점이 현재의 디지털 복지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 같지는 않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라는 강도 높은 지진이 복지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뒤흔들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 발전이 복지국가의 얼굴을 인간화할지, 아니면 인간을 감시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빅 브라더’로 등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와 인간의 몫으로 남았다.

2. 디지털 자료 집적 및 처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권리 보장

앞에서 살펴봤듯 2023년 8월 28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추진하여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동 웹사이트 사용성을 국민평가단이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 국민평가단의 도입은 시민참여 통로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의 통로 보장은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복지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참여

할 권리의 보장, 즉 민주적 절차 마련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행정데이터를 연계하는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된다. 이 사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ameron et al., 2013). 2014년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과 경제사회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는 「과학에 대한 대중의 태도」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행정데이터 연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교육한 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데이터 연결과 관련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조사했다(Castell et al., 2014). 이 워크숍은 영국 총 7개의 지역에서 2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체 그룹 토론, 소그룹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됐다. 각 지역의 참여자들은 성,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18~20명으로 구성됐다. 또,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지닌 참여자를 포함하기 위해 3개의 스크리닝 문항을 활용했다. 워크숍 과정에는 교육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 과정이 포함됐다. 이처럼 2주의 간격을 두고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 워크숍 방식은 시민 참가자들에게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영국은 일반 시민들에게 행정데이터 연계에 대해 교육을 통해 정보를 알려주고 프라이버시 딜레마 문제를 시민들이 숙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김재연(2023)은 시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돕고 혜택을 더 쉽게 누릴도록 돕는 디지털 도구를 만드는 시빅 테크(Sahuguet, Krauss,

Palacios, and Sangokoya, 2014)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는 2011년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청(Government Digital Service, GDS)과 같이 시빅 테크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디지털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를 위한 위원회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IT와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시민권, 법적 적절성, 개인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윤리와 관련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법안 및 동의안의 처리, 그리고 디지털 정부와 IT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The Digitization and IT Committee를 두고 있다(The Danish Parliament, 2023).

더불어 이 연구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디지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국민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정도와 국가의 지원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설계와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디지털 환경 안전 강화 및 지속 관리

OECD(2019)는 국가별 다차원의 디지털 관련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률(99.5%)과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경험률(6%)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높은 기회, 낮은 위험을 의미하는 1사분면에 자리 잡고 있지만 개인정보 차원에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도 명백하다.

국내 기업을 통해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수는 2021년

4,650만 건, 2022년 1,034만 건,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822만 건이며,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 동안 국내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수는 누적 6,505만 2천 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년간 기업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306건 중 61%가 개인정보 유출 건이다(임지선, 2023). 물론 공공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에 비하면 적다.

그러나 2019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지자체는 30곳이었으며, 2021년에는 총 50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권고 50건, 과태료 9,360만 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디지털 전환의 점증하는 추세와 가속화 현상을 염두에 두면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경제사회지수(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 같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국내외의 국가 단위의 지표들은 디지털 안전과 관련된 지표를 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 국내의 디지털 복지 전환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언급한 시민참여라든가 정보 거버넌스와 함께 디지털 환경 안전의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지수의 개발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위기관리를 위한 최적의 정보 수 및 종류 모색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보는 총 44종으로 그 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현재는 시스템 발전기에 있어 과도한 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취

약 집단의 정보 보호와 최일선 사회복지 관료의 업무경감을 위해 최적의 정보 종류와 수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에 대한 지적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관련 선행 연구(예: 김수영, 2016; 김태완, 한수진, 이주미, 2022) 및 심층 인터뷰, 2023년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임덕영, 남운재, 2023)에서도 지속적이며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네덜란드의 시민권 보호 플랫폼(Platform Bescherming Burgerrechten)의 관계자는 설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은 권력에 기반한 지식(knowledge based power)의 속성을 떨 수밖에 없고, 권력은 그 자체로 스스로 부패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세정, 곽윤경, 2023).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Naja Holten Møller 교수는 데이터의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하며, 데이터를 모으는 비전과 목적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세정, 곽윤경, 2023).

최근에는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이 요약 분석해 일정을 조율하고 식당 등을 예약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업의 발표가 기사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정인선, 2023). 이는 데이터 활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방식이 공공 영역에도 확산될 경우 취약 집단의 정보 유출은 낙인의 문제, 차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2023년 9월 13일 수행한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임덕영, 남운재, 2023)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보고됐다. 사대보험 체납으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발굴되어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당사자가 아닌 가구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체납 당사자가 항의한 사례라든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제3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문제, 추심을 피해 거주지를 옮

겨 다니던 자신을 “도망자”로 표현하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자 대상자가 발굴 고지와 도움 제공을 원치 않는 사례 등이 공유됐다. 시민단체에서도 “폭력적인 채권추심, 가족과의 불화, 낙인 등 주소 이전을 꺼리는 상황은 방치한 채 정부의 계획대로 실거주 사실에 대한 정보를 무작정 통합하면 빈곤층은 더 까다롭게 자신의 위치를 숨길 수밖에 없다”(참여연대, 2022)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해당 포럼에서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사회복지직에게 필요한 역량 개발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임덕영, 남운재, 2023).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갔던 과거와 달리, 정보기술 활용 중심의 업무는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업무가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결국 현장에서 최종 확인되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즉, 정보기술의 발달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 포럼에서는 예전에는 위기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나 사회 변화로 인해 공공부조를 통한 보호뿐 아니라 상담, 치료까지 요구되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직 내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임덕영, 남운재, 2023). 이러한 사례는 기술 차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복지와 실천 현장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적정 정보의 양과 데이터 품질의 개선이 개선해야 할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정보의 수와 정보 부족의 문제는 지자체 업무 과중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김재연(2023)은 데이터는 추정값과 편향값, 그리고 노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데이터로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풀어야 할 문제, 풀지 말아야 할 문제가 구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과 선택권, 자동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점은 정책적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련된 법적 토대가 바로 정보 주체의 실질적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정보 주체와 사회복지 인력 모두를 위해 위기 관리를 위한 최적의 효율적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다양한 위기의 발생과정에 대한 고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시급한 정책과제에 당면하여 정부는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 방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많은 정보를 연결하고 위기의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왜 극단적 선택의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지, 사회와 닿아 있도록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대응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일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무너져 내린 일상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외로움이나 은둔, 고립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복지국가 관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넘어 2장에서 살펴본 포괄적 관점에서의 비수급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앵거스 디턴과 앤 케이스(2021)는 노조나 클럽, 교회를 예로 들면서 이

러한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의 발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인터넷과 SNS가 네트워크 외부성의 발현을 대체하거나 보완해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앵거스 디턴·앤 케이스, 2021).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대체로 높게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취약한 집단일수록, 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동의 수준과 개입의 수용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도움 요청 의사와 관계가 있는 요인을 실증하기도 했다. 자격 박탈(social disqualification)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남성, 저소득층, 40~50대, 사회경제적 계층이 하향 이동한 경우, 또 국가 신뢰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4장과 5장의 국가 신뢰도에 따른 분석 결과가 일부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에서 신뢰하는 대상으로서의 국가와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국가를 다소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Orbach, 2006) 복지 수혜자들은 비현금 혜택을 현금급여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제공하는 복지의 종류도 현금급여와 바우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개인정보보호연차보고서.
- 경재용. (2023).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검토. 연세법학. 41, 539-568.
- 김기태, 정세정, 김현경, 강예은, 최권호, 최한수, 남재욱, 조자영, 김윤민.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영, 김이배. (2014).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의 실천에 미친 영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91-126.
- 김수영. (2016). 사회복지정보화의 윤리적 쟁점-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1), 193-224.
- 김수영, 김수완. (2022). 데이터 복지국가의 도래와 쟁점: 국가, 시민, 시장의 관계 지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91-118.
- 김수형. (2006).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재연. (2023).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차별을 만드는 데이터, 기회를 만드는 데이터-. 서울: 세종서적.
- 김태완, 한수진, 이주미. (202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3).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서비스 온라인 창구 더 쉽고 편리해진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 8. 28).
<https://dpg.go.kr/DPG/contents/DPG02020000.do?schM=view&id=20230829093919378809&schBcid=press>에서 2023. 10. 1. 인출함.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a).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2023. 4. 14.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b).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23. 9. 4.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3c).

<https://www.dpg.go.kr/DPG/main/index.do>에서 2023. 11. 9 인출.

로저 백하우스. (2005).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 김현구 옮김. 서울: 시아출판사.

법제처. (2023a).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9295,20230328\)](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9295,20230328))에서 2023. 8. 14. 인출.

법제처. (2023b).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2023.11. 9. 인출.

법제처. (2023c).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에서 2023. 10. 1. 인출.

보건복지부. (2014). 20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안내. 범정부 복지정보통합 시스템.

보건복지부. (2023a).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4. 24.).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7778&pg=&pp=&device=mob&search_txt=&topic=&type=J&depth1=J0000&depth2=&code=J0100에서 2023. 10. 1. 인출.

보건복지부. (2023b).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9.) - 위기가구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 요청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9. 19.).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2865>에서 2023. 10. 1. 인출.

사회보장정보원(2023).

<http://www.ssis.or.kr/lay1/S1T749C765/contents.do>에서 2023. 11. 9. 인출.

성준호. (2016).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한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 각국의 개인식별번호제도 및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공공사회연구, 6(2), 208-246.

아론바스타니. (2020).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 김민수·윤종은 옮김. 서울: 황소걸음.

- 오병일. (2019).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51), 20-27.
- 앵거스 디턴, 앤 케이스. (2021). 이진원 옮김.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서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 임덕영, 남윤재. (2023).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지선. (2023). [단독] 국내 기업 ‘고객정보’ 지난 3년간 6500만건 줄줄 뺐다. 2023. 10. 4.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0781.html에서 2023. 10. 5. 접속하여 인출.
- 장하석. (2023.2.14.)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글을 쓴다면.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0401#home>에서 2023. 5.20. 인출.
- 정세정, 박윤경. (2023). 복지국가 재편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출장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news/abroad/view?page=4&seq=55476>.
- 정세정, 김기태. (2022).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보건복지포럼 4월호. pp.77-89.
- 정원준. (2023). 개인정보 동의제도 실질화 방안 연구. 고려법학. 108. 293-330.
- 정인선. (2023). [단독] AI로 음성통화 엿듣겠다는 SKT…법적으로 괜찮나. 한겨레. 2023. 10. 5.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10885.html>에서 2023. 10. 6. 인출.
- 정충식. (2021). 우리나라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 30년의 변화. 지능정보기술 동향. 3-30.
- 참여연대. (2022). [공동성명]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 부쳐.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21205>에서 2023. 8. 14. 인출.
- 최대수. (2023). 한국은행 “전체 가계대출자 평균 DSR 40.3% 추정”…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여 원. 2023. 7. 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3351>에서 2023. 7. 3. 인출.

통계청. (2021). 1인가구비율.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5>에서 2023. 6. 18. 인출.

통계청. (2022). 합계출산율.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61>에서 2023. 6. 18.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한은희. (2023). 디지털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의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복지국가 재구조화 포럼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2023). 정부 24 회원 2천만명 돌파 눈앞, 국민 3명 중 1명이 가능해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 4. 1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100046에서 2023. 5. 20. 인출.

헨리 조지. (2021). 사회문제의 경제학. 전강수 옮김. 경기: 돌베개.

Alston, P. (2019). Digital Welfare Stat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https://undocs.org/A/74/493>에서 2023. 10. 9. 인출.

Alston, P., & van Veen, C. (2019). How Britain's welfare state has been taken over by shadowy tech consultants, The Guardian, 2019.6.27.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jun/27/britain-welfare-state-shadowy-tech-consultants-universal-credit>에서 2023. 10. 9. 인출.

Andersen, R., & Newman, J. F. (1973).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 Health and Society, 51, 95-124.
- Appelman, N., Fathaigh, R. O., & van Hoboken, J. (2021). Social welfare, risk profiling and fundamental rights: The case of SyRI in the Netherlands. *J. Intell. Prop. Info. Tech. & Elec. Com. L.*, 12, 257-271.
- Baicker, K., Congdon, W. J., & Mullainathan, S. (2012).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ake-up: Lessons from behavioral economics. *The Milbank Quarterly*, 90(1), 107-13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Suhrkamp.
- Bekker, S. (2021). Fundamental rights in digital welfare states: The case of SyRI in the Netherlands.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019: Yearbooks in International Law: History, Function and Future*, 289-307.
- Bertrand, M., Luttmer, E. F. P., & Mullainathan, S. (2000). Network effects and welfare cultur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3), 1019-1055.
- Bruckmeier, K., & Wiemers, J. (2012). A new targeting: A new take-up? *Empirical Economics*. 43(2), 565-580.
- Callander, A. (2019). Privacy, a precondition for social protection. *privacy international*. <https://privacyinternational.org/news-analysis/3029/privacy-precondition-social-protection>에서 2023.10.10. 인출.
- Cameron, D., Pope, & S., Clemence, M. (2013). Dialogue on data.

- Examining the public's view on using administrative data for research purposes. Ipsos/MORI Social Research Institute. <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publication/1970-01/sri-dialogue-on-data-2014.pdf>에서 2023. 10. 9. 인출.
- Castell, S., Charlton, A., Clemence, M., Pettigrew, N., Pope, S., Quigley, A., ... & Silman, T. (2014). Public attitudes to science 2014. London, Ipsos MORI Social Research Institute, 194, 28.
- Christensen J, Aaroe, L., Baekgaard, M., Herd P., & Moynihan, D. P. (2020). Human capital and administrative burden: The role of cognitive resources in citizen-state interactions. *Public Adm Rev*, 80(1), 127-136.
- Cohen, B. Z. (1999).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seek help.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6(1), 67-82.
- Collington, R. (2022). Disrupting the welfare state? Digitalisation and the retrenchment of public sector capacity. *New Political Economy*, 27(2), 312-328.
- Corden, A. (1995). *Changing Perspectives on Benefit Take-up*, London: HMSO.
- Craig, P. (1991). Cost and benefits: A review of research on take-up of income-related benefits, *The Journal of Social Policy*. 20(4), 537-565.
- Currie, J. (2006). The take-up of social benefits in poverty. In A. Auerbach, D. Card, & J. Quigley (Eds.). *Public policy and income distribution* (pp. 80-148). Russell Sage.
- Department of Employment, Workplace relations and small business (DEWRSB) (1998).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DEWRSB, Canberra.
- Devlieghere, J., Gillingham, P., & Roose, R. (2022). Dataism versus

- relationshipism: A social work perspective. *Nordic Social Work Research*, 12(3), 328-338.
- Domurat, R., Menashe, I., & Yin, W. (2021). The role of behavioral frictions in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enrollment and risk: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11(5), 1549-1574.
- Dornan, P. & Hudson, J. (2003). Welfare governance in the surveillance society: a positive realistic cybercriticalist view,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7(5), 468-482.
- Dubois, H., & Ludwinek, A. (2015). Access to social benefits: Reducing non take-up. Luxembourg: Eurofound.
- Eckhardt, J. (2021). Living contexts of non-take-up in Germany. *Swiss Journal of Sociology*, 47(2), 261-282.
- Eerste Kamer. (2021). Regels omtrent gegevensverwerking door samenwerkingsverbanden (Wet gegevensverwerking door samenwerkingsverbanden).
https://www.eerstekamer.nl/behandeling/20211118/brief_van_de_e_vice_president_van_de에서 2023. 5. 20. 인출.
- Eubanks, V. (2018). Automating inequality: How high-tech tools profile, police, and punish the poor. NY: St. Martin's Press.
- Eurofound (2015). Access to social benefits: Reducing non-take-up.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23). 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desi>.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n.d).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ttps://www.europewatchdog.info/wp-content/uploads/2014/11/EMRK.pdf>에서 2023. 5. 30. 인출.
- Ferragina, E. (2017). The welfare state and social capital in Europe:

- Reassessing a complex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8(1), 55-90.
- Fitzpatrick, T. (2000). Critical cyber policy: network technologies, massless citizens, virtual rights, *Critical Social Policy*, 20(3), 375-407.
- Flyvbjerg, B. (2006). Five misunderstandings about case-study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2(2), 219-245.
- Fraser, N., Gordon, L. (1994). A genealogy of dependency: tracing a keyword of the welfare state, *Signs*, 19, 309-36.
- Gandy, O. Jr. (1993). *The Panoptic Sort*, Boulder, CO: Westview.
- Goedeme, T., & Janssens, J. (2020).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non-take-up: An overview with a focus on the non-take-up of social benefits (Deliverable 9.2). Leuven, Belgium: InGRID-2 project 730998-H2020.
- Gross, A. E., Wallston, B. S., & Piliavin, I. M. (1979). Reactance, attribution, equity, and the help recipien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9(4), 297-313.
- Henman, P. W. F. (2022). Digital social policy: past, present, future. *Journal of Social Policy*, 51(3), 535-550.
- Henman, P., & Marston, G. (2008). The social division of welfare surveillance. *Journal of Social Policy*, 37(2), 187-205.
- Hernanz, V., Malherbet, F., & Pellizzari, M. (2004). Take-up of welfare benefits in OECD countries: A review of the evidenc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7). Paris: OECD Publishing.
- Howse, K., Ebrahim, S., & Gooberman-Hill, R. (2004). Help avoidance: Why older people do not always seek help. *Reviews in Clinical Gerontology*, 14, 63-70.

- Humbelin, O. (2019). Non-take-up of social assistance: Regional differences and the role of social norms. *Swiss Journal of Sociology*, 45(1), 7-33.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17).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ata protection. Data Protection Act an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ttps://undocs.org/A/74/493>에서 2023. 10. 9. 인출.
- Jørgensen, R. F. (2021). Data and rights in the digital welfare state: the case of Denmark.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16.
- Judt, T. (2007).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London: Pimlico.
- Kerr, S. A. (1982). Deciding about supplementary pensions: A provisional model. *Journal of Social Policy*, 11(4), 505-517.
- Kersing, M., Oldenhof, L., Putters, K., & van Zoonen, L. (n.d.). Emergence of digital welfare state. <https://www.eur.nl/en/eshpm/research/ai-healthcare-policy-and-management/digital-welfare-state#:~:text=Digital%20welfare%20states%20can%20be,%2C%20identify%2C%20surveil%20and%20intervene>에서 2023. 10. 7. 인출.
- Kumlin, S., & Rothstein, B. (2005). Making and breaking social capital: The impact of welfare state institu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4), 339-365.
- Larasati, Z. W., Yuda, T. K., & Syafa'at, A. R. (2023). Digital welfare state and problem arising: an exploration and future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43(5/6), 537-549.
- Lucas, B., Bonvin, J-M, & Humbelin, O. (2021). The non-take-up of

- health and social benefits: What implications for social citizenship? *Swiss Journal of Sociology*, 47(2), 161-180.
- Lyon, D. (ed.) (2003). *Surveillance as Social Sorting*, London: Routledge.
- Maurer, R. & Mitchell, O. S. (2016). Older people's willingness to delay social security claiming.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https://mrdrc.isr.umich.edu/publications/papers/pdf/wp346.pdf>에서 2023. 5. 30. 인출.
- Mason, R. O. (1986). Four ethical issues of information age, *MIS Quarterly*, 10(1), 5-11.
- McDonald, C., Marston, G. & Buckley, A. (2003). Risk technology in Australia: the role of the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in employment services. *Critical Social Policy*, 23, 498-525.
- Melchiori, C. E., Sanches, B., Cruz, M. C. D. C., Diniz, E. H., Cunha, M. A. (2023). Digital Welfare and Vulnerable Citizens: a Literature Review. *ECIS 2023 Research-in-Progress Papers*. 58. https://aisel.aisnet.org/ecis2023_rip/58에서 2023. 10. 9. 인출.
- Ministe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2019). SyRI. Systeem Risico-indicatie. <https://open.overheid.nl/documenten/ronl-726a017340923eeca3e88165116108f182b36b3/pdf>에서 2023. 5. 20. 인출.
- Moffitt, R. (1983). An economic model of welfare stigm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3(5), 1023-1035.
- Nadler, A. (2015). The other side of helping: Seeking and receiving help. In D. A. Schroeder & W. G. Graziano (Eds.), *The Oxford handbook of prosocial behavior* (pp. 307-32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arayan, J., Hu, K., Coulter, M. & Mukherjee, S. (2023). Elon Musk and

- others urge AI pause, citing 'risks to society, Reuters. 2023. 4. 5.
<https://www.reuters.com/technology/musk-experts-urge-pause-training-ai-systems-that-can-outperform-gpt-4-2023-03-29/>
 에서 2023.10.9. 인출.
- Nelson-Le Gall, S. (1985). Help-seeking behavior in learning.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12, 55-90.
- OECD. (2019a).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in Korea?
- OECD. (2019b).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Chapter3. Comparing well-being in the digital age across OECD countries.
- OECD. (2019c).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Chapter1. Understanding how the digital transformation affects people's well-being.
- Orbach, B. Y. (2006). Unwelcome benefits: Why welfare beneficiaries reject government aid. *Law & Ineq.*, 24, 107.
- Pedersen, J. S. (2019). The Digital Welfare State: Dataism versus Relationshipism. In *Big Data*, edited by J. S. Pedersen and A. Wilkinson, 301-324. Massachusetts: Edward Elgar Publishing.
- Pierson, P.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son, P. (1996).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8, 143-179.
- Pilkington, Ed. (2019). Digital dystopia: how algorithms punish the poor. 2019. 10. 14.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9/oct/14/automating-poverty-algorithms-punish-poor>에서 2023. 6. 15. 인출.
- Reijnders, M., Schalk, J., & Steen, T. (2018). Services wanted?

- Understanding the non-take-up of social support at the local level. *Voluntas*, 29, 1360-1374.
- Revil, H. (2021). Quand les implications multiples du non-recours aux soins catalysent une critique du système sanitaire et social, *Swiss Journal of Sociology*, 47(2), 221-239.
- Riphahn, R. T. (2001). Rational poverty or poor rationality? The take-up of social assistance benefi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7(3), 379-398.
- Robert Booth. (2019). Computer says no: the people trapped in universal credit's 'black hole'. 2019. 10. 14일.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oct/14/computer-says-no-the-people-trapped-in-universal-credits-black-hole>에서 2023. 6. 15. 인출.
- Rosenstein, E. (2021). Activation, non-take-up, and the sense of entitlement: A Swiss case study of disability policy reforms. *Swiss Journal of Sociology*, 47(2), 241-260.
- Rosholm, M., Bodilsen, S., & Villumsen, A. M. (2021). Ethical considerations in relation to 'Focus on Notifications': A project on the use of predictive risk models in social work.
- Sahuguet, A., Krauss, J., Palacios, L. & Sangokoya, D. (2014). Open civic data: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IEEE Data Engineering Bulletin*, 37(4), 15-26.
- Salganic, M. J. (2018). *Bit by bit: Social research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monse, O., Vanderveen, G., van Dillen, L. F., van Dijk, W. W., & van Dijk, E. (2022). Social security or insecurity? The experience of welfare participation by financially vulnerable households in the Netherlands. *Social Policy Administration*, 57, 255-271.

- The Danish Parliament. (2023). The Digitization and IT Committee.
<https://www.thedanishparliament.dk/en/committees/committees/diu>.
- Titmuss, R. M. (1976). *Essay on 'The Welfare State'*, 3rd edition, London: Allen & Unwin.
- Van Bekkum, M., & Borgesius, F. Z. (2021). Digital welfare fraud detection and the Dutch SyRI judg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23(4), 323-340.
- van Groenou, M. B., Glaser, K., Tomassini, C., & Jacobs, T. (2006). Socio-economic status differences in older people's use of informal and formal help: A comparison of four European countries. *Ageing & Society*, 26(05), 745-766.
- Van Mechelen, N., & Janssens, J. (2017). Who is to blame? An overview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non-take-up of social rights (CSB Working Paper Series No. 17.08). Antwerp: Herman Deleeck Centre for Social Policy, University of Antwerp.
- van Oorschot, W. (1991). Non-take-up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1), 15-30.
- van Oorschot, W. (1996). *Modelling non-take-up: The interactive model of multi-level influences and the dynamic model of benefit receipt*. Tilburg: TISSER Studies/Tilburg University Press.
- van Zoonen, L. (2020). Data governance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welfare state. *Data & Policy*, 2, e10-17.
- Warin, P. (2014). What is the non take-up of social benefits. Books and ideas, 9 June.
<http://www.booksandideas.net/Whatis-the-Non-Take-up-of-Social.html>.
- Warin, P. (2018a). What non-demand demands: On the non-take-up

of social welfare. College de France.

Warin, P. (2018b). The analysis of non-take-up: beyond the service relation model. *Schweizerische Zeitschrift für Soziale Arbeit / Revue suisse de travail social*, 23, 60-75.

Wilke, F. (2021). Institutionalized normality and individual living situation: The non-take-up of old-age basic income support in Germany. *Swiss Journal of Sociology*, 47(2), 181-200.

Zhao, X., Lynch, J. G., & Chen, Q. (2010). Reconsidering Baron and Kenny: Myths and Truths about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 197-206.



[부록]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응답자 ID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방향과 정책 개발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됩니다.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 조사주관기관 :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 의 처 : 연구총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총괄 : 예스티아이 • 조사수행기관 : 예스티아이 연구 담당자 : 정세경 부연구위원 (044-287-8130) 조사 담당자 : 박재익 책임연구원 (02-785-9123)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

■ 본인은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에 의해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조사·이용 목적】 ① 소득, 고용, 건강, 사회참여의 실태 조사 ② 조사에 근거한 관련 정책 제언 마련 【민감정보 조사 항목】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설문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자료 보관 방법】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수집한 응답 값 데이터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해당 자료 접근 권한은 연구 수행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법률에 따라 3년 동안 보관되며, 이후 완전히 분쇄·파기됩니다. 【연구 문의】 연구에 대한 질문 혹은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부연구위원 (044-287-8130) 조사업체: 에스티아이 박재익 책임연구원 (02-785-9123)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본 조사 참여 및 자료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① 예, 동의합니다.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구 구성 및 응답자 일반사항

출생연월 (주민등록상)	_____ 년 _____ 월 만19세~만64세까지 조사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 실거주지 기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세부주소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 202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SQ1. 귀택의 가구원 수는 몇 명이십니까? 그리고 가구원 중 다음의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구분	(본인 포함)	
SQ1-1.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 수		명
SQ1-2. 가구원 중 만성화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명
SQ1-2-1.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에 본인 포함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SQ2. 귀하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가구주의 _____)

- ① 가구주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교육으로 보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대학원 졸업 후 다시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대학원 졸업으로 응답
- ④ 일부(예: 과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만 이수 여부에 ③ 수료가 가능

SQ3-1. 귀하의 교육 수준에 대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예) 대학교를 중퇴한 경우, 대학교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무학 → SQ4.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전문대, 4년제 이상 모두 포함) ⑥ 대학원(석사 이상)

SQ3-2. 이수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SQ4. 귀하의 혼인 상태를 선택해주세요.

- ① 유배우 (사실혼 포함) ② 미혼 (비혼 포함)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SQ5.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해당 경제활동 상태에 응답합니다.
- 일시 휴직자(병가, 산전후유가, 육아휴직, 코로나로 복귀가 가능한 휴직 등)는 취업자로 해당 경제활동 상태에 응답합니다.

구분	내용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② 일시직 임금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원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시직)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④ 특수고용	•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 형태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골프장 보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⑤ 고용주	• 고용주는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 또는 농장을 경영하는 자
⑥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⑦ 무급가족 종사자	•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단,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님)
⑧ 실업자	•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⑨ 비경제 활동인구	•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 여기서부터는 귀하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생각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A. 사회적 지지체계

- ★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전생애에 걸친 경험**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경험했다면,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귀하는 **생계유지가 곤란할 만큼 생활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A1-1 ② 아니요 → A1-2

- ◆ **생계유지가 곤란할 만큼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의 예**
- 생활비가 부족해서 식사와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름
 - 생활비가 부족해서 공과금(사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함
 - 생활비가 부족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함

A1-1. 그 때에 국가(예 :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 ① 예 → A1-1-1 ② 아니요 → A1-1-2

A1-3. 생계유지가 곤란할 만큼 생활비가 부족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음 → A2
- ② 1명 → A1-4
- ③ 2-3명 → A1-4
- ④ 4-5명 → A1-4
- ⑤ 6-9명 → A1-4
- ⑥ 10명 이상 → A1-4

A1-4.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 응답 후 A2

- ① 예 ② 아니요

★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전생애에 걸친 경험**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경험했다면,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귀하는 상황이 나빠져서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A2-1 ② 아니요 → A2-2

◆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한 예

- 가구 상황이 나빠지거나 **빚세 및 보증금이 올라서 주거비가 부족**한 경우※ 투자목적 주택구입비 등은 제외)
- 본인이나 가구원의 질병 및 사고로 **수술비 및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A2-1. 그 때에 국가(예 :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 ① 예 → A2-1-1 ② 아니요 → A2-1-2

A2-1-1. 도움 요청 후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 ① 지원 받음 → A2-2 ② 지원 받지 못함 → A2-2

◆ 지원 과정에서 지원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여러 이유로 스스로 지원 요청을 철회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함에 응답합니다.

A2-1-2.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A2-2

- 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 ②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 ③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예: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서, 오래 걸려서,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는지 몰라서)
- ④ 신청과정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싫어서
- 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 ⑥ 가족(예: 자녀 또는 손자녀, 부모)에게 알려지거나 부담을 주게 될까봐
- ⑦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받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예: 수치심)이 들어서
- ⑧ 어려워도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 ⑨ 기타()



A2-2.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 응답 후 A2-3

- ① 예 ② 아니요

A2-3.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음 → A3
② 1명 → A2-4
③ 2-3명 → A2-4
④ 4-5명 → A2-4
⑤ 6-9명 → A2-4
⑥ 10명 이상 → A2-4

A2-4.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 응답 후 A3

- ① 예 ② 아니요

★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전생애에 걸친 경험**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경험했다면,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귀하는 **정서적인 문제(우울감, 스트레스, 외로움)**로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A3-1 ② 아니요 → A3-2

A3-1. 그 때에 국가(예 :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 ① 예 → A3-1-1 ② 아니요 → A3-1-2

A3-1-1. 도움 요청 후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 ① 지원 받음 → A3-2 ② 지원 받지 못함 → A3-2

◆ 지원 과정에서 지원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여러 이유로 스스로 지원 요청을 철회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함에 응답합니다.

A3-1-2.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A3-2

- ①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②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③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예: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서, 오래 걸려서,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는지 몰라서)
④ 신청과정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싫어서
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⑥ 가족(예: 자녀 또는 손자녀, 부모)에게 알려지거나 부담을 주게 될까봐
⑦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받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예: 수치심)이 들어서
⑧ 어려워도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⑨ 기타()

A3-2.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 응답 후 A3-3

- ① 예 ② 아니요

A3-3. 정서적인 문제(우울감, 스트레스, 외로움)가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음 → A4
② 1명 → A3-4
③ 2-3명 → A3-4
④ 4-5명 → A3-4
⑤ 6-9명 → A3-4
⑥ 10명 이상 → A3-4

A3-4.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 응답 후 A4

- ① 예 ② 아니요

★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전생애에 걸친 경험**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경험했다면,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귀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아를 때** **돌봄**의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A4-1 ② 아니요 → A4-2

A4-1. 그 때에 국가(예 :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 ① 예 → A4-1-1 ② 아니요 → A4-1-2

A4-1-1. 도움 요청 후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 ① 지원 받음 → A4-2 ② 지원 받지 못함 → A4-2

◆ 지원 과정에서 지원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여러 이유로 스스로 지원 요청을 철회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함에 응답합니다.

A4-1-2.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A4-2

- ①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②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③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예: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서, 오래 걸려서,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는지 몰라서)
④ 신청과정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싫어서
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⑥ 가족(예: 자녀 또는 손자녀, 부모)에게 알려지거나 부담을 주게 될까봐
⑦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받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예: 수치심)이 들어서
⑧ 어려워도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⑨ 기타()

A4-2.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 응답 후 A4-3

- ① 예 ② 아니요

A4-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음 → A4
② 1명 → A3-4
③ 2~3명 → A3-4
④ 4~5명 → A3-4
⑤ 6~9명 → A3-4
⑥ 10명 이상 → A3-4

A4-4.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 응답 후 A5

- ① 예 ② 아니요

A5. (A1-1, A2-1, A3-1, A4-1 중 어느 하나라도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국가(예: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귀하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다면, **가장 최근의 경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부정적이었다 (기분이 나쁘거나 수치심이 들)	부정적이었다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았다	긍정적이었다	매우 긍정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B. 건강과 삶의 만족

B1.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B2.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B3. 다음 문항들은 평소 귀하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이 현재 느끼는 바에 따라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의 응답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B4.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전혀 없음	여러 날 동안 (1-6일)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②	③	④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①	②	③	④
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①	②	③	④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란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①	②	③	④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①	②	③	④

C6.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가족	①	②	③	④	⑤
2)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	①	②	③	④	⑤
3) 이웃	①	②	③	④	⑤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①	②	③	④	⑤
5) 국가	①	②	③	④	⑤

C7. 다음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국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8.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C9.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배					성장
①	②	③	④	⑤	

C10. 국가가 복지 급여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					모든 국민
①	②	③	④	⑤	

C11.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①	②	③	④	⑤

C12.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10년 전	①	②	③	④	⑤
현재	①	②	③	④	⑤
10년 후	①	②	③	④	⑤

C13. 다음은 공동체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주세요.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2) 직능단체 (노조, 상인회 등)	①	②	③	④	⑤
3) 연고단체 (동문회, 향우회, 전우회 등)	①	②	③	④	⑤
4) 취향 집단 (산악회, 동호회 등)	①	②	③	④	⑤
5)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6) 정당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커뮤니티 (주민자치회, 인터넷카페 등)	①	②	③	④	⑤

C14. 귀하는 사회의 부정이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의 항목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예: 기업 또는 정치인의 부정행위)

	참여 의사	
	있다	없다
1)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①	②
2)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①	②
3)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①	②
4)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①	②
5)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①	②

C15. 사람들은 좋은 국민이 되는데 무엇이 어느 정도 중요하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 각각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매우 중요하다'에 7점을 준다면,

귀하는 1점부터 7점 사이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매우 중요하다						
1)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결코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 또는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보다 못 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보다 못 사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16.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C17.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부는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나라는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C18.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귀하가 동의 또는 반대하시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요.

어떤 사람이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 1) 신체건강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2) 점성적 문제(예: 불안, 우울, 공황장애)가 있어 보이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3) 생계유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4) 가족이나 지인,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이 생활하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5) 팬데믹 하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걸린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6) 연령, 장애, 질환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전혀 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 국가는 현금 혹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19.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귀하가 동의 또는 반대하시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시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모든 국민은 복지(현금급여 또는 서비스)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국가는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서 소득 등 개인 정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국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국민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20.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소득정보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재산정보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부채정보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건강정보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소득 및 빈곤

〈가구주 및 가구원의 정의〉

- ※ 가구주: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
- ※ 가구원의 정의: 실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혈연관계(친인척)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포함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은 제외

D1. 귀하 혹은 귀하의 가구원이 다음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시된 보기 중 하나라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예'에 응답)

구분	사회복지 제도	예	아니오
기초보장 및 자소특성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금, 농어업정비보조금	①	②
사회보험	2)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 산재보험 급여, 고용보험 구직(실업)수당	①	②
	3) 아동수당, 양육수당(영유아)	①	②
	4)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①	②
현금지원	5)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①	②
	6) 자산형성지원 (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①	②
	7) 보육료지원(-사랑카드)	①	②
사회서비스 지원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생애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아이돌봄지원, 임신산후신뢰비지원, 유아학비지원, 장애아동가정지원(월일제돌봄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①	②
	9)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전세자금 대출지원(비팀목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디딤돌 대출)	①	②
	10) 실업자 직업훈련, 창업지원, 청년인턴십 제도, 노인일자리	①	②

D2. 귀하의 가구원이 벌어들인 월 평균 가구총소득(세전 기준)은 얼마입니까?

- ※ 2022년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작성
※ 모든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의 합산, 없음 0

24	28	32	36	한원
----	----	----	----	----

총소득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 사적이전소득(가구원 아닌 가족, 친지,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가구원 사이에 주고받는 소득은 제외)
- 재산소득, 금융소득

D3. (조사일 기준) 귀 가구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가구원 명의 기준)

구분	해당항목	금액 (※ 없음 0)
3-1	부동산 재산 주택, 주택 외 부동산, 전세보증금, 권리금 받은 것 등 ※ 부채를 포함한 현시가 기준 ※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오피스텔 등 모두 포함	억 원 백 만 십 일 만원
3-2	금융 재산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억 천 백 십 일 만원
3-3	기타 재산 자동차, 농기계, 회원권(골프, 콘도 등), 귀중품, 골동품, 지적 재산권 등	억 원 백 만 십 일 만원

D4. (조사일 기준) 귀 가구의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모든 가구원 명의 기준 부채의 합산, 사업 용도의 부채는 제외)

구분	해당항목	총 금액 (※ 없음 0, 추정액도 말하기 어려운 경우 무응답 표기)
가계부채 총액	(조사일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니스트등장 미상환금 포함),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 외상, 미라탄 것돈(※ 미리 탄 것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 기타부채	억 원 백 만 십 일 만원

본 연구에 성실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심층 인터뷰 참여 의향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해 8월-9월 경 2시간 이내의 심층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비(10만원)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심층 인터뷰에 응하실 경우, 연구의 수행을 위해 본 설문에 응답하신 귀하의 응답을 연구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D5-1. 본인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 ① 예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D5-2) ② 아니요